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27-02  
2011 연구보고서 15-1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마경희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

연구책임자 : **마 경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 해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순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김 효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27-0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2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3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정책학회
11-27-0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5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1-27-06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11-27-07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b>김이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민무숙</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홍기원</b> 숙명여자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조교수 <b>주유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b>마경희</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정해숙</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김효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b>이순미</b> 전북대학교 강사
협력 연구 기관	한국정책학회	<b>최무현</b> 상지대학교 부교수	<b>박흥순</b> 호남신학대학교 연구교수 <b>김경희</b>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b>김이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민무숙</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김경미</b>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b>주유선</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	<b>류방란</b>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b>오성배</b> 동아대학교 조교수 <b>박균열</b>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학회	<b>김석호</b>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b>정기선</b> IOM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이정은</b>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b>여정희</b> University of South Dakota 조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b>황정미</b>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조교수	<b>문경희</b>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b>신미나</b>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연구요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사회 정책이 급속하게 성장해 왔음.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부상하여 관련 법률과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등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 영역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
- 국가간 교류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의 필요성 증대 등의 요인이 가중되어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범위와 예산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의 목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문화’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정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된 ‘다문화가족’에 제한되어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포괄하지 못하며, 국익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규범으로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 연구는 지난 3년간(2008~2010) 지출된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정의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더불어 향후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다문화사회 정책 관련 국내의 주요 성찰적 논의와 쟁점 검토

-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규모와 자원배분 구조 분석
  - 2008~2010년도까지 3년간 추진된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을 통해 그간의 성찰적 논의에서 제기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격과 쟁점을 확인함.
-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와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실적 자료와 성과를 분석함.
-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안
  -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자원배분 방향 및 정책의 개선 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함.

### 3. 연구방법

-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예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
  -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및 사업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함.
- 정부 공식·비공식 통계 자료 분석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입국관리통계연보(법무부), 외국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와 관련 연구 자료를 활용함. 또한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각 부처 담당자의 협조를 받았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다문화 및 이민정책 관련 분야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 1차 조사는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차 조사는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성과와 적절한 예산 비중,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4.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

□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

- 다문화사회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인력유치,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 국경·국적관리 등 6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3년간의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을 분석하고 재정지출 비중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함.
- 분석결과,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성찰적 논의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약 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이 약 40%를 차지함. 이 외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과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의 예산 비중이 각각 4%, 3%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현재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재원 비중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에 대해서는 100%가 낮다고 평가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현재의 재정지출 비중이 낮다고 응답함.

〈표 1〉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의 적절성

사업군	3년 총지출		적절성(전문가 의견)(%)		
	규모(억 원)	비중(%)	높다	적절	낮다
해외인력유치	1,162.54	39.9	60.0	40.0	0.0
다문화가족 지원	1,247.70	42.9	68.0	24.0	8.0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85.30	2.9	0.0	0.0	100.0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197.70	6.8	0.0	40.0	60.0
외국인 인권보호	125.06	4.3	0.0	28.0	72.0
국경·국적 관리	91.73	3.2	0.0	64.0	36.0
전체	2,910.03	100.0	-	-	-

□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 6개 사업군별 세부사업군의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해외인력유치 사업



군은 유학생 유치 사업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에서는 취학 전 자녀 양육지원 사업이,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에서는 홍보 및 행사성 사업이,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에서는 피해 결혼이주여성 구제 사업,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에서는 초국가적 범죄대응 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았음.

〈표 2〉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

사업군	세부사업군	예산	비중 1)	비중 2)	적절성(전문가의견)		
					높다	적절	낮다
해외인력 유치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134.65	4.6	11.6	4.0	40.0	56.0
	유학생 유치	782.35	26.9	67.3	72.0	20.0	8.0
	기능인력 도입	245.54	8.4	21.1	8.0	56.0	28.0
	재외동포 취업	-	0.0	0.0	-	-	-
	소계	1,162.54	39.9	100.0	-	-	-
다문화가 족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18.77	0.6	1.5	-	20.0	80.0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8.41	3.7	8.7	4.0	40.0	40.0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763.39	26.2	61.2	68.0	28.0	0.0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135.13	4.6	10.8	0.0	16.0	76.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222	7.6	17.8	36.0	40.0	20.0
소계	1,247.7	42.9	100.0	-	-	-	
내국인 다문화이 해 증진	다문화교육	21.96	0.8	25.7	-	14.0	86.0
	홍보 및 행사	63.34	2.2	74.3	68.0	28.0	4.0
	소계	85.3	2.9	100.0	-	-	-
체류·정 주자 생활편의 제공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145.71	5.0	73.7	40.0	52.0	8.0
	교통·주거·교육환경 개선	-	0.0	0.0	-	-	-
	문화·여가·복지 환경 개선	51.33	1.8	26.0	16.0	52.0	32.0
	체류동포 처우개선	0.66	0.0	0.3	4.0	28.0	48.0
	소계	197.7	6.8	100.0	-	-	-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1.45	0.0	1.2	0.0	20.0	80.0
	피해 이주여성 구제	100.97	3.5	80.7	80.0	20.0	0.0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16.66	0.6	13.3	0.0	68.0	32.0
	난민 인정·지원	5.98	0.2	4.8	4.0	36.0	60.0
	소계	125.06	4.3	100.0	-	-	-
국경·국 적 관리	불법체류 감소	5.6	0.2	6.1	4.0	48.0	48.0
	초국가적 범죄 대응	84.74	2.9	92.4	56.0	40.0	4.0
	국적 관리	1.39	0.0	1.5	0.0	56.0	32.0
	소계	91.73	3.2	100.0	-	-	-
합계	2,910.03	100.0	-	-	-	-	

## 5.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재원배분 방향

### □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6개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국경·국적관리 사업은 성과가, 해외인력유치 사업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군으로 평가됨.
- 각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은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국경·국적관리 사업은 문제점보다는 성과가 더 큰 사업군으로 평가됨.

### □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향

- 사업군별 재원배분
  -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비중은 전반적 조정이 필요함.
  - 해외인력유치 사업군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군의 재원 비중을 각각 12%p, 10%p 낮출 필요가 있음. 이 두 사업군의 정책적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업군의 예산 비중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임.

〈표 3〉 사업군별 적정 예산 비중(전문가 조사 결과)

	3년 예산비중(%) (A)	적정예산비중(%) (B)	차이(%p) (A-B)
해외인력유치	39.9	27.0	12.0
다문화가족 지원	42.9	33.1	9.8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2.9	14.1	-11.2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6.8	10.0	-3.2
외국인 인권보호	4.3	8.9	-4.6
국경·국적 관리	3.2	6.8	-3.6
합계	100.0	100.0	

-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성찰적 논의의 결론을 반영하는 것임. 즉, ‘다문화’라는 용어에 걸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국인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는 점, 이 과정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다양한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적 비중과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이 적정 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표출된 것임.

## 6. 사업군별 개선 방향

### □ 해외인력유치

- 장학생 유치 사업은 높은 재정지출을 통해 유학생의 양적 규모는 증가했지만, 선발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성이 불투명함. 유치 국가의 다변화, 재학 기간 중 한국생활 적응 지원, 졸업 후 취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
- 기능인력 도입과 활용 사업에는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정지출이 낮았음. 중소기업의 인력 도입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인력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 다문화가족 지원

-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정착 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원이 배분되면서 국제결혼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이 낮게 책정되었음.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비영리 단체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어머니 또는 자녀양육 지원자로서 역할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여성의 개인으로서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비중은 부족했음. 의존성을 강화하는 복지적 지원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의 독립과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내국인과 분리된 접근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함.

□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 일회적으로 그치고 마는 행사성 사업보다 내국인 대상 교육을 다각도로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대상 교육 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다문화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의 수가 매우 적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함. 다문화교육 연수기관을 확대하여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함. 내국인의 의식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의식 개선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체류·정주자 편의 제공

- 외국인 집단별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중국동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언어와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등 체류환경은 과거보다 개선되었지만, 대상별 특화 서비스가 부족하여 한국생활 체류 중 발생하는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상담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재정지출이 필요함.

□ 외국인 인권보호

- 결혼이민자 피해 구제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중이 높고,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비합법체류자 등 외국인 전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시스템은 빈약한 실정임.
-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와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호소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은 현재 시설 개선과 외국인 보호소 신설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 보호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자료가 빈약하여 성과를 판단할 수가 없었음.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실적 자료를 구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보호외국인의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난민 인정·지원사업은 오래전부터 국제적 기준 준수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인프라 구축 뿐임. 난민신청자의 기본권 보장 및 국내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원이 확대되어야 함.

□ 국경·국적관리

- 비합법체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획조사,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단속 및 보호 등에서의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7.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 향후의 다문화사회정책이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동일시되는 협소한 정책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문화사회가 제기하는 정책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에 변화가 모색되어야 함.

-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 영역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방지이며, 다음으로 대상별 욕구를 고려한 특화 정책의 강화와 내국인 다문화 의식 증진임.
- 노동권과 사회권, 정치권 등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6
가.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예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 ..	6
나. 정부통계 자료 분석 및 사업별 성과평가 자료 활용 .....	8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	8
4. 연구모형 및 분석틀 .....	10
가. 연구모형 .....	10
나. 예산분석틀 .....	11
5. 연구의 한계 .....	18
6. 보고서의 내용 .....	19
II.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	21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정의 .....	23
2. 다문화사회 정책 전개과정의 특성 .....	26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도입 .....	26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과정 .....	27
3.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성찰 .....	32
가. 선별적 포용과 배제 .....	32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중 .....	33
다. 다문화가족 사업의 가부장적 동화주의 .....	34

<b>Ⅲ.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 개요</b> .....	37
1. 전체 사업 개요 .....	39
가. 총괄 .....	39
나. 부처별 .....	41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	43
2. 재정지출 추이 .....	45
가. 총괄 .....	45
나.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	46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재정지출 규모 .....	48
<b>Ⅳ.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b> .....	51
1. 사업군별 사업현황 및 재정지출 규모 .....	53
가. 사업현황 .....	53
나. 재정지출 규모 .....	55
2. 해외인력유치 .....	57
가. 사업 현황 .....	57
나. 재정지출 구조 .....	58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60
3. 다문화가족 지원 .....	68
가. 사업 현황 .....	68
나. 재정지출 구조 .....	69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71
4.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	80
가. 사업현황 .....	80
나. 재정지출 구조 .....	81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82
5.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	87
가. 사업현황 .....	87
나. 재정지출 구조 .....	88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90
6. 외국인 인권보호 .....	95
가. 사업현황 .....	95
나. 재정지출 구조 .....	96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98
7. 국경·국적 관리 .....	101
가. 사업현황 .....	101
나. 재정지출 구조 .....	102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104
8. 소결 .....	108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 비중 .....	108
나. 사업군별 사업 및 재정지출 구조 .....	109
다. 사업수단별 재정지출 구조 .....	111
라. 특화 서비스 사업의 대상별 재정지출 구조 .....	112
<b>V.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b>	<b>115</b>
1. 해외인력유치 .....	117
가. 사업 목표 .....	117
나. 사업 실적 .....	117
다. 성과 분석 .....	126
2. 다문화가족 지원 .....	131
가. 사업 목표 .....	131
나. 사업 실적 .....	131
다. 성과 분석 .....	152
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	160
가. 사업 목표 .....	160
나. 사업 실적 .....	161
다. 성과 분석 .....	171
4.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	174



가. 사업 목표 .....	174
나. 사업 실적 .....	175
다. 성과 분석 .....	184
5. 외국인 인권보호 .....	187
가. 사업 목표 .....	187
나. 사업 실적 .....	188
다. 성과 분석 .....	192
6. 국경·국적 관리 .....	196
가. 사업 목표 .....	196
나. 사업 실적 .....	196
다. 성과 분석 .....	201
7. 소결 .....	203
<b>Ⅵ.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b>	<b>209</b>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절차와 설계 .....	211
가. 조사대상자 선정 및 특징 .....	211
나. 조사 내용과 설계 .....	211
2.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및 적정 비중 .....	214
가. 6개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적절성과 적정 비중 .....	214
나. 해외인력유치 .....	219
다. 다문화가족 지원 .....	222
라.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	227
마.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	230
바. 외국인 인권보호 .....	233
사. 국경·국적관리 .....	236
3. 재정지출의 성과 .....	238
4. 향후 정책 방향 .....	244

<b>VII. 종합적 논의와 정책 제언</b> .....	249
1.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 .....	251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 .....	251
나.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	252
2.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	255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255
나.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안 .....	257
3. 다문화사회 전망과 정책의 방향 .....	265
가. 다문화사회의 전망 .....	265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쟁점 .....	267
다.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	270
■ <b>참고문헌</b> .....	273
■ <b>Abstract</b> .....	277

## 표 차 례

<표 I-1> 6개 사업군 분류 기준 .....	11
<표 I-2> 22개 세부사업군 .....	13
<표 I-3> 6개 사업군별 성과지표 .....	16
<표 II-1>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사회 정책 주요 대상 현황(2010) .....	25
<표 III-1> 연도별 사업 추이 .....	40
<표 III-2> 부처별 사업 추이 .....	42
<표 III-3>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사업 추이 .....	44
<표 III-4>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및 재원구성 .....	46
<표 III-5> 부처별 재정지출 추이 .....	47
<표 III-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영역별 재정지출 추이 .....	49
<표 IV-1> 사업군별 사업 현황 .....	53
<표 IV-2>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 .....	56
<표 IV-3> 해외 인력유치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	58
<표 IV-4> 해외 인력유치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59
<표 IV-5>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사업 재정지출 내역 .....	61
<표 IV-6>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사업 내용 .....	62
<표 IV-7> 유학생 유치 사업 내역 .....	64
<표 IV-8> 기능인력 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사업 내역 .....	65
<표 IV-9> 기능인력 활용 기업 지원 및 도입규모 관리 사업 내용 .....	66
<표 IV-10> 재외동포 취업 사업내용 .....	67
<표 IV-11>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	69
<표 IV-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70
<표 IV-13> 국제결혼 피해 예방 교육 사업내역 .....	72
<표 IV-14> 국제결혼 관리·감독 사업 내역 .....	73

<표 IV-15>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	74
<표 IV-16>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	77
<표 IV-17>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	79
<표 IV-18>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 세부유형 및 사업 현황 .....	81
<표 IV-19>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81
<표 IV-20> 다문화교육 사업 재정지출 내역 .....	84
<표 IV-21> 홍보·행사 재정지출 내역 .....	86
<표 IV-22>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	87
<표 IV-23>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89
<표 IV-24>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재정지출 내역 .....	91
<표 IV-25> 교통·주거·교육 환경 개선 사업내역 .....	92
<표 IV-26>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사업 재정지출 내역 .....	93
<표 IV-27> 체류동포 처우개선 사업 재정지출 내역 .....	95
<표 IV-28>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세부유형 및 사업현황 .....	96
<표 IV-29>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97
<표 IV-30> 외국인 차별방지 및 구제 사업 재정지출 내역 .....	98
<표 IV-31> 피해 이주여성 구제 사업 재정지출 내역 .....	99
<표 IV-32>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사업 재정지출 내역 .....	100
<표 IV-33> 난민 인정·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	101
<표 IV-34> 국경·국적 관리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	102
<표 IV-35>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103
<표 IV-36> 불법체류 감소 재정지출 내역 .....	104
<표 IV-37> 초국가적 범죄 대응 재정지출 내역 .....	106
<표 IV-38> 국적관리 사업내역 .....	107
<표 IV-39>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수단별 재정지출 구조 .....	112
<표 IV-40> 특화 서비스 사업의 대상별 재정지출 구조 .....	113
<표 V-1> 글로벌 고급인력 채용지원 .....	118
<표 V-2> 글로벌 고급인력 DB 구축실적(누계치) .....	118
<표 V-3> 해외 우수기술인력 특혜 지원(골드카드 발급) .....	119

<표 V-4> 해외기술인력 도입현황 .....	120
<표 V-5> 해외학자 유치 지원 현황 .....	120
<표 V-6>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교류 지원 사업 실적 .....	121
<표 V-7> 유학생 취업지원 사업 실적 .....	122
<표 V-8>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적 .....	123
<표 V-9>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 실적 .....	124
<표 V-10>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적 .....	125
<표 V-1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실적 .....	125
<표 V-12>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성과지표 .....	127
<표 V-13> 전문인력 증가현황 .....	128
<표 V-14> 해외 우수기술인력 특혜지원 골드카드 발급 실적 및 증감율 ..	129
<표 V-15>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사업성과 .....	130
<표 V-16>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 .....	131
<표 V-17>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중개업자 교육 실적 .....	132
<표 V-18>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사업 실적 .....	132
<표 V-19>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 준비 교육 사업 실적 .....	133
<표 V-20> 예비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 정보 프로그램 사업 실적 .....	134
<표 V-21> 법무부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실적 .....	134
<표 V-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실적 .....	135
<표 V-23> 다국어판 정보 매거진 발간·배포 실적 .....	136
<표 V-24> 결혼이민자와 가족 상담 서비스 실적 .....	137
<표 V-25>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 모니터단 운영 실적 .....	137
<표 V-26>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실적 .....	138
<표 V-27>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지원 사업 실적 .....	138
<표 V-28>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실적 .....	139
<표 V-2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기술 교육 실적 .....	140
<표 V-30>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사업 실적 .....	141
<표 V-31>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사업 실적 .....	142
<표 V-32> 취학 전 유아 언어 및 교육 지원 실적 .....	143

<표 V-33> 취학 전 유아 기본학습 및 유치원 생활 적응 지원 실적 .....	144
<표 V-34> 이중언어 교육 사업 실적 .....	145
<표 V-35>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실적 .....	146
<표 V-36>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도 실적 .....	146
<표 V-37>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	147
<표 V-38>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종합 지원 참여 지역 .....	148
<표 V-39> 지역별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 사업 추진 실적 .....	149
<표 V-40> 다문화 청소년 종합 정보 제공 .....	150
<표 V-41> 다문화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 .....	150
<표 V-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실적 .....	151
<표 V-4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군 성과지표 .....	153
<표 V-44>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수혜율 및 도움정도 .....	154
<표 V-45> 한국문화 이해 교육 수혜율 및 도움 정도 .....	155
<표 V-46>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 .....	156
<표 V-47>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율 .....	157
<표 V-48>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 .....	158
<표 V-49> 결혼이민자 체류기간별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	158
<표 V-50> 수혜 아동 언어발달 진전 정도 .....	160
<표 V-51>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교재, 자료 개발·보급 실적 .....	161
<표 V-52> 유·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	163
<표 V-53>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 실적 .....	163
<표 V-54>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 문화체험 전시회 실적 .....	164
<표 V-55> 다문화교육, 다문화 전시 사업 실적 .....	165
<표 V-56> 다문화 청소년 이해 프로그램 .....	165
<표 V-57>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 실적 .....	166
<표 V-58> 다문화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실적 .....	167
<표 V-59>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실적 .....	168
<표 V-60>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	169

<표 V-61> 결혼이민자 부모초청 행사 실적 .....	170
<표 V-62>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실적 .....	170
<표 V-6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 성과지표 .....	171
<표 V-64> 초중등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이수율 .....	172
<표 V-65> 다문화 주제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건수 .....	174
<표 V-66>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적 .....	175
<표 V-67>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가자 및 이수율 .....	176
<표 V-68>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 사업 실적 .....	177
<표 V-6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통역 서비스 .....	178
<표 V-70> 해외 한국 소개 홍보자료 제작·배포 실적 .....	178
<표 V-71> 출입국 등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 .....	179
<표 V-72> 국악 공연 실적 .....	180
<표 V-73>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실적 .....	181
<표 V-74>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사업 실적 .....	182
<표 V-75> 여가활동 지원 사업 실적 .....	183
<표 V-76>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 성과지표 .....	185
<표 V-77>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율 .....	185
<표 V-78> 3자 통역서비스 증가율 .....	186
<표 V-79> 외국인 및 동포의 한국생활 만족도 .....	187
<표 V-80>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서비스 .....	189
<표 V-81>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현황 .....	189
<표 V-82> 연도별 이주여성쉼터 운영실적 .....	190
<표 V-83>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191
<표 V-84>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성과지표 .....	192
<표 V-85> 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상담실적 .....	193
<표 V-86>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 .....	194
<표 V-87> 난민업무 처리현황 .....	195
<표 V-88>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 조사 .....	196
<표 V-89>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설치 .....	197

<표 V-90> 이민당국간 고위급 회의 실적 .....	199
<표 V-91> 이민연락관 파견 및 이민당국간 직원 상호교류 실적 .....	199
<표 V-92> 귀화 필기시험 실시 .....	200
<표 V-93> 국경·국적관리 사업군 성과지표 .....	201
<표 V-94> 외국인 불법체류율 .....	202
<표 V-95>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이용율 .....	202
<표 VI-1> 델파이 조사 내용 .....	213
<표 VI-2> 6개 사업군 예산비중의 적절성 평가 .....	214
<표 VI-3>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부적절 이유 .....	216
<표 VI-4>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	218
<표 VI-5> 해외인력유치 예산의 적절성 .....	220
<표 VI-6> 해외인력유치 세부사업군별 재원배분 부적절 이유 .....	220
<표 VI-7> 해외인력유치 세부사업군 재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	221
<표 VI-8>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재원배분 적절성 평가 .....	223
<표 VI-9>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재원배분 부적절 이유 .....	223
<표 VI-10>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적정 비중 및 동일성 판단 .....	226
<표 VI-11>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재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	227
<표 VI-12>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재원배분 부적절 이유 .....	228
<표 VI-1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재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	229
<표 VI-14>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 재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	230
<표 VI-15>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별 재원배분 부적절 이유 .....	231
<표 VI-16>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 재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	232
<표 VI-17> 외국인 인권보호 세부사업군 재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	233
<표 VI-18> 외국인 인권보호 세부사업군별 재원배분 부적절 이유 .....	234



<표 VI-19> 외국인 인권보호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	235
<표 VI-20> 국경·국적관리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	236
<표 VI-21> 국경·국적관리 세부사업군별 자원배분 부적절 이유 .....	237
<표 VI-22> 국경·국적 관리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	238
<표 VI-23>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 성과 평가 및 크기 측정 .....	240
<표 VI-24>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 .....	243
<표 VI-25> 1차 조사에서 도출된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 방향 .....	244
<표 VI-26> 다문화사회 정책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	245
<표 VI-27> 외국인의 국내거주·체류 관련 논쟁적 사안에 대한 동의정도 .....	246
<표 VII-1>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의 적절성 .....	251
<표 VII-2>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	253
<표 VII-3> 사업군별 적정 예산 비중(전문가 조사 결과) .....	258

## 그림 차례

[그림 I-1] 벨파이의 일반적 절차 .....	9
[그림 I-2] 연구모형 .....	10
[그림 III-1] 연도별 사업수 추이 .....	40
[그림 III-2] 부처별 사업수 추이 .....	43
[그림 III-3]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영역별 사업수 추이 .....	45
[그림 III-4]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연도별 재원의 변화 .....	46
[그림 III-5] 부처별 예산 비중의 변화 .....	48
[그림 III-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영역별 예산 비중 .....	50
[그림 IV-1] 사업군별 사업 현황 .....	54
[그림 IV-2] 사업군별 예산 비중 .....	57
[그림 IV-3] 해외인력유치 사업 재정지출 구조 .....	60
[그림 IV-4]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재정지출 구조 .....	71
[그림 IV-5]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 재정지출 구조 .....	82
[그림 IV-6]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89
[그림 IV-7]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97
[그림 IV-8] 국경·국적관리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103
[그림 VI-1] 사업군별 적정 예산 비중 .....	218
[그림 VI-2] 해외인력유치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222
[그림 VI-3]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226
[그림 VI-4]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229
[그림 VI-5]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232
[그림 VI-6] 외국인 인권보장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235
[그림 VI-7] 국경·국적 관리 세부사업별 적정예산 비중 .....	238
[그림 VI-8]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 비교 .....	241
[그림 VI-9] 다문화사회 정책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	245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초반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한 다문화사회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탄력을 받아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2006년 범부처 종합계획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의 도입 이후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부상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6.5.17.제정, 2007.7.18.시행)이 시행되고, 동법에 근거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수립·시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제정, 2008.9.22.시행)의 시행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도 추진되고 있다. 법률 및 포괄적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정책 추진 기반이 확고해 지고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 영역의 하나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국가간 인적 교류의 증가라는 외적 환경,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의 필요성 증대라는 내적 요인이 가중되어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범위와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다문화사회 정책이 제도적·재정적 측면에서 국가정책으로서의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향후 정책 수요도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동시에 그간 추진되어 온 정책의 목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정책 대상의 범위가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에 배타적으로 집중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비합법체류자, 난민 등 다양한 외국인 소수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 3D업종에서의 인력난 해소, 저출산·고령화

#### 4 ●●●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사회에 대한 해법 등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사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정책 방향 없이 여러 부처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역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책 대상 범위와 내용, 추진체계상의 문제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 다문화사회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이에 기초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에 다문화사회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 인종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 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를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나아가 정부 중심의 다문화사회 정책이 다문화주의의 이념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결혼 뿐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 교육, 여행 등 다양한 목적과 경로의 이주민 증가로 인한 다인종 사회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국가가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지난 3년간(2008~2010년) 지출된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의 구조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정의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정책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보다는 이 연구에서 분류한 사업군별 개선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안한다. 나아가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사회 정책과 관련된 국내의 주요 성찰적 논의를 검토한다. 2000년대 중반 다문화사회 정책의 폭증 이후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사회 정책의 범위와 포괄 대상, 정책 전개과정의 한국적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및 향후 정책과 자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배경적 관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특정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가치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그간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분석한다. 다문화사회 정책의 사업들을 크게 6개의 사업군과 22개 세부사업군으로 분류하고, 사업군별 재정지출의 규모와 비중, 세부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했다.

셋째,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 실적과 성과 분석이다.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실적자료를 분석했으며, 각종 정부 통계 및 기존의 사업별 성과 평가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군별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예산의 삭감이나 확대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정을 삭감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성과 분석은 재정의 삭감 또는 확대를 위한 판단 자료로서가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와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문화사회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의 공적 개입의 적절성이 논점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의 주된 초점은 재원의 투입에 따른 사업의 진전도와 사업 수혜율의 적절성이 된다.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넷째, 다문화사회 정책과 자원배분의 방향,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자원배분의 구조,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이전의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의 우선순위, 자원배분구조 등의 측면에서 제안한다.

### 3. 연구방법

#### 가.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예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

다문화사회 정책은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하므로 많은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규모가 다양해서 모든 부처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수집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료 수집의 난점을 상당부분 해소해 주면서도 가장 종합적인 다문화사회 정책으로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 사업 예산을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했다<sup>1)</sup>. 동 계획은 외국인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 정의(외국인정책위원회, 2008)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정주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소수자 집단을 포괄할 뿐 아니라 다루어야 하는 정책 영역 역시 다문화가족 등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아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이 연구의 정의<sup>2)</sup>에 가장 근접한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sup>3)</sup>에 따라 5년

---

1) 다문화사회 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포괄적 계획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이 있으나 이는 2010년도부터 추진되어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및 사업실적 자료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문화가족 정책이 중심이 되므로 다양한 외국인 소수자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관련해서는 II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마다 수립된다. 또한 동법 제6조4)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외국인정책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가 취합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등 3년간의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의 사업별 예산 정보를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계획수립 년도 뿐 아니라 전년도 사업별 예산과 추진실적, 성과지표 등의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과 사업추진 실적은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정보를, 2009년도 예산과 사업추진 실적은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정보를, 2010년도 예산과 사업추진 실적은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정보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재정지출 규모,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 
-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나. 정부통계 자료 분석 및 사업별 성과평가 자료 활용

다문화사회 정책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일차 자료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이며, 이 외에 출입국관리통계연보(법무부), 외국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종 정부 통계자료와 다문화사회 정책 관련 성과평가 보고서 등을 활용했다. 각 사업군별 성과지표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및 평가지표를 개발한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이혜경 외, 2009)의 사업분야별 핵심 성과지표, 대표지표 등을 토대로 하되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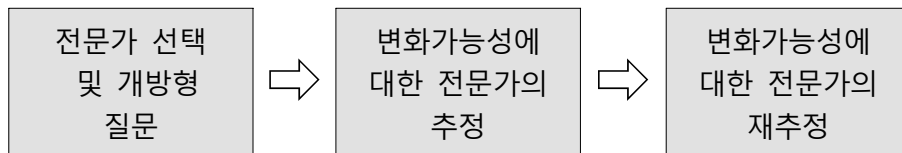
3년간 다문화사회 정책 재원배분의 적절성 및 성과 평가, 그리고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sup>5)</sup>를 실시했다. 델파이 조사는 합의 델파이, 규범형 델파이, 정책 델파이로 분류된다(Mitroff and Turoff, 1973; 이종성, 2001에서 재인용). 합의 델파이(consensus delphi)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고, 잘 정의된 문제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통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중요하다. 규범형 델파이는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전망과 종합적인 관점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견의 합의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강조한다. 따라

5)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은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델파이 방법은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둔 방법으로,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델파이 방법은 미래에 대한 예측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추정을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이종성, 2001).

서 상이한 전공이나 전문성을 가진 패널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델파이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나 자원배분 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주장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이다. 따라서 정책 델파이에는 전문가가 없으며 다만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을 뿐이라고 가정된다.

예측은 본질적으로 잘 구조화된 문제가 아니며, 예측 결과를 보증하는 최신의 단일 방법은 없기 때문에 종합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의 적절성 및 성과 평가를 위해서 합의 델파이 방법을, 향후 정책의 방향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방법의 일반적 절차는 ‘전문가 선택 및 개방형 질문’ →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추정’ →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재추정’으로 3~4회에 걸쳐 질문을 하며, 절차의 반복과 피드백을 통하여 의사소통 과정을 구조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피드백된 전회(前回)의 통계적 집단 반응과 소수 의견 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 회에 자기 판단을 수정·보완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보를 객관화하고 합의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림 I-1] 델파이의 일반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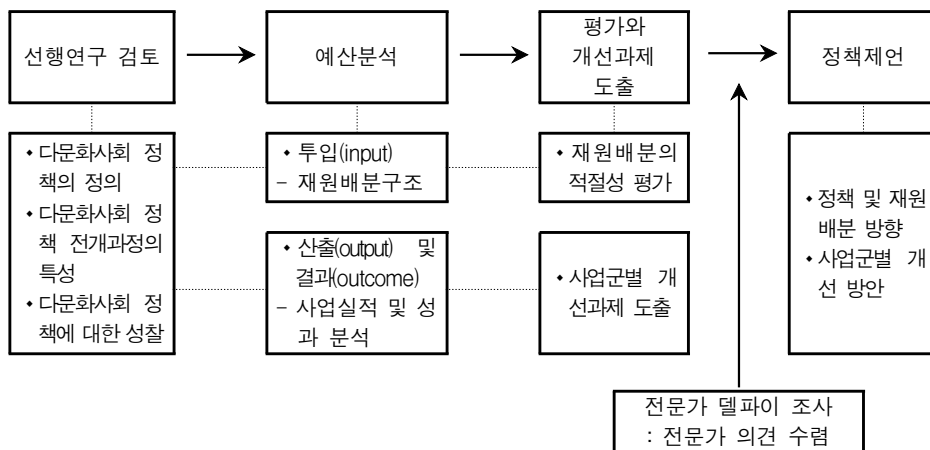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표준 델파이라고 하는 지필형이다. 이는 소수의 모니터 팀이 설문지를 작성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질문지를 보낸 후 그 결과를 요약, 편집하여 새로운 질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에 보내고, 전문가 집단은 집단반응을 검토하여 자신의 응답을 재평가할 기회를 갖는다. 두 번째 방법은 실시간 델파이(real-time Delphi)로 질문지 우송 및 회수, 결과의 통합과 편집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때

일 조사를 통하여 ‘표준 델파이’ 방법을 시행했다. 델파이 조사 절차와 대상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VI장에서 서술한다.

## 4. 연구모형 및 분석틀

### 가. 연구모형

2006년 이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면적 확산 이후 이와 관련된 국내의 성찰적 논의를 검토한 후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을 분석했다. 예산 분석은 크게 투입(input)과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로 구분된다. 투입은 다문화사회 정책을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업군으로 분류한 후 각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구조를, 산출은 3년간의 사업별 추진 실적자료를, 결과는 사업군별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예산 분석 후 1차적으로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더불어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의 적절성과 성과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다문화사회 정책의 자원배분 방향과 정책의 개선 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그림 1-2] 연구모형

## 나. 예산분석틀

### 1)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의 재분류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다양한 사업을 사업의 목표를 기준으로 ① 해외인력유치, ② 다문화가족 지원, ③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④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⑤ 외국인 인권보호, ⑥ 국경·국적관리 등 6개의 사업군과 22개 세부사업군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6개 사업군 및 22개 세부사업군별로 3년(2008~2010)간의 재정지출 규모와 각 사업군의 재정 비중, 그리고 세부사업군의 재정지출 구조와 사업내역을 분석했다.

6개 사업군의 정의와 세부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I-1〉 6개 사업군 분류 기준

사업군	정의	기본계획 세부사업
해외인력유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전문 기술인력, 투자자, 유학생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거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 또는 단순 기능인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1-1-2. 국가차원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1-2-1. 지역별,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 기능인력의 확보 1-2-2. 기업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 기능인력 도입 2-4-1.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 지위와 제도정비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와 가족, 자녀의 한국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2-2-2.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2-2-3.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2-3-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2-3-2.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내국인 다문화 이해증진	국내에 체류 또는 정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사회, 문화적 공존을 위한 내국인 인식 개선 사업	2-1-1.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2-1-2. 참여 및 소통 강화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국내에 체류, 정주하는 외국인 일반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1-3-1. 외국인 체류지원 강화 1-3-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2-4-2. 국내체류동포 처우개선

12 ●●●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사업군	정의	기본계획 세부사업
외국인 인권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	4-1-1.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4-1-2.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강화 4-2-1. 보호관련 적법절차 준수 4-2-2.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4-2-3. 보호시설의 물적, 인적 인프라 개선 4-3-1.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 체계 구축 4-3-2.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국경· 국적 관리	비합법체류자, 출입국 사범, 초국가적 범죄 대응 관련 사업	3-1-1.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3-1-2. 외국인 집단 거주지 관리 강화 3-1-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3-2-1.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 외국인 관리 3-2-1.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3-3-1. 국적 업무의 신속성, 전문성 확보 3-3-2. 귀화허가시 검증기능 강화

①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문직 등 고급인력이나 기능직 등 생산인력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된다. ②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은 결혼이민자와 가족,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다. ③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국내에 체류·정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다. ④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체류 또는 정주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출신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외국인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⑥ 국경·국적관리 사업군은 비합법체류자, 출입국사업,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다.

6개 사업군별 세부사업군은 다음같이 22개 세부사업군으로 분류했다.

〈표 I-2〉 22개 세부사업군

사업군	세부사업군	사업내용
해외인력 유치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우수인력 정보 제공 및 인력도입 지원, 입국 및 안정적 체류·정주 자격 부여
	유학생 유치	장학생 유치, 유학생 취업지원
	기능인력 도입	기능인력 활용 기업 지원 및 도입규모 관리, 산업안 전 및 체류지원
	재외동포 취업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방문취업 피해 방지
다문화가족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결혼이민 피해 예방 교육, 국제결혼 관리·감독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 강사 양성, 의사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취업지원, 경제적 지원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언어 및 교육지원, 기본학습능 력 및 유치원생활 적응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이중언어 교육, 학교생활 지원, 학부모 상담, 사회적 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지원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다문화교육	교육자료 개발, 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인력 양성, 다 문화교육, 다문화 전시, 프로그램 개발, 공무원 교육
	홍보 및 행사	포럼·세미나 개최,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각종 행 사 및 축제
체류· 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생활정보 제공, 민원 편의
	교통·주거·교육환경 개선	교통정보, 주택공급, 교육환경 개선
	문화·여가·복지 환경 개선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도서관 정보 서비스, 여가 활동, 복지환경
	체류동포 처우개선	법률 및 종합 서비스, 취업지원, 안정적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차별 모니터링, 인권침해 구제
	피해 이주여성 구제	피해여성 지원,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인권보호 환경조성, 고충처리 상담, 보호소 인프라 정비
	난민 인정·지원	난민 지원, 난민 업무 인프라 구축
국경·국적 관리	불법체류 감소	입국제한, 조사·단속, 유학생 관리
	초국가적 범죄 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국적 관리	귀화 필기시험 관리, 국적취득 심사 강화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은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유학생 유치, 기능인력(외국인 근로자) 도입, 재외동포 취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인력의 특성에 따라 4개의 세부사업군으로 분류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이른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들로 구성된다. 가족형성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서 국제결혼 피해 예방, 결혼이민자 개인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한 취학 전 자녀 양육 및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의 사업들로 구성된다.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권보호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으로 분류했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은 유치원, 초·중등 학교, 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육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불특정 다수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행사 사업으로 구분된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체류동포 처우개선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이 아닌 외국인 일반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구분된다.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교통·주거·교육환경 개선, 문화여가복지환경 개선, 체류동포 처우개선 등의 세부사업군으로 분류했다. 체류동포의 경우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체류동포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으로 분류했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특정 집단으로 특화되지 않은 외국인 일반에 대한 차별방지와 구제, 피해 이주여성 구제,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난민 인정·지원 등 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특정 집단에 특화된 인권 구제 사업들로 구분된다. 국경·국적관리 사업은 불법체류 감소, 초국가적 범죄 대응, 국적 관리 등 출입국 행정 관련 사업들로 구분된다. 동 사업군의 경우 다문화사회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연구는 국경통제 및 국적 관리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사업군으로 분리했다.

하나의 사업은 하나의 속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관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군에 분류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중심적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사업군으로만 분류했다.

## 2) 재정지출 구조 분석

### 가) 6개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 비중

재정지출 구조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6개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의 비중을 분석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유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안정적 적응과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대상별로 특화되지 않은 외국인 일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차별과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불법체류 및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국경·국적 관리 등 각 사업군별로 지출된 예산의 규모와 비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성찰적 논의에서 제기된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격과 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나) 22개 세부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와 사업내역

6개 사업군을 다시 22개 세부사업군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군 내에서의 재정지출 구조와 사업 내용을 분석한다. 세부사업군 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다시 유형화하고, 사업유형별 소관부처와 사업내역을 분석하여 부처간 역할분담 방식을 분석한다. 더불어 세부사업군의 사업수단의 특징에 주목한다. 즉 사업이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의 사업인지, 장기적인 활용을 위한 인프라성 사업인지를 분석한다.



### 3)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 가) 세부사업 실적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추진실적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세부사업별로 3년간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한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실적 자료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수집했다.

#### 나) 6개 사업군별 성과지표 선정

6개 사업군별로 논리틀 접근(Logical Framework Approach, LFA)을 적용하여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했다. 논리틀 접근에 의한 성과측정 및 평가는 각 사업의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및 목표(goal) 파악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 평가단계간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각종 통계자료와 실증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이혜승·김난영, 2011). 이 연구는 논리틀 접근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각 사업군의 목표-활동(activity)-결과(outcome)의 논리적 연계를 통해 성과를 분석했다. 각 사업군별 목표-활동-결과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의 <표 I-3>과 같다<sup>6)</sup>.

<표 I-3> 6개 사업군별 성과지표

사업군	목표	세부사업군 (활동)	성과지표 (결과)
해외인력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인재 증가율</li> <li>• 골드카드 발급자 증가율</li> </ul>
		유학생 유치	
	기능인력 도입을 통한 생산직 인력난 해소	기능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li> </ul>
		재외동포 취업	

6) 각 사업군별 성과지표 선정 근거는 V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사업군	목표	세부사업군 (활동)	성과지표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의 안 정적 정착	국제결혼 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수혜율및도움정도</li> <li>• 결혼이민자가족상담수혜율 및 도움 정도</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율</li> </ul>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li> <li>•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수혜율 및 만족도</li> <li>• 수혜아동 언어발달 진전 정도</li> </ul>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다문화 의식 확산	다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율</li> <li>• 교직과정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율</li> <li>• 초·중·고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 반영 정도</li> </ul>
		홍보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건수</li> </ul>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편리한 체류환경 조성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율</li> <li>• 3자 통역서비스 증가율</li> <li>• 외국인 및 동포의 생활 만족도</li> </ul>
		교통·주거·교육환경 개선	
		문화·여가·복지 환경 개선	
		체류동포 처우개선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 인권보장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이주여성 상담 실적</li> <li>•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li> <li>• 난민인정률</li> </ul>
		피해 이주여성 구제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난민 인정·지원	
국경·국적 관리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체류율</li> <li>•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이용율</li> </ul>
		초국가적 범죄 대응	
		국적 관리	

## 5.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 지출 구조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엄밀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의 한계가 있다.

우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한계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집가능한 자료 중 가장 포괄적으로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이 계획에 포괄되지 않고 누락된 정책들이 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문화사회 정책도 있으므로 실제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규모는 이 연구에서 추정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또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예산 정보는 정부나 국회의 예산정보시스템이 아니라 담당자의 보고에 기초하므로 정보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더불어 재정규모와 지출구조는 결산이 아닌 정부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실제 집행된 재정의 규모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 추정된 예산 규모의 정확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용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의 추이와 비중,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치명적인 오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성과분석의 한계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분석대상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할 때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가능하고 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경우 사업별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성과 정보나 거시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계량적인 성과 분석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 연구의 경우 하나 또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정밀한 성과분석이 아니라 200개 이상의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계량적 성과 자료를 수집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계량적 성과지표를 활용했지만, 종합적인 성과 분석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질적 분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는 일반인 보다 특정 분야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판단이 항상 높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제한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 6. 보고서의 내용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과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의 배경적 관점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이 연구의 기반이 되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사업 및 예산의 규모와 비중을 부처별, 기본계획의 사업영역별로 개괄한다. IV장은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한다. 다문화사회 정책의 사업들을 해외인력유치, 다문화가족 지원,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 국경·국적 관리 등 크게 6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군별 예산규모와 비중을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성격을 논의했다. 또한 6개 사업군을 다시 22개 세부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군 내에서 재정지출 구조와 사업내역을 분석했다. V장은 6개 사업군과 세부사업군별로 3년간의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규모 대비 사업의 진전도와 모집단 대비 사업 수혜율을 중심으로 사업군별 성과를 분석했다.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의 목적은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VI장은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6개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적절성과 적정 비중, 재정지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했다. VII장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자원배분 방향 및 주요 정책 개선 방안,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II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정의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정책에서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지만, ‘다문화사회 정책’의 정의와 대상,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학계에서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는 결혼이주자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다문화사회 정책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 정책’,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다문화 이해’와 같은 용어를 키워드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정책영역 뿐 아니라 언론, 나아가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 자체를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는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이러한 정의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때의 ‘다문화’는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본래적 의미보다는 한국적 맥락에서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이라는 의미와 우연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화교, 비합법체류자, 탈북자, 난민 등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병렬·김희자(2011)는 ‘이주정책’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 국적 동포노동자, 비동포 이주 노동자, 화교, 난민 등 다양한 이주 집단에 대한 정책의 비교를 통해 이주정책의 차별배제 논리를 분석했다. 원숙연(2008)은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 화교, 비합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 남성 집단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해 ‘다문화주의 시대’ 외국인 소수자 정책의 성격을 분석했다.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 제한된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계 논의의 대부분이 외국인 소수자 정책으로서 다문화사회 정책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정책 또는 이민정책과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셋째, 이민자나 소수인종 뿐 아니라 성적, 종교적 소수자 등 한 국가에 존

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정책이다. 전영평(2008)은 외국인 소수자 중심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는 다민족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오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면서 ‘다문화’를 ‘한 국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세력이 표출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은 타민족 소수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AIDS 환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집단 등 다양한 국내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과 관련된 논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주의 시대 소수자 행정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권, 고용, 복지, 교육을 제안한다. 오경석(2007)은 다문화사회 정책이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다문화주의는 이주자 집단과 국내의 소수자 집단의 연합에 근거한 다원주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정의는 전문 인력에 우호적인 이민정책의 틀 내에서 ‘정주형 이주민’인 결혼이민자만을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지적하듯이 결혼 목적이 아닌 이민자를 당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노동, 학업, 여행,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체류 또는 정주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한다. 세 번째 정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원론적인 정치철학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고 다문화사회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일 수는 있겠지만, 연구의 목적상 내국인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 정책을 외국인 소수자 정책으로 보는 두 번째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는 첫 번째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사회’가 제기하는 핵심적 문제 영역으로서 외국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첫 번째 정의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이나 투자가, 유학생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적극적 유치의 대상이 되는 집단도 사회적 소수자의 범주로 본다. 경영자, 교수, 엔지니어, 외국인강사 등인 전문인력은 내국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인권침해나 착취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덜 할 수 있다(한승주, 2010).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선진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한 문화적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다문화사회 정책의 대상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사회 정책의 대상은 결혼이주자와 가족 뿐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난민 인정자, 외국인유학생, 투자가, 비합법체류자 등을 포괄한다.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외국인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26만명이며, 이 중 외국국적 동포는 477천명(37.8%)으로 비율이 가장 높다. 단순기능인력은 227천명(18.0%)이며, 결혼이민자는 141천명(11.2%)이다. 비합법체류자는 168천명으로 체류 외국인 중 13.4%를 차지한다. 이외 우수인재로 분류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87천명(6.9%), 전문인력은 44천명(3.5%)이다.

〈표 Ⅱ-1〉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사회 정책 주요 대상 현황(2010)

(단위: 명, %)

구분	유형	인원	비율	
전체	합법+비합법	1,261,415		
주요 정책대상*	외국국적동포	477,029	37.8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44,320	3.5
		단순기능인력	227,035	18.0
	결혼이민자(국적 비취득)	141,654	11.2	
	난민 인정자	222	0.0	
	외국인 유학생	87,480	6.9	
	외국인투자가	12,034	1.0	
	비합법체류자**	168,515	13.4	

자료: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주요 정책대상만 포함된 것이므로 대상별 합계와 비율은 전체보다 작음.

\*\* 주요 정책대상에 합법체류자와 비합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합법체류자는 전체 체류자 중 비합법체류자의 수입.



## 2. 다문화사회 정책 전개과정의 특성

###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도입

정책영역에서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 방안」,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의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 정부가 각종 외국인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출발하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활용정책과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불법적인 인권침해,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었으며, ‘다문화’라는 용어는 정부 문건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여 정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외국인력 정책 기조, 결혼이민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는 사실상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했다.

2006년에 발표된 각종 외국인 관련 대책은 외국인 정주자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직접적으로는 단순기능 인력의 증가와 불법체류, 결혼이민자 여성 및 그 자녀의 증가 등 외국인의 정주화로 인한 사회적응과 갈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인적 교류의 증가로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된 문제인식은 국익을 위한 인력활용 중심의 이민정책으로부터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 정책의 본격적 확산의 출발점이기도 했다(이혜경, 2007; 엄한진,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포괄하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국익

우선·통제중심에서 국익과 인권보장의 균형이라는 정책 기조와 외국인을 일시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본다는 관점을 제시하게 된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6). 정책 대상도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여성·외국인의 자녀, 난민,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국민 등 다양하게 설정되었다.

이처럼 외형상 외국인 관련 정책이 외국인의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포괄하게 되었지만, 실제 정책의 수립과 전개는 국익과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과거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외국국적 동포를 외국인력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 준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단순 기능인력과 비합법체류자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외국인정책위원회, 2006), 장기 정주화 방지라는 국익 관점의 정책 기조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책이 마련되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 국익과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안정적 정주가 전제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제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문화사회 정책이 곧 협소하게 정의된 다문화가족 정책과 동일시되는 다음의 전개과정은 한국적 맥락에서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과정

### 1) 시민사회 다문화 의제의 선별적 채택

2006년 발표된 외국인 관련 사회통합 정책은 이전부터 시민사회 내에서 전개되어 온 사회운동의 의제를 선별적으로 채택한 것이다(한경구·한건수, 2007). 당초 시민사회가 사회운동을 통해 제기해 온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마땅한 정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합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폭행, 무시, 임금체불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반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운동성격을 지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인 것이 기능 인력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김희정, 2007; 윤인진, 2008). 이주노동자 운동은 기능 인력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폐쇄성과 차별적 시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데 성공했다(한경구·한건수, 2007).

다른 한편 2000년대 들어 이주여성인권단체는 중개업체에 의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과 결혼 이후의 가정폭력, 성적 학대 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화된 중개업체를 매개로 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성적 상품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높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성사된 결혼 이후 남편과 가족들로부터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알려나가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김선희·전영평, 2008; 김혜순, 2010).

상대적으로 과거 정권에 비해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민감했던 참여정부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인권 의제를 외국인 정책에 통합했지만, 정책 슬로건으로서 ‘다문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의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단속, 추방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존이라는 슬로건은 공허할 따름”이며, “공존을 위해 문화에 앞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삶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이고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동의 기회’”라는 오경석(2007)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의 요구에서 출발한 외국인 인권 의제가 관주도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 속에서 어떻게 희석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접근 역시 여성단체가 제기했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의 성격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보수적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더 강했다. 김선희·전영평(2008)은 2006년 발표된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당초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으로 마련되었으나 대통령자문회의인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위한 미래위원회’의 시각이 개입되면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이 아닌 가족단위의 지원 대책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2) 다문화주의 아닌 구호로서 ‘다문화’

2006년 이후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정부 문건에서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이 등장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캐나다와 호주가 채택한 공식적 다문화주의와 유사하게 보이지만(오경석, 2007; 김희정, 2007), 사실 정책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는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의 공존이라는 서술적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가 아니며, 철학적, 정치적, 규범적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한국의 정책에서 다문화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은 두 가지이다. 가장 빈번한 용법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때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곧 ‘다문화(사회) 정책’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문화’는 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출신 여성과 그 가족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 이외의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의식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 때 다문화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의식과 편견이 제거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다문화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삶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의식 개선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은 전통적인 이민국가가 아닌 한국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캐나다, 호주 등 이민정책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모두 이주자에 의해 수립된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김희정, 2007) 또는 이민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된 사회통합의 이념이다(한경구·한건수, 2007; 윤인진, 2008). 이 과정에서는 소수민족, 원주민, 소수인종 등 주류 사회 내에서 소

수자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압력이 있었고, 이들의 생존과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문화주의가 채택된 것이다(윤인진, 2008)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문화사회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갈등의 주체로 부상하지도 않았고, 조직적 활동을 통해 집단적 요구를 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엄한진, 2007; 김남국, 2008)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이 이주민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제기되었다기 보다는 이들을 지원하던 시민단체를 통해, 그리고 시민단체의 인권보장 요구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도구적 필요성의 틀 내에서 해석한 국가에 의해 정의되고 정책이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이민문제를 둘러싼 본격적 갈등을 통한 외국인 사회통합 모델에 대한 전면적 검토라기 보다는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국민의 정서상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규범적 차원에서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자의적으로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놓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재외동포의 현실은 ‘다문화사회 정책’의 주요 의제에서 배제된 반면, 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윤인진, 2008). 김희정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니었다면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의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펼칠 인센티브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처럼 관주도형 다문화사회 정책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김희정, 2007). 엄한진(2007)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결혼이주에 대한 관대한 시각의 근저에는 국익을 위해 국제결혼이 불가피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고, 그 저변에 저출산·고령화 담론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 3) ‘다문화’ 사업의 경쟁적 팽창

2006년 외국인 관련 대책 발표 이후 ‘다문화’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 동일시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부상하여 관련 기관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새로운 정책으로서 다문화사회 정책은 복지 성격의 서비스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기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산과 행정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김혜순, 2010) 대상 중심의 사업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기능별로 구분된 기존의 부처간 역할 분담 체계 하에서 주체가 불분명하여 부처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예산을 7배 증액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정주 외국인의 초기 사회적응을 위해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했다(김현미, 2008). 또한 행정안전부는 “한국이 급속히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이해 하에” 부서 행정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단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다문화를 강조하고 타인종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중앙 부처들은 ‘다문화사회 정책’의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김희정, 2009).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더욱 팽창하여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등 8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5년에는 86개 기관(10.5%)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242개(29.4%)로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전체 기관의 40%이상이 결혼이민자 가족 사업을 시행했다(김선희·전영평, 2008).

이전에 외국인 인권에 개입해 왔던 시민단체 역시 비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고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정부로부터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기존 활동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면서 ‘다문화’는 민간 영역에서도 확산되었다(윤인진, 2008; 이선옥, 2007).

각 부처별로 새로운 정책 의제와 예산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부처별 중복지원과 가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단기적인 이벤트성 지원정책의 확대를

가져왔다(이민경, 2010). 김혜순은 이를 정책 대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목표보다 예산과 인력확보, 산하기관 설치 및 확대를 통한 부처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장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김혜순, 2010).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한 이후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대상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보니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름만 다른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3.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성찰

#### 가. 선별적 포용과 배제

학계의 연구자들은 ‘다문화’를 표방하면서 국가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이 과연 ‘다문화’라는 용어에 걸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윤인진(2007)은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이 합법 외국인에 국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의 수혜자가 합법적인 구성원에 한정됨으로써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한경구와 한건수(2007)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들이 출신국가의 경제력과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체류 국가에서 특권을 누리는 데니즌(denizen)과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가는 마지즌(margizen)으로 분화되어 차별적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이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차별적 반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개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입국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른 효과이다.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전문인력, 투자가, 유학생 등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치와 국내 정착을 장려하지만,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원숙연(2008)은 국적성과 혈통이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화교, 새터민 등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정책 대상으로 통합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준-한국인을 생산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적 편입이 가장 적극적이던데 반해 완전히 다른 궤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와 화교는 정책적 배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같은 민족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새터민은 적극적 포섭과 적극적 배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모든 정책 영역에서 국민과 동등한 정책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새터민 특수적 욕구에 기초하여 정착, 주거, 취업, 사회복지 등 정책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비교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약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병렬과 김희자(2011)는 한국의 이주정책이 새터민과 결혼이주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민 집단에 대해 정주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고, 정주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복지권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차별배제모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적 특수성은 배제된 집단 내부에서 외국국적동포→외국인노동자→비합법체류자로 이어지는 민족과 비민족간의 차별과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층화적 차별배제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접근이 동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주 경로와 한국사회 내에서의 지위의 차이에 기초한 외국인의 다양한 ‘다문화적 상황’(한경구·한건수, 2007)의 차이를 간과한 채 명료하게 정의되고 합의되지 않은 ‘다문화’라는 개념을 모든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구호처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중

다문화가족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체류 외국인 중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이주노동자의 배제에 대해 특히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최종렬(2010)은 다문화사회 정책 대상이 국제결혼이주자와 자녀, 국적취득자 등 한국에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합법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이주노동자가 단기순환정책과 정주방지 원칙에 따라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일시체류 외국인으로 여전히 인력 활용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경석(2007) 역시 결혼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체 이주자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위상을 갖는 것은 아니며, 문제의 핵심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시한다(오경석, 2007).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보면서 결혼이민자라는 제한적 범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엄한진(2007)은 한국의 이민논의가 두 개의 속도,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비합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고 본다.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범을 어기는 일종의 불법이민으로서 결혼이주에 대한 관대함과 이보다 덜 불법적인 미등록 이주문제에 대한 엄격한 이중성을 다문화사회 정책의 문제로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는 소수집단의 배제보다 인구, 가족문제 등 국익론과 이주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의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포하는 것이다.

## 다. 다문화가족 사업의 기부장적 동화주의

앞서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서구와 달리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한 이주민 스스로의 요구보다 이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국익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국가가 선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이 문제시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은 이주자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라

기 보다는 온정적 복지의 시혜자(김선희, 전영평, 2008)이자 적극적인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한다(김남국, 2008). 이는 특히 다문화가족 사업 정책에서 드러난다.

최종렬(2010)은 화교와 혼혈인에 대해서는 100년간 차별, 배제정책을 취해 왔음에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펴는 것은 그 밑바탕에 재생산, 돌봄의 위기를 해결해 줄 인적 자원으로 이주여성을 보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여성을 가부장적 핵가족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현미(2008) 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보다는 한국식 가족의 유지와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그 예로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한국어 교육과 적응에서 갑작스레 증가했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든다.

김희정(2007)은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이 결혼이민자들을 전통적인 한국 며느리 혹은 한국 어머니로 통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문화적 권리보다 한국인으로서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을 수혜대상으로 포괄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어머니이자 며느리의 역할을 하는 이주여성만이 경제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잠재적 국민으로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오경석(2007)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민족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한국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서 성평등적인 지향성이 배제된 순혈주의적 관점을 전제로 하므로 한국 사회의 다원화를 증진하는 기제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그동안 ‘다문화’에 내포된 규범

적, 정치적 의미는 물론이고, 인종적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서술적 의미도 내포하지 못한 채 구호로 사용되어 온 ‘다문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서구와 전적으로 다른 맥락과 방식으로 도입된 ‘다문화’를 한국적 독자성을 고려하여 정의하고, 다문화사회가 제기하는 정책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 개요



## 1. 전체 사업 개요

### 가. 총괄

지난 3년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전체 사업수는 2008년 185개에서 2009년 175개, 2010년 158개로 감소했다. 2008년 18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종료했고 종료된 사업은 우수인력, 비합법체류자, 귀화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 정비 사업이 대부분이다. 계획 시행 첫해에 법률과 제도 정비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11개 사업이 신규로 도입 되고 23개 사업이 종료했다. 신규로 도입된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다문화가족 사업이 다수이다. 종료된 사업은 재외동포, 난민, 우수인력 관련 법제도 또는 외국인 관련 행정 절차 정비 사업들이다. 2010년에는 7개 사업이 신규로 도입되고 18개 사업이 종료했다.

예산사업 여부별로 보면, 예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법·제도 정비를 비롯한 비예산사업의 비중이 감소했다. 예산사업은 2008년 34.6%(64개)에서 2009년 41.1%(72개), 2010년 46.8%(74개)로 전체 사업 중 약 절반을 차지할 만큼 증가했다. 예산사업이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 편성된 예산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예산사업은 2008년 42.2%(78개), 2009년 49.7%(87개), 2010년 54.4%(86개)로 3년동안 10%p이상 증가했다 비예산사업 수는 2008년 107개로 57.8%였으나, 점차로 비중이 감소하여 2009년 50.3%(88개), 2010년 45.6%(72개)로 절반 이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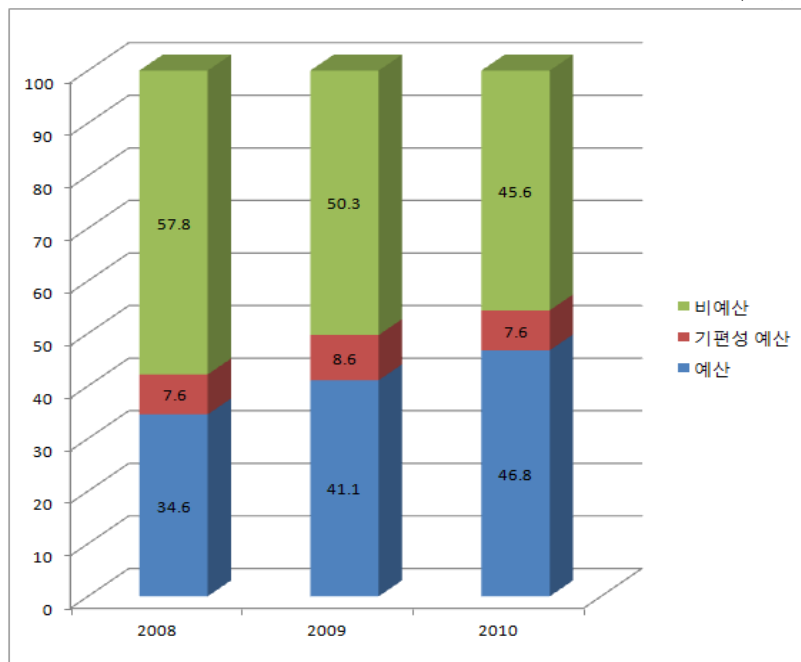
〈표 Ⅲ-1〉 연도별 사업 추이

(단위: 개, %)

	2008		2009		2010	
	사업수	백분율	사업수	백분율	사업수	백분율
예산	64	34.6	72	41.1	74	46.8
기편성 예산*	14	7.6	15	8.6	12	7.6
비예산	107	57.8	88	50.3	72	45.6
합계	185	100.0	175	100.0	158	100.0

\* 기편성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정보센터 등과 같은 기관 운영비로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예산을 의미함. 예산사업이지만 별도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규모에서 제외된다.

(단위: %)



[그림 Ⅲ-1] 연도별 사업수 추이

## 나. 부처별

다문화사회 정책 시행 부처는 2008년과 2010년이 각각 10개, 2009년 11개였다. 이 중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소관 사업의 비중이 높다. 전체 사업 수 중 법무부 사업은 40~50%, 보건복지부 사업은 15~16%,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10~1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지난 3년간 전체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8.6%에서 2009년 45.1%, 2010년 41.8%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다. 그러나 법무부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보다 법제도나 행정절차 개선 등 비예산사업이 많다. 전체 비예산사업 중 법무부 소관 사업이 매년 약 70% 가까이 된다. 비예산사업에 비해 예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사업 중 22~23%가 법무부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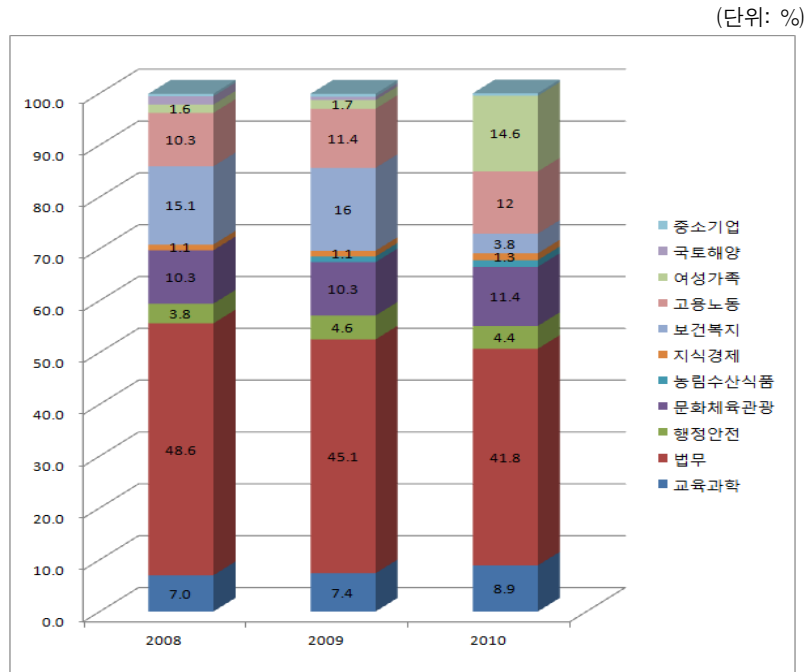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사업은 예산사업이 많다. 예산사업 중 20% 내외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에는 기편성된 예산의 일부로 집행되는 사업이 다른 부처보다 많다. 기편성 예산의 일부로 추진되는 사업 중 75%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로 예산사업 중 약 25~30%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도 개선 등 비예산사업이 많다. 비예산사업 중 고용노동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5.0%에서 2009년 20.5%, 2010년 25.0%로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은 예산사업이 많으며, 2009년 이후 예산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2008년 9.4%에서 2009년 이후 약 14%를 차지한다.

〈표 Ⅲ-2〉 부처별 사업 추이

(단위: 개, %)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기편성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기편성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기편성 예산	비예산	전체
교육과학 기술부	6 9.4	-	7 6.5	13 7.0	10 13.9	-	3 3.4	13 7.4	10 13.5	1 8.3	3 4.2	14 8.9
법무부	15 23.4	-	74 69.2	90 48.6	16 22.2	2 13.3	61 69.3	79 45.1	16 21.6	2 16.7	48 66.7	66 41.8
행정안전부	4 6.3	1 7.1	2 1.9	7 3.8	6 8.3	1 6.7	1 1.1	8 4.6	6 8.1	-	1 1.4	7 4.4
문화체육 관광부	18 28.1	-	1 0.9	19 10.3	18 25.0	-	-	18 10.3	18 24.3	-	-	18 11.4
농림수산 식품부					1 1.4	-	1 1.1	2 1.1	2 2.7	-	-	2 1.3
지식경제부	1 1.6	-	1 0.9	2 1.1	2 2.8	-	-	2 1.1	2 2.7	-	-	2 1.3
보건복지부	13 20.3	12 85.7	3 2.8	28 15.1	13 18.1	12 80.0	3 3.4	28 16.0	1 1.4	3 25.0	2 2.8	6 3.8
고용노동부	3 4.7	-	16 15.0	19 10.3	2 2.8	-	18 20.5	20 11.4	1 1.4	-	18 25.0	19 12.0
여성가족부	3 4.7	-	-	3 1.6	3 4.2	-	-	3 1.7	17 23.0	6 50.0	-	23 14.6
국토해양부	-	-	3 2.8	3 1.6	-	-	1 1.1	1 0.6				
중소기업청	1 1.6	-	-	1 0.5	1 1.4	-	-	1 0.6	1 1.4	-	-	1 0.6
전체	64 100.0	14 100.0	107 100.0	185 100.0	72 100.0	15 100.0	88 100.0	175 100.0	74 100.0	12 100.0	72 100.0	158 100.0





[그림 Ⅲ-2] 부처별 사업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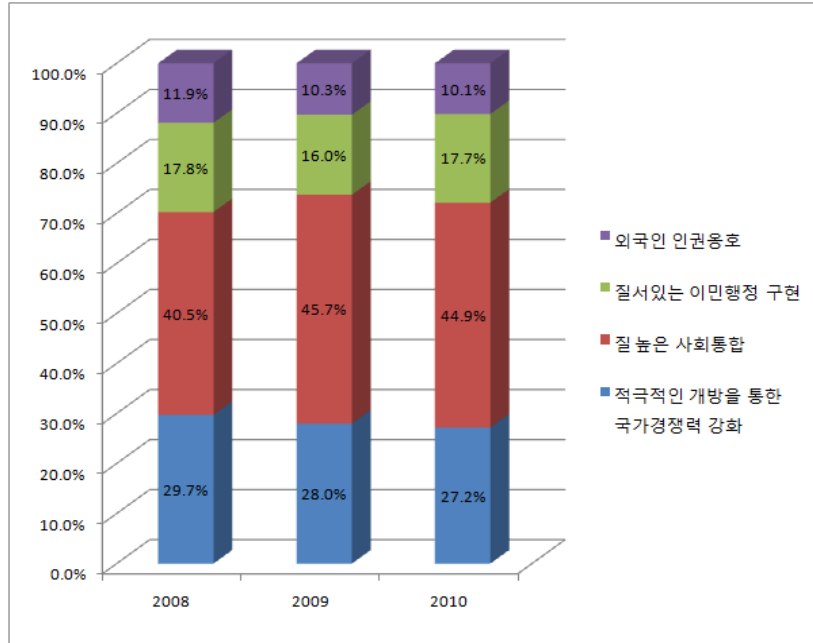
####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전체 사업 중 결혼이민자와 가족 지원 사업이 많이 포함된 질 높은 사회통합 영역 사업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영역은 약 30%,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16~18%, 외국인 인권 옹호 10~12% 수준이다. 세 영역 사업의 비중이 1~2% 감소하면서 질 높은 사회통합 영역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0.5%(75개)에서 2009년 45.7%(80개), 2010년 44.9%(71개)로 증가했다. 질 높은 사회통합 영역은 예산사업이 많으며, 연도별로 예산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08년 32개 예산사업 중 질 높은 사회통합 영역 사업이 50.0%였으며, 2009년도에는 55.6%, 2010년에는 56.8%로 증가했다.

〈표 Ⅲ-3〉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사업 추이

(단위: 개, %)

연도	구분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		전체	
		사업수	백분율	사업수	백분율	사업수	백분율	사업수	백분율	사업수	백분율
2008	예산	21	32.8	32	50.0	6	9.4	5	7.8	64	100.0
	비예산	33	30.8	30	28.0	27	25.2	17	15.9	107	100.0
	기편성 예산	1	7.1	13	92.9	-	-	-	-	14	100.0
	전체	55	29.7	75	40.5	33	17.8	22	11.9	185	100.0
2009	예산	22	30.6	40	55.6	4	5.6	6	8.3	72	100.0
	비예산	26	29.5	26	29.5	24	27.3	12	13.6	88	100.0
	기편성 예산	1	6.7	14	93.3	-	-	-	-	15	100.0
	전체	49	28.0	80	45.7	28	16.0	18	10.3	175	100.0
2010	예산	19	25.7	42	56.8	8	10.8	5	6.8	74	100.0
	비예산	22	30.6	19	26.4	20	27.8	11	15.3	72	100.0
	기편성 예산	2	16.7	10	83.3	-	-	-	-	12	100.0
	전체	43	27.2	71	44.9	28	17.7	16	10.1	158	100.0



[그림 Ⅲ-3]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영역별 사업수 추이

## 2. 재정지출 추이

###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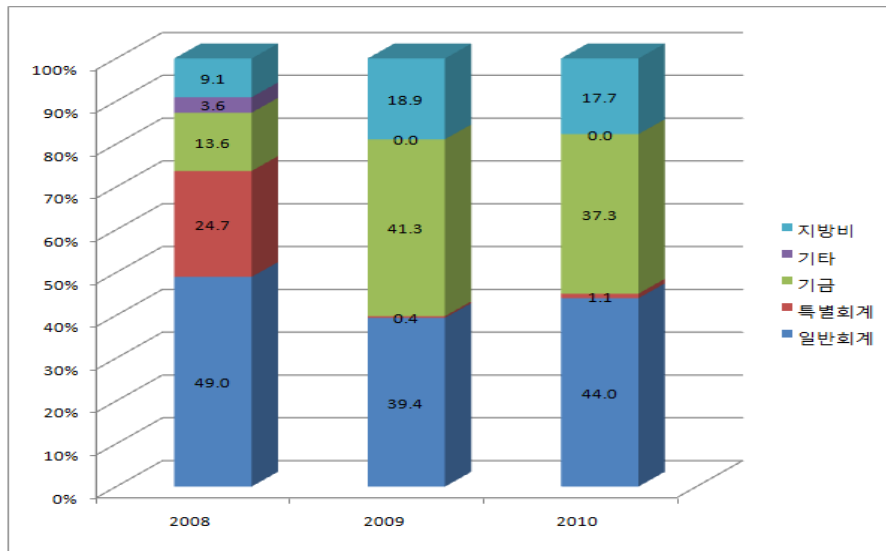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 규모는 총 2,91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747억 원, 2009년 1,053억 원, 2010년 1,110억 원으로 2009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면서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재원구성을 보면 2008년에는 국비가 약 91%를 차지했으나, 2009년 81%, 2010년 82.3%로 약 10%p 낮아졌다. 국비 중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이 낮아지고 기금의 비중이 높아졌다. 기금은 2008년도에는 13.5%였으나 2009년도 41.3%, 2010년도 37.3%를 차지한다.

〈표 Ⅲ-4〉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및 재원구성

(단위: 억 원, %)

	2008		2009			2010			3년 합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증감율	예산	비중	증감율	예산	비중	
합계	746.82	100.0	1,053.47	100.0	40.9	1,109.74	100.0	5.3	2,910.03	100.0	
국비	합계	679.78	90.8	854.7	81.1	25.7	913.62	82.3	6.9	2,448.1	84.1
	일반회계	366.05	49.0	415.23	39.4	13.4	488.22	44.0	17.6	1,269.50	43.6
	특별회계	185.00	24.7	4.26	0.4	△97.7	11.76	1.1	176.1	201.02	6.9
	기금	100.99	13.5	435.21	41.3	327.9	413.55	37.3	△5.0	950.46	32.7
	기타	27.00	3.6		0.0	△100.0	.09	0.0	-	27.09	0.9
지방비	67.77	9.1	198.77	18.9	193.3	196.12	17.7	1.3	462.66	15.9	

(단위: %)



[그림 Ⅲ-4]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연도별 재원의 변화

### 나.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에 집중되어 있다. 3년 누적 예산 규모를 보면, 3개 부처의 예산이 72%를 차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총 2,911억 원의 예산 중 33.8%(982억)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19.3%, 19.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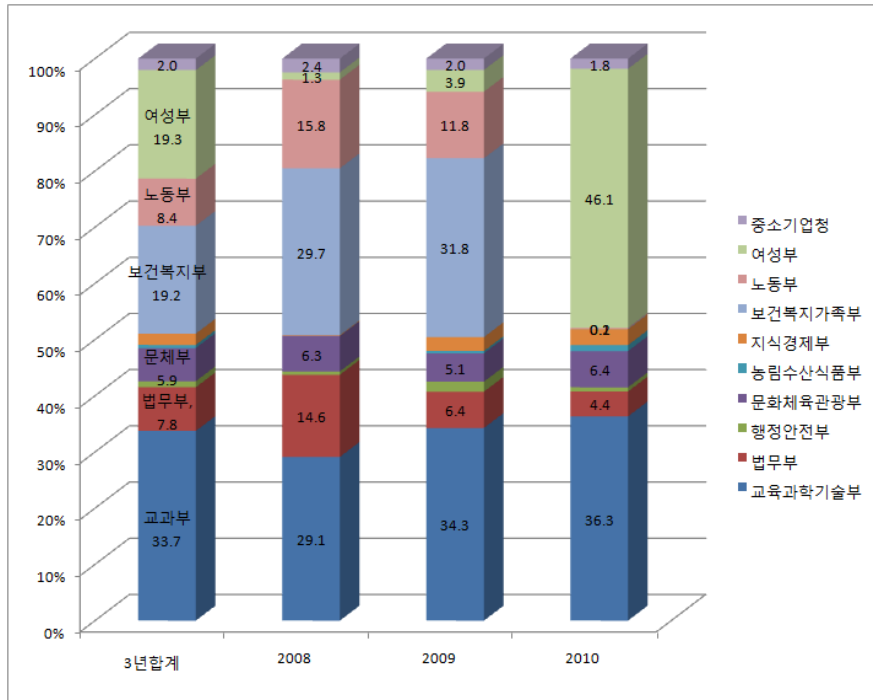
3년간 예산의 변화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법무부, 고용노동부 예산의 비중은 감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2008년 예산 중 29.2%를 차지했으나, 2009년 34.3%, 2010년 36.3%로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는 2008년 14.6%에서 2009년 6.5%, 2010년 4.4%로 감소했고, 고용노동부는 2008년 15.7%에서 2009년 11.8%, 2010년 0.2%로 대폭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29.8%, 2009년 31.8%로 교육과학기술부만큼 예산규모가 컸지만, 2010년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예산의 비중이 0.1%로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 1.3%에 불과했으나, 2010년 전체 예산 중 46.1%로 예산이 가장 많다.

〈표 Ⅲ-5〉 부처별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 원(%))

	3년 합계		2008		2009			2010		
	예산	백분율	예산	백분율	예산	백분율	증감 (증감율)	예산	백분율	증감 (증감율)
교육과학기술부	982.24	33.8	217.79	29.2	361.19	34.3	143.40 (65.84)	403.26	36.3	42.07 (11.65)
법무부	226.30	7.8	109.25	14.6	67.90	6.5	41.35 (37.85)	49.15	4.4	-18.75 (-27.61)
행정안전부	31.37	1.1	4.45	0.6	18.72	1.8	14.27 (320.67)	8.20	0.7	-10.52 (-56.20)
문화체육관광부	171.89	5.9	47.09	6.3	53.26	5.1	6.17 (13.10)	71.54	6.4	18.28 (34.32)
농림수산식품부	16.02	0.6			4.26	0.4	4.26 (순증)	11.76	1.1	7.50 (176.06)
지식경제부	58.30	2.0	0.80	0.1	26.00	2.5	25.20 (3150.00)	31.50	2.8	5.50 (21.15)
보건복지부	558.55	19.2	222.25	29.8	335.30	31.9	113.05 (50.87)	1.00	0.1	-334.30 (-99.70)
고용노동부	243.65	8.4	117.14	15.7	124.72	11.8	7.58 (6.47)	1.79	0.2	-122.93 (-98.56)
여성가족부	562.06	19.3	9.75	1.3	40.87	3.9	31.12 (319.18)	511.44	46.1	470.57 (1151.38)
중소기업청	59.65	2.0	18.30	2.5	21.25	2.0	2.95 (16.12)	20.10	1.8	-1.15 (-5.41)
합계	2910.03	100.0	746.82	100.0	1053.47	100.0	306.65 (41.06)	1109.74	100.0	56.27 (5.34)

(단위: %)



[그림 Ⅲ-5] 부처별 예산 비중의 변화

####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재정지출 규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영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질 높은 사회통합 영역 1,384억 원(47.6%),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영역에 1,310억 원(45.0%), 외국인 인권옹호 125억 원(4.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에 92억 원(3.2%)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 중 3년간 질 높은 사회통합 영역 예산의 연도별 증가가 눈에 띈다. 2008년 전체 예산 중 34.7%(259억 원)을 차지하던 것이 2009년 49.8%(524억 원), 2010년 54.1%(601억 원)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 질 높은 사회통합 영역 예산은 전년도 보다 265억 원이 증가(증가율 102.2%)했으며, 이는 2009년도 전체 예산 증가분 307억 원의 86%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영역 예산은 2008년 54.4%(40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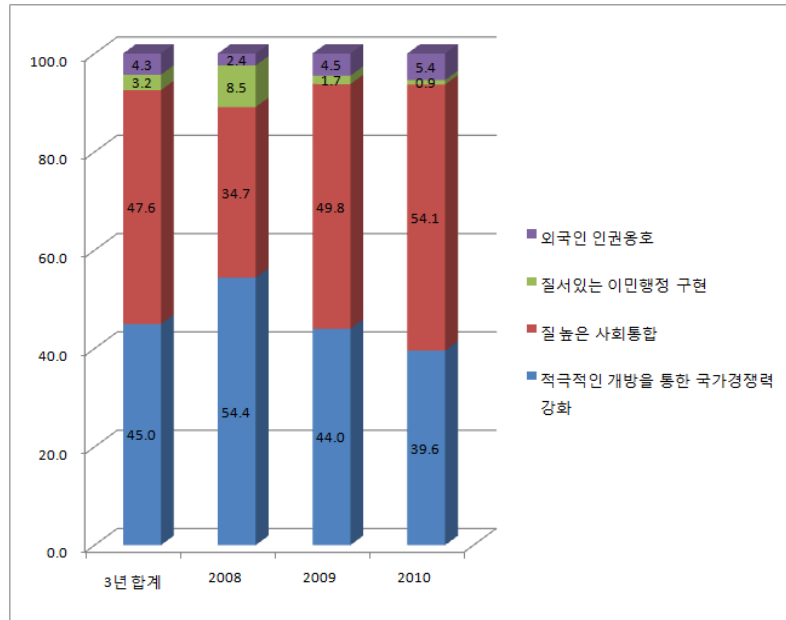
원)로 세 영역 중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2009년 44.0%(464억 원), 2010년 39.6%(439억 원)로 감소했다.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영역 예산은 2008년 63억 원(8.5%), 2009년 18억 원(1.7%), 2010년 10억 원(0.9%)으로 절대액과 비중 모두 매년 감소해 왔다. 외국인 인권 옹호 영역은 예산의 비중은 낮지만,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2008년 18억 원에서 2009년 47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161%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60억 원으로 26.6% 증가했다.

〈표 Ⅲ-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영역별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 원, %)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합계
전체	예산	1,308.82	1,384.42	91.73	125.06	2,910.03
	백분율	45.0	47.6	3.2	4.3	100.0
2008	예산	406.00	259.41	63.31	18.10	746.82
	백분율	54.4	34.7	8.5	2.4	100.0
2009	예산	463.64	524.44	18.19	47.20	1,053.47
	백분율	44.0	49.8	1.7	4.5	100.0
	증감 (증감율)	57.64 (14.0)	265.03 (102.17)	△44.41 (71.3)	29.1 (160.8)	306.65 (40.9)
2010	예산	439.18	600.57	10.23	59.76	1,109.74
	백분율	39.6	54.1	0.9	5.4	100.0
	증감 (증감율)	△24.46 (5.3)	76.13 (14.5)	△8.67 (43.8)	12.56 (26.6)	56.27 (5.3)

(단위: %)



[그림 Ⅲ-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영역별 예산 비중



IV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



## 1. 사업군별 사업현황 및 재정지출 규모

### 가.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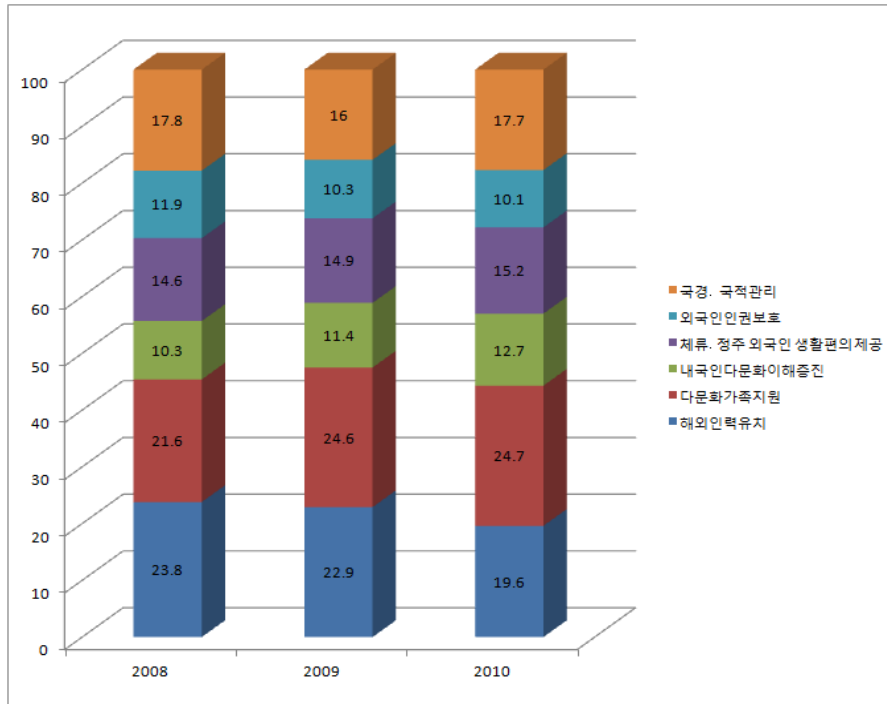
지난 3년간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비중은 증가했다.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은 2008년 전체 사업(185개) 중 23.8%(44개)에서 2010년 19.6%(31개)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은 21.6%(40개)에서 24.7%(39개)로 증가했다. 이 외에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과 체류·정주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이 각각 10.3%(19개)에서 12.7%(20개), 14.6%(27개)에서 15.2%(24개)로 비중이 약간 높아졌으며,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11.9%(22개)에서 10.1%(16개)로, 국경·국적관리 사업군은 17.8%(34개)에서 17.7%(28개)로 약간 감소했다.

〈표 Ⅳ-1〉 사업군별 사업 현황

(단위: 개(%))

	2008			2009			2010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해외인력유치	6 (7.7)	38 (35.5)	44 (23.8)	9 (10.3)	31 (35.2)	40 (22.9)	7 (8.1)	24 (33.3)	31 (19.6)
다문화가족 지원	28 (35.9)	12 (11.2)	40 (21.6)	34 (39.1)	9 (10.2)	43 (24.6)	33 (38.4)	6 (8.3)	39 (24.7)
내국인 다문화 이해증진	17 (21.8)	2 (1.9)	19 (10.3)	17 (19.5)	3 (3.4)	20 (11.4)	18 (20.9)	2 (2.8)	20 (12.7)
체류·정주자생활 편의 제공	16 (20.5)	11 (10.3)	27 (14.6)	17 (19.5)	9 (10.2)	26 (14.9)	15 (17.4)	9 (12.5)	24 (15.2)
외국인 인권보호	5 (6.4)	17 (15.9)	22 (11.9)	6 (6.9)	12 (13.6)	18 (10.3)	5 (5.8)	11 (15.3)	16 (10.1)
국경·국적관리	6 (7.7)	28 (25.2)	34 (17.8)	4 (4.6)	24 (27.3)	28 (16.0)	8 (9.3)	20 (27.8)	28 (17.7)
전체	78 (100.0)	107 (100.0)	185 (100.0)	87 (100.0)	88 (100.0)	175 (100.0)	86 (100.0)	72 (100.0)	158 (100.0)

(단위: %)



[그림 IV-1] 사업군별 사업 현황

예산사업 여부별로 볼 때, 6개 사업군 중 해외인력유치, 외국인 인권보호,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은 비예산사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고, 다문화가족 지원,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은 예산사업의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 전자의 사업군은 예산 투입 보다는 법·제도 개선 등 제도나 행정 절차 개선 관련 사업수단이 발달한 사업군이며, 후자 사업군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발달한 사업군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사업 중 예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 전체 예산사업 78개 중 6개로 7.7%에 불과하다. 2009년도에는 10.3%(9개)로 비중이 약간 높아졌지만, 2010년도에 다시 8.1%(7개)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은 예산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군으로 2008년 35.9%(28개)에서 2009년 39.1%(34개)로 증

가했다. 2010년도에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38.4%(33개)로 비중이 높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이나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도 예산사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이며, 연도별 변동은 그리 크지 않다. 외국인 인권보호와 국경·국적 관리 사업은 범·제도적 수단이 발달한 사업으로 이들 사업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예산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 내외에 불과하다.

### 나. 재정지출 규모

지난 3년간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해외인력유치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의 지출 규모는 1,248억 원으로 다문화사회 정책 총재정 지출중 42.9%를 차지한다. 해외인력유치 사업에는 1,16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총재정 지출의 39.9%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에 198억 원(6.8%),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에 126억 원(4.3%), 국경·국적 관리 사업에 92억 원(3.2%),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에 85억 원(2.9%) 순이다. 그간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반면, 외국인 인권보호나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과 절대 예산 규모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예산은 2008년 231억 원에서 2009년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3%(247억 원), 2010년에는 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62억 원)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재정지출의 거의 절반(48.6%)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 예산도 2009년도에 전년 대비 16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0년도에도 소폭 증가(전년 대비 26.6%)했지만, 예산의 절대 규모가 낮아 2010년도 총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하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 예산 역시 2009년도에 전년 대비 57.2%, 2010년도에는 3.9% 증가했으나 2010년도 총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해외인력유치 사업은 다른 사업군에 비해 재정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지만,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2009년도 예산 규모는 429억 원으로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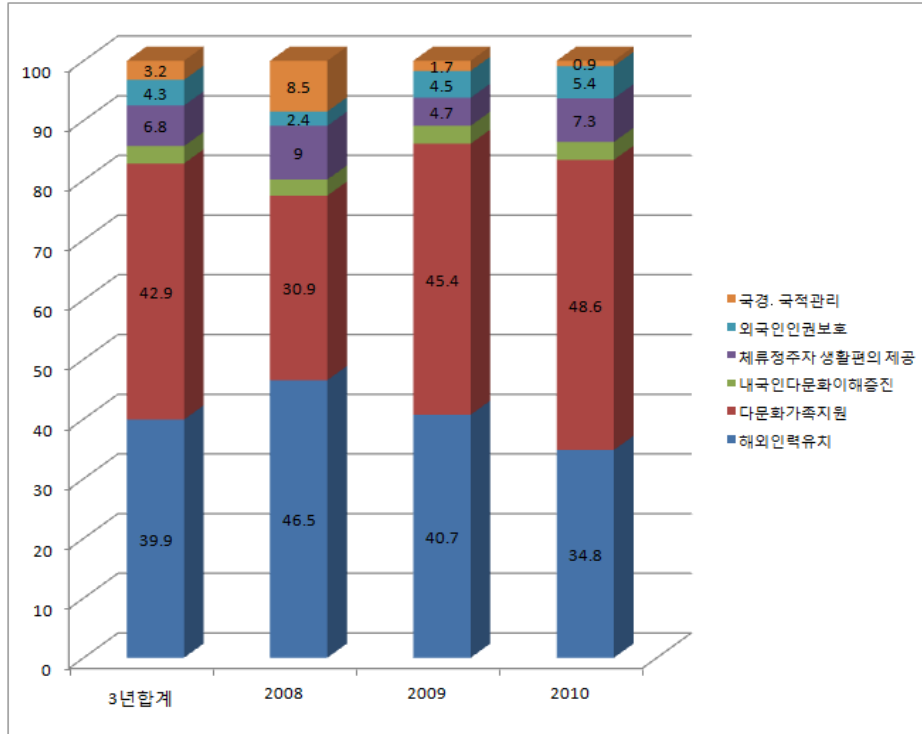
대비 23.4%(81억 원) 증가했지만, 총재정 지출 증가율(40.7%)에 미치지 못했으며, 2010년도에는 9.8%(41.9억 원) 감소하여 총재정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34.8%로 감소했다.

〈표 IV-2〉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

(단위: 억 원, %)

	3년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해외인력유치	1,162.54	39.9	347.24	46.5	428.59	40.7	81.35 (23.4)	386.71	34.8	-41.9 (-9.8)
다문화가족 지원	1,247.70	42.9	230.52	30.9	477.85	45.4	247.33 (107.3)	539.33	48.6	61.5 (12.9)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85.30	2.9	20.29	2.7	31.89	3.0	11.60 (57.2)	33.12	3.0	1.2 (3.9)
체류·정주자생 활편의 제공	197.70	6.8	67.36	9.0	49.75	4.7	-17.61 (-26.1)	80.59	7.3	30.8 (62.0)
외국인 인권보호	125.06	4.3	18.10	2.4	47.20	4.5	29.10 (160.8)	59.76	5.4	12.6 (26.6)
국경·국적관리	91.73	3.2	63.31	8.5	18.19	1.7	-45.12 (-71.3)	10.23	0.9	-8.0 (-43.8)
합계	2,910.03	100.0	746.82	100.0	1,053.47	100.0	306.65 (41.1)	1,109.74	100.0	56.3 (5.3)

(단위: %)



[그림 IV-2] 사업군별 예산 비중

## 2. 해외인력유치

### 가. 사업 현황

해외 인력유치 사업군은 전문인력 및 투자가 유치, 유학생 유치, 기능인력 도입, 재외동포 취업 지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전문인력 및 투자가 유치, 기능인력 도입 사업의 비중이 각각 30~40% 수준으로 높다. 연도별로 사업 비중의 변화를 보면 전문인력 및 투자가 유치 사업은 2008년 36.4%(16개)에서 2010년 29.0%(9개)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기능인력 도입 사업은 31.8%(14개)에서 38.7%(12개)로 증가했다. 재외동포 취업 지원 사업의 비중은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으며, 매년 25% 수준이다.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사업은 전문기술인력, 유학생, 기능인력 등 외국 인력에 대한 입국 문호의 개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 예산사업보다는 출 입국 관련 법률이나 제도 개선 등 비예산사업이 많다. 재외동포 취업 지원 사업은 모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문인력 및 투자가 유치 사업 중 예산사업은 2008년 1개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개, 유학생 유치 사업은 매년 2개, 기능인력 도입사업은 2008년 3개에서 2009년 4개로 증가했다가 2010년 2개로 감소했다.

〈표 IV-3〉 해외 인력유치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단위: 개(%))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1 (16.7)	15 (39.5)	16 (36.4)	3 (33.3)	9 (29.0)	12 (30.0)	3 (42.9)	6 (25.0)	9 (29.0)
유학생 유치	2 (33.3)	1 (2.6)	3 (6.8)	2 (22.2)	1 (3.2)	3 (7.5)	2 (28.6)	-	2 (6.5)
기능인력 도입	3 (50.0)	11 (28.9)	14 (31.8)	4 (44.4)	10 (32.3)	14 (35.0)	2 (28.6)	10 (41.7)	12 (38.7)
재외동포 취업	-	11 (28.9)	11 (25.0)	-	11 (35.5)	11 (27.5)	-	8 (33.3)	8 (25.8)
전체	6 (100.0)	38 (100.0)	44 (100.0)	9 (100.0)	31 (100.0)	40 (100.0)	7 (100.0)	24 (100.0)	31 (100.0)

## 나. 재정지출 구조

예산사업의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유학생 유치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이 사업군의 3년간 총지출 1,163억 원 중 67.3%에 해당되는 782억 원이 지출되었다. 다음으로 기능인력 도입 사업 246억 원(21.1%), 전문인력·투자가 유치 135억 원(11.6%) 순이다. 유학생 유치 사업은 3년간 지출이 가장 높은 사업일 뿐 아니라 예산증가율도 높다. 2008년 212억 원에서 2009년 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2010년에는 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규모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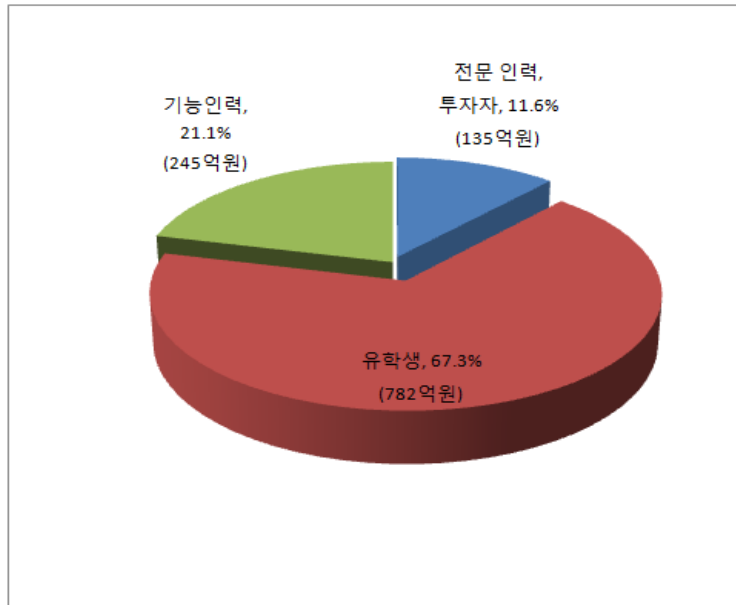
전문 인력 및 투자가 유치사업의 경우 2008년 18억 원에서 2009년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50억 원으로 24.4% 감소했다. 2009년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구축 사업에 20억 원이 투입되고 인프라가 완료되면서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기능인력 도입 사업은 2008년 117억 원에서 2009년 126억 원으로 7.7% 증가했으나, 2010년 2.2억 원으로 거의 100% 감소했다. 기능인력 도입 사업의 예산사업은 모두 기능인력의 산업안전과 체류지원 사업들이고, 이 중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202억 원으로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표 Ⅳ-4〉 해외 인력유치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3년 합계		2008		2009			2010		
	3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예산	비중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전문기술 인력 및 투자가 유치	134.65	11.6	18.30	5.3	66.25	15.5	48.0 (262.0)	50.10	13.0	△16.15 (24.4)
유학생 유치	782.35	67.3	211.80	61.0	236.14	55.1	24.34 (11.5)	334.41	86.5	98.27 (41.6)
기능인력 도입	245.54	21.1	117.14	33.7	126.20	29.4	9.06 (7.7)	2.20	0.6	△124.00 (98.3)
합계	1,162.54	100.0	347.24	100.0	428.59	100.0	81.35 (23.4)	386.71	100.0	△41.88 (9.8)





[그림 IV-3] 해외인력유치 사업 재정지출 구조

##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1)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를 위한 예산은 크게 해외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우수인재 발굴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과 인력 도입 비용을 기업과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수인력 정보제공 사업은 우수인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사업은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채용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55억 원이 지출되었다. 법무부의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사업은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검증을 간소화하여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 구축사업이며, 20억 원이 소요되었다.

인력도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며, 각각 기업과 대학의 우수인재 유치 또는 초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인력발굴 수수료, 입국항공료, 체재비 등 해외기술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하는데 약 60억 원을 지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의 해외학자 유치 사업을 추진했다. 동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총 사업비 8,2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가 매우 크지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총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 Ⅳ-5〉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사업 재정지출 내역

유형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우수인력 정보제공	지식경제부	Contact KOREA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온라인 정보 시스템 「Contact KOREA」 구축 및 운영</li> <li>• 국내외 채용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인재발굴 및 사업 홍보</li> </ul>	55.00
	법무부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 (HuNet Korea)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자추천인이 추천한 인재에 대해 전문 인력 여부의 검증을 간소화하는 비자추천인제 도입</li> <li>• 온라인 비자추천·심사 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인재정보를 기업이 활용하도록 지원,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li> </ul>	20.00
인력도입 지원	중소기업청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기술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li> </ul>	59.65
	교육과학기술부	해외학자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복합의 신 전공·학과 개설, 개별학자 초빙, 세계적 석학 초빙 등 해외 우수학자 유치 국내 대학 지원</li> </ul>	기편성 예산

전문기술인력 등 우수인재 유치 사업은 인재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보다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비예산사업이 더 많다. 특히 우수인재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입국 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과 지침 등이 많이 개정되었다.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 비자점수제 등 인재확보를 위한 비자제도를 도입하는 한

편 특정활동(E-7), 회화지도(E-2) 비자 발급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입국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입국 후의 안정적인 체류 또는 정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등 자격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근무처 이동을 자유롭게 했으며,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체류자격을 전문직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중 국적 용인, 일반귀화요건 완화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주자격을 부여했다.

〈표 IV-6〉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입국자격 완화 (법무부)	창업비자 도입	산업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 대해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08.12.31)
	구직비자 도입	세계 유수의 기업 근무 경력자(세계 300대기업) 및 우수대학(세계 200대 대학) 졸업생이 초청자 또는 고용계약 없이도 입국하여 구직활동 가능케 함(2008.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8.7)
	간접투자이민제도 도입	간접투자방식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주(F-2)체류 자격부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09.12) 자산투자외국인에 대한 거주(F-2)체류자격 및 관리지침 제정(10.2)
	비자점수제 도입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없이도 학력·경력·소득 등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비자를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09.12)
	주재비자(D-7) 발급 확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 전문 인력에게 주재비자(D-7)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08.12.31)
	전문인력 비자유건 완화 및 허용 직종 확대	특정 활동(E-7)비자 요건 완화 및 허용 직종 지속적 확대(경력요건 단축 등)	「특정 활동(E-7)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개정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비자 발급 요건 완화	• 회화지도(E-2) 비자 발급요건 완화 -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에 대하여도 제한적 허용, 학력요건 완화	회화지도 사증발급 지침 개정(09.1)
안정적 체류 · 정주 자격 부여 (법무부)	우수인재의 근무 처 이동 자유 확대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등 자격 소지자에 대한 근무처 변경을 허가제에서 사후 신고 제로 변경	출입국관리법 개정 (10.5),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 마련(10.7)
	우수인재 배우자 의 취업절차 개선	고급인재의 배우자에 대해 출국할 필 요 없이 국내에서 즉시 체류자격변경 허가	체류외국인관리지침 개정
	우수인재에 대한 제한적 이중 국적 용인	현행 6개월 내 원국적 포기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확대 및 원국적 포기 유보기 간 연장,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국적법 개정(10.4.21), 시행(11.1.1)
	우수인재의 일반 귀화요건 완화	우수인재 필기시험 면제 및 귀화심사 기간 단축(특별귀화 허가)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 (08.8) 국적법 개정(10.4), 시행 (11.1)
	외국인 공직채용 확대	공직에 채용된 우수 외국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간소화	
외국인 공무원에게 체류 편의와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거주비자(F-2)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2) 유학생 유치

유학생 유치 사업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유치와 졸업한 유학생의 국내취업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과 유학박람회, 유학안내시스템 운영 등 장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에 지출되었다. 단일 사업으로 3년간 약 780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는 전체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예산 2,910억 원의 27%에 해당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매년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지원하

고 있으며 3년간 3억 원이 투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자체 인프라인 고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졸업한 유학생의 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7〉 유학생 유지 사업 내역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장학생 유치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확대</li> <li>•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li> <li>• 한국유학안내시스템운영(10개 언어)</li> </ul>	779.05
유학생 취업지원	지식경제부	유학생에 대한 취 업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3.30
	고용노동부	유학생 등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고용지원센터와 대학의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 센터 사업

### 3) 기능인력 도입

기능인력 도입 사업 예산은 모두 기능 인력의 산업안전과 각종 고충상담 및 지원 등 기능 인력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특화 서비스에 지출되었다. 기능인력의 산업안전을 위한 사업비는 약 42억 원이며,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업 전후의 안전보건교육 및 외국인근로자용 교육교재 및 자료 개발·보급 등 사업에 약 6억 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 사업에 36억 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이 예산이 모두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는 비예산사업으로 외국어로 된 건강진단표를 개발하여 보급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각종 고충 상담과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2009

년까지 202억 원을 지출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역별 정부합동 고충상담을 실시했으며, 3년간 총 1.4억 원이 소요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체류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대사관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등 각종 고충상담을 위한 지역순회서비스를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했다.

〈표 Ⅳ-8〉 기능인력 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사업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 취업전·후 안전보건 교육</li> <li>• 외국인 근로자용 교육교재 및 자료 개발·보급</li> </ul>	5.65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기초적인 산업보건서비스(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 등) 제공	36.00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	• 외국인용 건강진단결과표 작성·교부 및 건강진단 시 통역 지원	비예산
각종 상담 및 지원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공동	고충상담 및 무료 진료,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포함)에 대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1.44
	고용노동부	문화행사지원 및 고충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 고용·체류지원 강화 방안」 마련(08)</li> <li>•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및 현장 지원 종합 서비스</li> </ul>	비예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	• 지역특성과 지역거주 외국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02.00

기능인력 도입 사업은 기업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전체 노동력 수급을 고려한 도입규모를 관리하는 다수의 비예산사업을 포함한다. 양질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08년 「숙련 생산 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 변경 등 지침」을 개정하여 F-2 비자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이공계 졸업생이 취업을 기피하는 지

역 또는 직종에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고용관련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 및 고용변동 신고 등 절차를 일원화했고, 재고용시 출국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숙식비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변경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내 적정 외국인력 도입 기조 및 취업현황과 전망을 고려하여 인력 도입 규모를 설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송출국가별 규모 배정시 불법체류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와 달리 기능 인력의 안정적 정주 자격부여를 위한 규정이나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표 IV-9〉 기능인력 활용 기업 지원 및 도입규모 관리 사업 내용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양질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법무부	숙련기능인력의 거주(F-2) 자격 요건 정비 및 도입경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 생산기능인력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정비</li> <li>•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취업기피 지역 또는 직종의 기술·기능직 취업 제한적 허용</li> </ul>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 변경 등 지침」 제정 시행(08.1.)
	고용노동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 도입 업종별 단순기능테스트 실시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기능 수준 정보</li> </ul>	
고용절차 간소화 및 고용주 부담 완화	법무부	단순기능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고용정보시스템)와 법무부(출입국정보시스템)의 전산시스템 연계</li> </ul>	외국인력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행(09.3)
	고용노동부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 여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용시 출국 요건을 폐지하고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li> </ul>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 (09.9.19)
		고용비용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가 숙식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숙식비 징수 기준 마련</li> </ul>	표준근로계약서 서식변경(09.7.8)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도입규모 관리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 도입규모 산정시 결혼이민자·유학생·비합법체류자 현황 및 장기적인 도입 기조 고려</li> <li>• 국내 적정 외국인력 도입 기조 및 취업현황과 전망을 고려하여 인력 도입 규모 설정</li> </ul>	
	고용노동부	송출국가별 도입 규모 배정 시 불법 체류율 반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구직자 명부 규모 배정시 불법체류율 반영</li> </ul>	

#### 4) 재외동포 취업

재외동포 취업 사업은 모두 비예산사업이며, 방문취업 입국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보호와 방문취업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중심이 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 동포 인력 규모를 관리하는 한편 내국인 인력 부족이 높은 업종 취업 동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취업실태조사를 통해 취업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2008년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건설업 쿼터를 도입하고 불법취업을 막기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표 IV-10〉 재외동포 취업 사업내용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법무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으로의 취업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기피 및 인력부족이 높은 업종(농업, 지방 중소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간에 따라 가족초청 허용, 영주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li> </ul>	제조업 등 장기 취업자에 대한 가족초청 세부방안 마련(08.10.15.)
	법무부, 고용노동부	연간 입국인원의 합리적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시, 동포의 적정 체류규모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li> </ul>	외국인력 도입 계획
		취업실태 파악 등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동포의 취업신고 의무 강화</li> <li>• 미신고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처벌 강</li> </ul>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화, 신고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동포 취업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고용기회 보호	•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및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건설업 취업동포 관리방안 마련
방문취업 피해 방지	법무부	사증발급 관련 브로커 개입 차단	• 사증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등 사증발급 절차 개선 및 홍보 강화	방문취업자격 간주 동포 재입국 절차 개선(08.12.1.)
	고용노동부	입국 전 취업 정보 제공	• 동포 고용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 3. 다문화가족 지원

#### 가. 사업 현황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 중 양적·질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군이다. 동 사업군의 세부사업군은 다섯 가지이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 지원,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 아동·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이다. 이 중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과 아동·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비중이 높다.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은 2008년 37.5%(15개)였으나 2009년 41.9%(18개), 2010년 43.6%(17개)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2008년 30.0%(12개)에서 2009년 27.9%(12개), 2010년 28.2%(11개)로 약간 감소했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은 2008년 25.0%(10개)에서 2009년 20.9%(9개), 2010년 17.9%(7개)로 감소했으며,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 사업은 2008년 5.0%(2개)에서 2009년 7.0%(3개), 2010년 7.7%(3개)로 사업수의 측면에서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표 IV-11〉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단위: 개(%))

	2008			2009			2010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국제결혼 피해예방	4 (14.3)	6 (50.0)	10 (25.0)	4 (11.8)	5 (55.6)	9 (20.9)	9 (9.1)	4 (66.7)	7 (17.9)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4 (50.0)	1 (8.3)	15 (37.5)	15 (44.1)	3 (33.3)	18 (41.9)	15 (45.5)	2 (33.3)	17 (43.6)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1 (3.6)	1 (8.3)	2 (5.0)	3 (8.8)	-	3 (7.0)	3 (9.1)	-	3 (7.7)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8 (28.6)	4 (33.3)	12 (30.0)	11 (32.4)	1 (11.1)	12 (27.9)	11 (33.3)	-	11 (28.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 (3.6)	-	1 (2.5)	1 (2.9)	-	1 (2.3)	1 (3.0)	-	1 (2.6)
전체	28 (100.0)	14 (100.0)	40 (100.0)	34 (100.0)	10 (100.0)	43 (100.0)	33 (100.0)	6 (100.0)	39 (100.0)

### 나. 재정지출 구조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취학 전 자녀 양육지원 사업에 3년간 총재정 지출 1,248억 원 중 61.2%(763억 원)가 투입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은 사업수는 3개에 불과하지만 재정 투입 규모는 가장 크며, 연도별 증가율도 높다. 2008년 160억 원에서 2009년 274억 원으로 71.1% 증가했고, 2010년에는 330억 원으로 20.4% 증가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예산이 66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사업 예산의 증가율이 높다(2008년 160억 원, 2009년 241억 원, 2010년 266억 원).

아동·청소년 자녀양육 교육 사업에는 총 10.8%(13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특히 이는 2009년도 예산의 대폭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2008년 아동·청소년 자녀교육지원 예산은 6.2억 원으로 200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의 2.7%에 불과했으나, 2009년도에는 95억 원으로 약 89억 원(증가율 1,430%)이 증가했다. 그러나 다시 2010년도에는 34억 원으로 감소했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예산은 2008년 21억 원(9.0%)에서 2009년 33억 원(6.8%), 2010년 55억 원(10.2%)으로 매년 증가했고 3년 지출 총액은 108억

원(8.7%)이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의사소통 지원(3년간 총 43억 원),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3년간 16억 원),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업교육(3년간 약 60억 원) 등이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며, 이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산출할 수 없는 사업들, 즉 한국어교육, 상담, 자조모임 운영, 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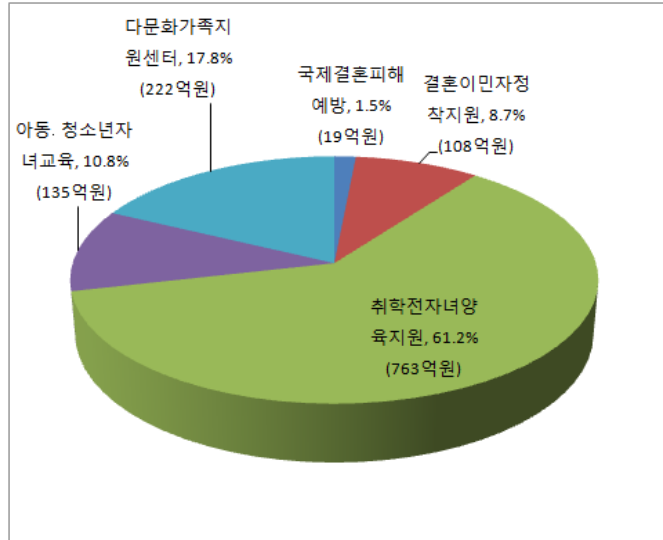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 예산은 3년 합계가 약 19억 원이며 이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 총 지출예산의 1.5%에 해당된다. 2008년도 3.5억 원, 2009년도 6.3억 원, 2010년도 8.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예산의 절대 규모가 작아 다른 사업들에 비해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사업 중 예산사업은 모두 결혼중개업자 관리 및 교육, 남성 배우자 교육, 예비 결혼이민자 현지 교육 등 교육사업에 지출되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은 다문화가족 사업군 3년 총지출의 17.8%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가에 따라 2008년 40억 원에서 2009년 70억 원, 2010년 112억 원으로 예산 규모도 증가해 왔다.

〈표 IV-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3년 합계		2008		2009			2010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국제결혼 피해예방	18.77	1.5	3.52	1.5	6.33	1.3	2.81 (79.8)	8.92	1.7	2.59 (40.9)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8.41	8.7	20.79	9.0	32.73	6.8	11.94 (57.4)	54.89	10.2	21.16 (67.7)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763.39	61.2	160.0 0	69.4	273.81	57.3	113.81 (71.1)	329.58	61.1	55.77 (20.4)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135.13	10.8	6.21	2.7	94.98	19.9	88.77 (1,429.5)	33.94	6.3	△61.04 (64.3)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지원	222.00	17.8	40.00	17.4	70.00	14.6	30.00 (75.0)	112.00	20.8	42.00 (60.0)
합계	1247.70	100.0	230.52	100.0	477.85	100.0	247.33 (107.3)	539.33	100.0	61.48 (12.9)



[그림 IV-4]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재정지출 구조

##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1) 국제결혼 피해 예방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은 중개업자, 남성배우자, 여성결혼이민자 등 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업이 대부분 예산사업이고 후자는 법·제도 개선, 조사·단속 등 비예산사업이다.

중개업자 대상 교육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3년간 약 6억 원이 투입되었다. 남성 배우자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과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예산은 9억 원이며, 법무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10년도부터 전국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남성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특정

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과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동 프로그램은 그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역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사업에 4.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법무부는 입국한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사업이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현지에서 결혼이민 예정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법무부는 입국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의 ‘Happy Start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 2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표 IV-13〉 국제결혼 피해 예방 교육 사업내역

	소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중개업자 교육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국제결 혼중개업 교육	• 결혼 중개업체 관리 및 중개업자 교육	5.62
남성 배우자 교육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 국제결혼 희망 남성 소양교육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8.65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전후 한국인 배우자 결혼준비 교육 실시	• 국제결혼 전후 한국인 배우자 결혼준 비 교육 •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 전문강사 양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비·배우 자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0 9년까지)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국제 결혼을 하려는 남성대상 프로그램(전 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의무화 규정 마련(10.11)	출입국관리 사무소 (2010년도 부터)

	소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결혼이민 자 교육	여성가족부	예비 결혼이민 자 입국 전 사전 정보 프로그램	• 결혼 후 한국 비자발급 대기 중인 여성 대상 한국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4.50
	법무부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오는 새내기 결혼이민자 대상 외국인등록시 한국생 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출입국관리 사무소

이 외에 비예산사업으로 위장결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는 혼인의 진정성 검증 강화를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위장결혼 적발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모니터링, 위장결혼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수사,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표 IV-14〉 국제결혼 관리·감독 사업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혼인의 진정성 검증강화 (법무부)	결혼사증 발급 심사 강화	•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국제 결혼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 이는 경우 비자발급 제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자격 및 사증발급 제한 규정 법제화 추진(10.11)
	결혼이민비자체계 개편 검토	• 혼인의 진정성 검증 강화를 위한 새로 운 비자체계 개편 검토	
위장결혼 적발 및 인권침해 방지 (법무부)	결혼이민자 입국 후 생활실태 모니터링 강화	• 혼인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과 혼인한 거주자격(F-2) 소지자에 대해 정기적 인 실태조사 실시	
	위장결혼 예방 및 단 속강화	• 위장결혼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인권침해사례에 대 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인권침해 피해 사례 조사·분 석 및 피해방지 방안 홍보	

## 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강사 양성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결혼이민자를 직접 수혜 대상으로 하는 특화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다른 어떤 유형의 사업군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표 IV-15〉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다문화 강사 양성	법무부	다문화교육 강사 확충	• 관계부처 통합 다문화 강사 양성 및 보 수교육	5.00
	보건복지부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 확대	•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	전국다문화 가족사업지 원단 (2009년까지)
의사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여성가족부	한국어·한국문 화 교육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실시 및 전문강사 양성 • 한국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방문교육 한국어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 인력 활용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42.25
		다문화가족 생활 정보 제공 등	• 다국어판 정보 매거진(Rainbow+) 발 간·배포 • 부처합동 외국인·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생활가이드북 제작·발간	12.18
	문화체육관 광부	다문화가족 한국 문화 이해	•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국립민속박물관)	1.55
상담 서비스	법무부	결혼이민자와 가 족 상담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담당직원 을 지정하여 결혼이민자 고충상담	출입국관리 사무소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와 가 족 상담	• 시·군·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 강 검진·정신건강 전화상담 및 대면 상담 서비스	정신보건 센터

IV.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 ●●● 75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여성가족부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모니터단 운영등	• 다문화가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결혼이민자 국적별, 배우자, 시부모 등 자조모임 구성·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행정안전부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여 성인민자를 지도자로 양성, 출신국 새 내기 이주자의 정착도우미로 활용	15.76
	법무부	결혼이민자 네트 워크 지원	• 국적별·지역별 결혼이민자 대표자를 선정,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성 • 국내 정착에 성공한 결혼이민자를 명 예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 결혼이 민자 정착지원 활동 수행	5.65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취 업 지원	• 결혼이민자 취·창업 적합모델 개발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역사회 취업연계(다문화강사, 통·번 역사, 상담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취 업 지원	•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취업직종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센 터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영 농기술교육	• 농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 상 농업일반, 기초영농교육, 농기계사 용법, 현장체험 등 교육	10.00 (2008년까 지)
	농림수산 식품부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영농 교육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 자에게 전문여성농업인(후견인)을 연계 하여 1:1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8.52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		• 영농희망과 정착 의지가 강한 자를 대 상으로 기초 농업교육(농업일반, 지역 농업,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소양교 육 등) 실시	7.50	
경제적 지원	보건복지부	기 초 생 활 보 장 및 긴급지원	• 기초생활보장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수급권 부여 • 긴급복지지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임 신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해 긴급지원	산출불가



이 세부사업군에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과 생활정보 제공 사업이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42억 원,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지 Rainbow+ 발간사업에 12억 원이 지출되었다. 이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비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유형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으로 3년간 지출된 예산은 총 26억 원이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농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족 영농기술 교육에 10억 원을 지출했고, 2009년부터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촌 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하는 1:1 맞춤형 영농교육과 기초농업교육에 각각 약 9억 원, 8억 원이 지출되었다. 이 외에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비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사업비로 결혼이민자 대상 취·창업 교육이 실시되었다.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16억 원,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지원에 약 6억 원이 지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비로 다문화가족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배우자 등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했다.

다문화 강사 양성 사업은 법무부가 ABT 대학 등을 통해 실시하는 다문화사회 2급 전문가 양성 과정에 5억 원을 지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09년까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통해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은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상담서비스는 법무부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의 각종 고충 상담과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수급권을 부여

하여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지출된 예산 규모는 산출 가능하지 않다.

### 3)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군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군과 달리 사업수는 적지만 예산 규모가 매우 크며 전액 특화서비스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하는 사업들이다.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과 아동양육 전반의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의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에 3년간 총 667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다문화사회 정책 총 예산 중 23%에 해당하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예산이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언어지도사와 희망유아 교육사를 파견하여 다문화가족 취학 전 자녀의 언어교육과 기본학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언어 및 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을 통해 취학 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언어발달을 진단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3억 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학습 및 유치원 생활 적응 지원 교육은 유치원의 발달지연 유아 및 기관 미이용 유아에 대한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3년간 지출된 예산은 63억 원이다.

〈표 Ⅳ-16〉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여성가족부	아동양육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의 교육 및 상담</li> <li>- 아동의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li> </ul> </li> </ul>	667.03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언어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li> <li>•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을 통해 취학 전 및 초등저학년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li> </ul>	32.96
교육과학기술부	기본학습 및 유치원 생활 적응 지원	• 희망유아교육사를 통한 유치원 발달지연 유아 및 기관 미이용 유아 맞춤 교육	63.40

#### 4)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관련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급 학교를 통해 실시하는 학부모 상담과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3년간 총지출은 각각 68억 원, 54억 원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학부모 교실 운영에 68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각급 학교별로 상담주간을 지정하여 학부모 상담 및 연수 프로그램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운영했다. 교사대상 등 예비교사와 한국어 교육 전공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규모는 3년간 총 43억 원이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개발, 정책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11억 원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부모 출신국 언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과정 개발과 운영에 6.5억 원을 지출했고, 이 외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비로 언어별 교육 강사 양성·과전 사업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으로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지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종합지원

사업에 약 3억 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문화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1억 원을 지출했다. 무지개청소년 센터에서는 외국 출생 다문화 청소년 초기 적응을 위한 디딤돌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중단 다문화가정 자녀 대안교육시설에 1.8억 원을 지원했다.

〈표 Ⅳ-17〉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이중언어 교육	교육과학기술 부	이중언어 교육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li> <li>•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 양성</li> <li>• 방과 후 교육, 다문화 이해교실 등으로 보조 강사 배치</li> </ul>	6.50
	여성가족부	언어별 교육강 사 양성 및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실 운영</li> <li>• 언어별 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이용기관에 파견</li> </ul>	다문화가 족지원센 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파견</li> <li>•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중언어 프로그램 적극 지원</li> </ul>	지역아동 센터
학교생활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중앙다문화교 육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개발, 정책연구,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연수 등</li> </ul>	11.34
		기초학력 미달 학생맞춤형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및 교재 지원(다문화교육 거점학교 한국어반 운영 지원)</li> <li>•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와 한국어 교육 전공생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근로장학금)</li> </ul>	43.00
학부모 상담	교육과학 기술부	다문화 가정 학부모 '자녀행 복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자녀 학습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실) 운영</li> <li>•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책자 발간·보급</li> </ul>	68.10
		다 문 화 가 정 학부모 상담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 학교별로 상담주간(요일) 등을 지정·운영</li> <li>•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상담 및 연수</li> </ul>	비예산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학교생활·교육 안내	
사회적응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부적응 학생 교육기회 확대	• 학업 중단 다문화가정 자녀 대안교육시설 지원	1.75
	여성가족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및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위한 디딤돌 과정 개발, 시범실시	무지개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종합지원	• 지역사회 통합과 정착 지원을 위한 학교-가족-시민사회단체-관계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2.81
		다문화 청소년 종합정보 제공	• 다문화(이주) 청소년 e-소식 발행 • 온라인·오프라인 자료 제공	1.00
전문인력 양성	여성가족부	다문화 청소년 전문가 양성	• 다문화 아동 청소년 관련 실무자 교육 연수 - 북이탈, 다문화전문가 양성교육	0.63

## 4.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 가. 사업현황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교과과정 및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다문화교육,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행사 사업으로 구분된다. 다문화교육과 홍보 및 행사 사업의 비중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예산사업이다.

〈표 IV-18〉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 세부유형 및 사업 현황

(단위: 개(%))

	2008			2009			2010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다문화 교육	9 (52.9)	1 (50.0)	10 (52.6)	9 (52.9)	1 (33.3)	10 (50.0)	9 (50.0)	1 (50.0)	10 (50.0)
홍보 및 행사	8 (47.1)	1 (50.0)	9 (47.4)	8 (47.1)	2 (66.7)	10 (50.0)	9 (50.0)	1 (50.0)	10 (50.0)
전체	17 (100.0)	2 (100.0)	19 (100.0)	17 (100.0)	3 (100.0)	20 (100.0)	18 (100.0)	2 (100.0)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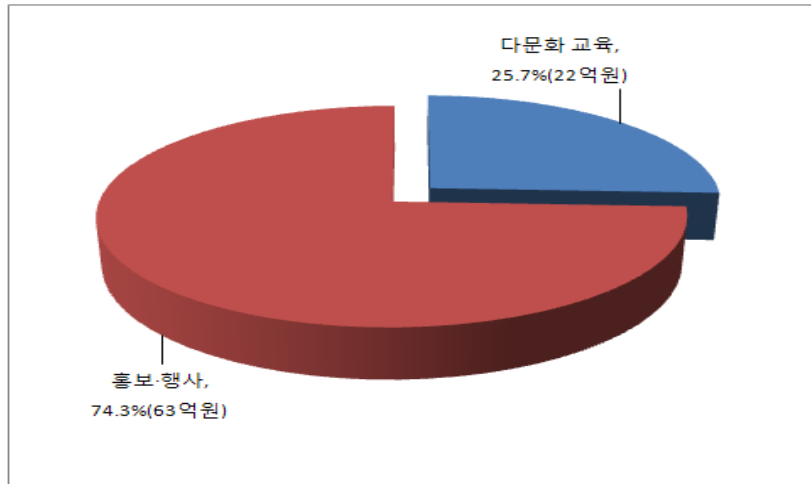
### 나. 재정지출 구조

예산사업의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3년간 홍보 및 행사 사업에 63억 원 (74.3%)이 지출되었고, 학교 등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 예산은 22억 원 (25.7%)이 지출되었다. 홍보 및 행사 지출은 2008년 84.4%(17억 원)을 차지했으나 2009년 65.5%(22억 원), 2010년 72.6%(24억 원)으로 감소했다. 다문화교육 사업의 예산 비중은 2008년 15.6%(약 3억 원)에서 2009년 30.2%(약 10억 원)로 증가했지만, 2010년 소폭 감소하면서 27.4%(9억 원)로 낮아졌다.

〈표 IV-19〉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3년합계		2008		2009			2010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다문화 교육	21.96	25.7	3.16	15.6	9.74	30.2	6.58 (208.2)	9.06	27.4	△0.68 (6.7)
홍보 및 행사	63.34	74.3	17.13	84.4	22.15	65.5	5.02 (29.3)	24.06	72.6	1.91 (8.6)
합계	85.30	100.0	20.29	100.0	31.89	100.0	11.60 (57.7)	33.12	100.0	1.23 (3.9)



[그림 IV-5]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 재정지출 구조

##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1)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교육자료 개발, 초·중등학교 다문화 인력 양성 등 교육의 직접 수행 보다는 교육을 위한 인프라성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인력 사업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난 3년간 지출 총액은 약 10억 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초·중등학교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5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초등학교, 지역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에 5억 원을 지출했다.

교육자료 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수-학습 지도서 개발 등에 약 3억 원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한국 경

힘 기록 발간 및 해외정책 사례 연구 등에 0.8억 원을 지출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학교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았고, 다만 여성가족부의 이주민 강사 초빙 학교순회 다문화교육에 0.1억 원이 지출되었다.

학교 이외의 영역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외국문화체험전시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생활문화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억 원을 지출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담당 공무원 대상 소양교육에 0.4억 원을 지출했다.



〈표 IV-20〉 다문화교육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교육자료 개발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과정에서 다문 화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재량활동 자료 개발·보급</li> <li>• 초중등학교 교사용 교수-학습 지도서 개발 및 보급</li> <li>•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지원</li> </ul>	2.80
		다문화 이해 관련 교재, 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정(07년 2월)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종,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 개발 보급</li> </ul>	1.80
	여성가족부	다문화 이해 프로 그램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아동·청소년 한국 경험 기록 발간</li> <li>• 다문화 아동청소년 알아가기 해외정책 사례연구</li> <li>• 세계다문화청소년 워크숍</li> </ul>	0.80
초중등 학교 다문화 교육 인력 양성	교육과학 기술부	유·초·중등 교사 의 다문화교육 역 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 과정에 다문화 이해 과목 신설</li> <li>• 초등교원 양성 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li> <li>•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초중등 교사 직무 연수</li> <li>• 다문화교육 전문교원 대상 심화 연수</li> </ul>	4.50
	문화체육 관광부	다문화교육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 등을 다문화 전문 강사로 양성, 초등학교, 지역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파견</li> </ul>	5.25
학교 교육	교육과학 기술부	유치원 다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에 근거한 유치원 다문화교육 실시</li> <li>- '유치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 세계시민교육 활동 자료'개발·보급</li> </ul>	비예산
	여성가족부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 강사 초빙, 초등학교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li> </ul>	0.12
사회 교육	문화체육 관광부	다문화 이해 제고 를 위한 외국 문 화체험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외국문화체험 전시회</li> </ul>	1.27
		다문화교육, 다문 화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생활문화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기획·운영</li> </ul>	5.00
	행정안전부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공무원교육원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개설 확대</li> <li>•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대상 소양교육</li> </ul>	0.42

## 2) 홍보 및 행사

홍보 및 행사 세부사업군은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이 세부사업군에서 가장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행사와 축제로 3년간 총 45억 원이 지출되었고, 4개 부처가 모두 이 유형의 사업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별 특화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3년간 23억 원을 지원했다. 법무부는 매년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3년간 지출 총액은 11억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세계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친정 부모 초청 행사를 개최했으며 3년간 9억 원을 지출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하는데 3년간 총액은 3억 원이다.

다음으로 지출 비중이 큰 사업이 공익광고 제작과 홍보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 공익광고의 제작·방영에 14억 원, 여성가족부는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인쇄 광고 제작에 3억 원을 지출했고, 법무부는 비예산사업으로 공영방송사와 협력하여 콘텐츠 제작 및 공익광고 방송을 추진했다. 이외에 법무부의 이민정책 포럼과 행정안전부의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에 0.7억 원이 지출되었다.

〈표 IV-21〉 홍보·행사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포럼·세 미나 개최	법무부	다문화 관련 포 럼·세미나 등 개최	•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 지역별 다문화사회통합 포럼, 토론회 개최 지원	0.60
	행정안전부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 공무 원 연찬회 개최	•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 숍, 연찬회 등 개최	0.10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문화체육 관광부	공익광고·방송 프로그램	• 다문화 공익광고 제작·방영	13.60
	여성가족부	공익광고·다문 화 인식제고	• 신문 기획기사, 라디오 방송에 콘텐츠 제공 •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영상물 송출 • 다문화 인식개선 및 국제결혼 건전화 인쇄 광고 제작	3.28
	법무부	다문화 포용 분 위기 확산을 위 한 행사	• 공영 방송사와 협력, 콘텐츠 제작 및 공익광고 방송 추진	비예산
각종 행사 및 축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개최 등	• 다문화가족지원 전국 네트워크 대회 개최	2.93
	법무부	세계인의 날 기 념행사	•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민·재 한 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 행사 개최	10.50
	행정안전부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 세계인의 주간에 결혼이민자 친정부 모 초청 격려	8.97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 특화 다문화 프로그램(생활문화, 전시·공연, 콘텐츠 생산 등) 선정· 운영	23.00

## 5.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 가. 사업현황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은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기 보다는 국내에 체류 또는 정주하는 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사업군에 비해 비예산사업도 많은 편이다. 전체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2008년 전체 사업 중 51.9%(14개), 2009년 50.0%(13개), 2010년 54.2%(13개)를 차지한다. 이 유형의 사업들은 일정 정도 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예산사업 중 비중이 높다.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사업은 2008년 22.2%(6개), 2009년 30.8%(8개), 2010년 25.0%(6개)로 다소 증가했으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의 수가 거의 유사하다. 교통·주거·교육환경 등 외국인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 그리고 체류동포 처우개선 사업은 예산사업보다 비예산사업의 비중이 높다.

〈표 Ⅳ-22〉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단위: 개(%))

	2008			2009			2010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4 (25.0)	2 (18.2)	6 (22.2)	4 (23.5)	4 (44.4)	8 (30.8)	3 (20.0)	3 (33.3)	6 (25.0)
교통·주거·교육 환경 개선	-	4 (36.4)	4 (14.8)	-	1 (11.1)	1 (3.8)	-	1 (11.1)	1 (4.2)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12 (75.0)	2 (18.2)	14 (51.9)	11 (64.7)	2 (22.2)	13 (50.0)	11 (73.3)	2 (22.2)	13 (54.2)
체류동포 처우개선	-	3 (27.3)	3 (11.1)	2 (11.8)	2 (22.2)	4 (15.4)	1 (6.7)	3 (33.3)	4 (16.7)
전체	16 (100.0)	11 (100.0)	27 (100.0)	17 (100.0)	9 (100.0)	26 (100.0)	15 (100.0)	9 (100.0)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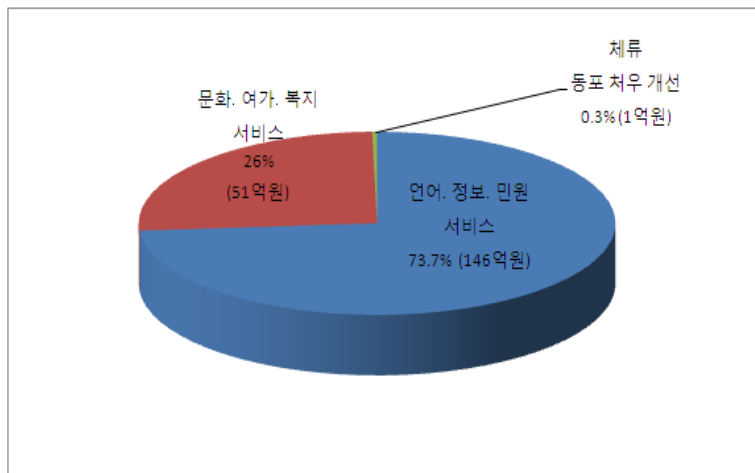
## 나. 재정지출 구조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의 재정사업은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체류동포 처우개선 등이다.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사업의 3년 예산 합계가 146억 원으로 이 사업군 총지출 197억 원의 73.7%를 차지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어문화원·각급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 등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3년간 83억 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통역서비스(3년간 21억 원) 등 언어와 의사소통 지원서비스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생활정보 관련 자료 발간·배포(3년간 31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다음으로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예산이 51억 원으로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26.0%)을 차지하며, 체류동포 처우개선 사업 예산은 66백만 원에 불과하다.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으로 국악 공연과 강좌, 도서관 서비스 관련 사업이 많다. 체류동포 처우개선 사업 예산은 법률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안내 책자 발간 예산과 4개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사업(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이 전부이다. 2008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9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5,400만 원, 2010년에는 1,200만 원에 불과하여 거의 사업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3〉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3년 합계		2008		2009			2010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145.71	73.7	51.08	75.8	39.96	80.3	△11.12 (21.8)	54.67	67.8	14.71 (36.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51.33	26.0	16.28	24.2	9.25	18.6	△7.03 (43.2)	25.80	32.0	16.55 (178.9)
체류동포 처우개선	0.66	0.3		0.0	0.54	1.1	0.54 (순증)	0.12	0.1	△0.42 (77.8)
합계	197.70	100.0	67.36	100.0	49.75	100.0	△17.61 (26.1)	80.59	100.0	30.84 (62.0)



[그림 Ⅳ-6]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1)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사업군은 체류동포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체류·정주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출신 인구가 수혜자가 되는 사업들로 구성된다. 실질적으로는 수혜자 중 결혼이주여성과 기능인력의 비중이 높고, 사업들도 이들의 수혜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체류·정주하는 모든 외국 출신 인구가 대상이 된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군에서 가장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서비스로 3년간 총 약 106억 원의 재정지출이 있었다. 법무부는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교육에 40억 원을 지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지역문화원 등에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및 파견,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했고 예산은 총 43억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예산은 2.2억 원이다. 이 외에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총 지출은 21억 원이다.

생활정보 제공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한국소개 홍보자료 제작·배포에 31억 원을 지출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했다. 이 외에 법무부는 출입국 등 온라인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를 제공했고, 예산은 9억 원이다.

〈표 Ⅳ-24〉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재정지출 내역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서비스	법무부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 개설·운영</li> <li>•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li> <li>•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의 표준화(2010)</li> </ul>	4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통역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체류 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18개 국어로 행정·생활안내 서비스 제공</li> </ul>	20.78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원·국어문화원·지역 한국어교육 관련기관</li> <li>-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li> <li>-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및 파견</li> <li>- 이주민·이주민 강사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li> </ul>	43.07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외국인 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국어 교육 등)</li> <li>•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생활가이드북 발간</li> </ul>	2.16
생활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국소개 홍보자료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홍보용 한국문화 소개 자료 등을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확대 보급</li> <li>• 한국문화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이주민 문화가이드 북 제작·배포</li> </ul>	30.70
	행정안전부	지자체 홈페이지 다국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다국어 지원 서비스</li> </ul>	비예산
민원편의	법무부	출입국 등 온라인 민원처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를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민원 편의 제고</li> </ul>	9.00

## 2) 교통·주거·교육 환경 개선

교통·주거·교육 등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외국인의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했으며 모두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시행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승차권의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임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했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을 비예산으로 시행했다.

〈표 IV-25〉 교통·주거·교육 환경 개선 사업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교통정보	국토해양부	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승차권 주요 교통정보를 한글·영문으로 병기(2008)</li> <li>• 지하철 돌발상황 영어 안내방송 및 시내버스 영어 안내방송</li> </ul>	비예산
주택공급	국토해양부	외국인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임직원 주거환경 개선</li> </ul>	비예산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학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 까지 확대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li> </ul>	비예산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자녀 교육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중심외국교육기관을 유치·운영</li> </ul>	2010년부터

### 3)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문화·여가·복지 환경 개선 사업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며, 보건복지부 사업은 1개이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과 유사하게 이 사업군 역시 원칙적으로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지 않고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암묵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사회적 소수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제하는 특화 서비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정보 제공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 콘텐츠 개발 및 전국 공공도서관 보급 사업에 6억 원, 도서관에서의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 원, 이주민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브리리 포털 다문화 지식 정보 구축에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지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 외

국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에 13억 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관광에 3억 원 등 16억 원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투입했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9억 원,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국악 공연 2억 원 및 국악강좌 0.5억 원 등 각종 문화 행사와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에 총 12억 원이 지출되었다. 이 외에 외국인 의료인력 대상 진료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등 보건복지부의 복지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에 3억 원이 지출되었다.

〈표 Ⅳ-26〉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 광부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새터민에게 연간 30회의 문화예술 체험·학습·창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가 강사 지원	8.60 (2008년)
		국악을 국민 속으로	•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개최(국립국악원)	1.78
		외국인 국악강좌	• 주한외국인, 결혼이주민, 교포 등을 대상으로 장구, 단소, 가야금, 사물놀이 등의 국악 강좌(국립국악원)	0.50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악원 다문화가족 대상 전통음악 기획 공연.	0.47
도서관 정보 서비스	문화체육관 광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다문화자료실 조성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조성	5.80
		디브리리 포털 다문화 지식정보 구축	• 각 기관·단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다문화 관련 정보를 선별, 추천, 가공하여 정보 제공 • 이주민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3.00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확대	•전국의 도서관에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전용자료실 설치 운영	4.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진흥 콘텐츠 개발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 콘텐츠 개발,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 활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6.18
		외국도서 구입	•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외국도서 구입	2.01
여가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취약계층 복지관광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국내 여행경비 제공.	3.02
		어울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취약계층 외국인에게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어울림 생활축제 개최	13.00
복지 환경	보건복지부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장애인 증명서 발급 등 검토 • 장애인 복지혜택의 영주권자에게 확대 적용분야 검토 •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용역(2008)	0.30 (2008년)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 외국인 의료인력 대상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2.58

#### 4) 체류동포 처우개선

체류동포 처우개선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0.7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다. 예산 투입 내역을 보면 법무부가 제공하는 재외동포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사업,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자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이 전부이다. 고용노동부의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이 있지만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 공단 등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비예산사업이다.

〈표 Ⅳ-27〉 체류동포 처우개선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법률 및 종합 서비스	법무부	체계적인 법률 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국내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li> <li>• 주요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책자 “법과 생활” 발간</li> <li>•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관련 법률 정보 제공</li> </ul>	0.50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민간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 - 대표자 간담회 및 종사자 교육</li> </ul>	0.16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포 취업 지원 기관 확대(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단체 등)</li> <li>- 동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li> </ul>	비예산
안정적 체류	법무부	동포에 대한 영 주 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F-4)자격 또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영주(F-4) 자격 부여</li> <li>※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09.3) 및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 지침 보완(09.12)</li> </ul>	비예산

## 6. 외국인 인권보호

### 가. 사업현황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예산사업보다 비예산사업의 비중이 높다.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08년 45.5%(10개), 2009년 38.9%(7개), 2010년 37.5%(6개)로 전체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업수가 많은 피해 이주여성 구제 사업은 매년 사업수가 4개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사업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4개에서 2010년에 3개로, 난민 인정·지원사업은 2008년 4개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개로 감소했다.

〈표 IV-28〉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세부유형 및 사업현황

(단위: 개(%))

	2008			2009			2010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4 (23.5)	4 (18.2)	1 (16.7)	3 (25.0)	4 (22.2)	1 (20.0)	2 (18.2)	3 (18.8)
피해 이주여성 구제	2 (40.0)	2 (11.8)	4 (18.2)	2 (33.3)	2 (16.7)	4 (22.2)	2 (40.0)	2 (18.2)	4 (25.0)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3 (60.0)	7 (41.2)	10 (45.5)	2 (33.3)	5 (41.7)	7 (38.9)	1 (20.0)	5 (45.5)	6 (37.5)
난민 인정·지원		4 (23.5)	4 (18.2)	1 (16.7)	2 (16.7)	3 (16.7)	1 (20.0)	2 (18.2)	3 (18.8)
전체	5 (100.0)	17 (100.0)	22 (100.0)	6 (100.0)	12 (100.0)	18 (100.0)	5 (100.0)	11 (100.0)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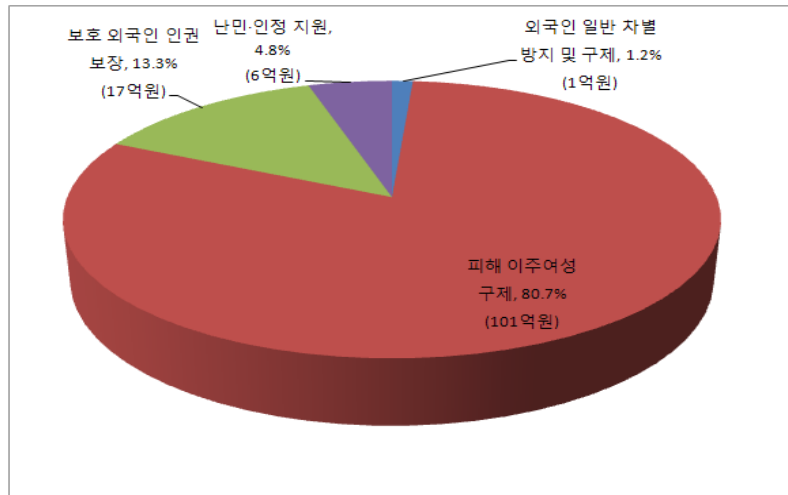
## 나. 재정지출 구조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의 재정지출은 피해 이주여성 구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3년간 피해 이주여성 구제사업 예산 규모는 101억 원으로 인권보호 사업군 총예산 125억 원의 80.7%를 차지한다. 이는 3년간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2008년 피해 이주여성 구제 사업 예산은 9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37억 원으로 313.2%, 2010년에는 55억 원으로 46.1% 증가했다.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사업의 3년 총예산은 17억 원으로 125억 원 중 13.3%를 차지한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08년 9억 원에서 2009년 7억 원으로, 2010년에는 88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난민 인정·지원 사업의 3년 총예산은 6억 원으로 이 사업군 예산의 5%를 차지한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2009년 2.4억 원에서 2010년 3.6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대 규모가 낮다.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사업 예산은 가장 비중이 낮다. 3년 총합계가 1.5억 원에 불과하며, 2009년도 75백만 원, 2010년도 70백만 원 지출되었다.

〈표 IV-29〉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3년 합계		2008		2009			2010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1.45	1.2			0.75	1.6	0.75 (순증)	0.70	1.2	△0.05 (6.7)
피해 이주여성 구제	100.97	80.7	9.04	49.9	37.35	79.1	28.31 (313.2)	54.58	91.3	17.23 (46.1)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16.66	13.3	9.06	50.1	6.72	14.2	△2.34 (25.8)	0.88	1.5	△5.84 (86.9)
난민 인정·지원	5.98	4.8			2.38	5.0	2.38 (순증)	3.60	6.0	1.22 (51.3)
합계	125.06	100.0	18.10	100.0	47.20	100.0	29.10 (160.8)	59.76	100.0	12.56 (26.6)



[그림 IV-7]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구제

외국인 차별방지 및 인권침해 구제 사업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차별시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1.5억 원이 전부일 정도로 예산 규모가 적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 방문·점검,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신고 접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등은 모두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수행되었다.

〈표 IV-30〉 외국인 차별방지 및 구제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차별 모니터링	법무부	차별시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모니터요원 선정 및 모니터단 운영	1.45
인권침해 구제	고용노동부	인권침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원	•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 방문·점검 - 비합법체류자 단속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인권침해 등 확대 점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 교육 및 기타지원	비예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신고 접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인권구제 인프라로 이용 - 신고사례 접수시 유관기관(법무부 인권국,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연결	비예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 재한외국인 고충사항 해결 및 인권보호·권리구제 안건 심의·의결	비예산

### 2) 피해 이주여성 구제

피해 이주여성 구제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다른 외국인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긴급지원을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에 44억 원,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에 57억 원이 지출되었다.

〈표 IV-31〉 피해 이주여성 구제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부처명	3년 예산 (억 원)
피해여성 지원	여성가족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365일 24시간 긴급 지원	43.80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 강화	•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쉼터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치, 그룹홈 운영	57.17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법무부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 전담 검사·수사관 인권의식 강화 교육 • 이주여성 가정폭력사건 등 유의사항 홍보 • 이주여성 통역인 선정 지원	비예산

### 3)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사업은 모두 법무부 소관이며, 예산은 외국인 보호소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운동시설 설치 6억 원, 스포링클러 설치 2억 원)과 보호소 외국인 대상 문화·심리 프로그램 운영(3.5억 원)에 대부분 지출되었다. 이 외에 외국인 보호소 신설 등 보호소 인프라 확대에 5억 원이 지출되었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의 고충상담을 위한 고충상담실과 인권담당관 지정 등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표 IV-32〉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인권보호 환경조성 (법무부)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활성화	• 외국인 보호소에서 전통문화 체험, 한국어 강습, 심리상담 등 제공	3.46
	보호외국인 여가활용 및 운 동시설 설치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옥외 운동장 설치 (실내 구조변경 및 운동기구 구입)	6.30 (2008년)
	외국인 보호실 스프링쿨러 설치	• 전체 보호시설에 화재 안전설비인 스프링 쿨러 설치	2.40
	보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 권교육 강화	•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 보호소에 서 자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법무연수원에도 별도의 인권교육과정을 설치·운영	비예산
고충 상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충상 담실 운영	•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전세금 반환 및 기타 인도적 사유 등 고충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소에 인권담당 관 및 명예 인권담당관 지정	비예산
보호소 인프라 정비 (법무부)	영남지역 외국인 보호소 신 설 검토	• 외국인 전문 보호시설이 없는 영남지역에 전문 외국인 보호시설 설치 추진	4.50
	특수외국어 전공자, 무술유 단자 확보	• 특수외국어 전공자 및 무술유단자 보호시 설 배치	비예산

#### 4) 난민 인정지원

난민 인정·지원 사업 역시 모두 법무부 사업이며, 재정투입은 6억 원으로 모두 난민 지원시설 설립이라는 아주 초보적인 사업 예산이 전부이다. 이외에 난민 업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담부서 신설 검토, 난민신청 납용방지 제도 등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표 IV-33〉 난민 인정·지원 사업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부처명	3년 예산 (억 원)
난민 지원	법무부	난민 지원시설 설립 추진	• 난민 신청자의 숙식, 의료서비스 등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 등을 위한 시설 설립 추진	5.98
		난민신청자 등의 선별적 취업 허용	•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일정기간 내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난민신청자 등의 취업 허용	비예산
난민 업무 인프라 구축	법무부	난민업무 전담부서 신설·확충 검토	• 난민업무가 집중되는 수도권 사무소에 난민업무 전담부서 신설. 면담·조사와 심사결정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비예산
		난민신청의 남용방지 제도 신설	• 명백한 이유없이 신청한 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비예산
		난민 인정 결정권한 일부 지방사무소 위임	• 지방사무소의 난민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후 서울사무소 등 지정된 권역별 사무소에 난민 1차 심사권한을 단계별 위임	비예산

## 7. 국경·국적 관리

### 가. 사업현황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은 사업의 성격상 비예산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불법체류 감소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 국적관리 순이다. 불법체류 감소 사업의 비중은 2008년 42.4%(14개)에서 2009년 42.9%(12개), 2010년 50.0%(14개)로 증가해 왔다.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업은 2008년 39.4%(13개), 2009년 39.3%(11개), 2010년 35.7%(10개)로, 국적관리 사업은 각 년도 18.2(6개), 17.9%(5개), 14.3%(4개)로 감소했다.

〈표 IV-34〉 국경·국적 관리 사업 세부사업군 및 사업 현황

(단위: 개(%))

	2008			2009			2010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예산	비예산	전체
불법 체류 감소	1 (16.7)	13 (48.1)	14 (42.4)	1 (25.0)	11 (45.8)	12 (42.9)	1 (12.5)	13 (65.0)	14 (50.0)
초국가적 범죄 대응	4 (66.7)	9 (33.3)	13 (39.4)	2 (50.0)	9 (37.5)	11 (39.3)	5 (62.5)	5 (25.0)	10 (35.7)
국적 관리	1 (16.7)	5 (18.5)	6 (18.2)	1 (25.0)	4 (16.7)	5 (17.9)	2 (25.0)	2 (10.0)	4 (14.3)
전체	6 (100.0)	27 (100.0)	33 (100.0)	4 (100.0)	24 (100.0)	28 (100.0)	8 (100.0)	20 (100.0)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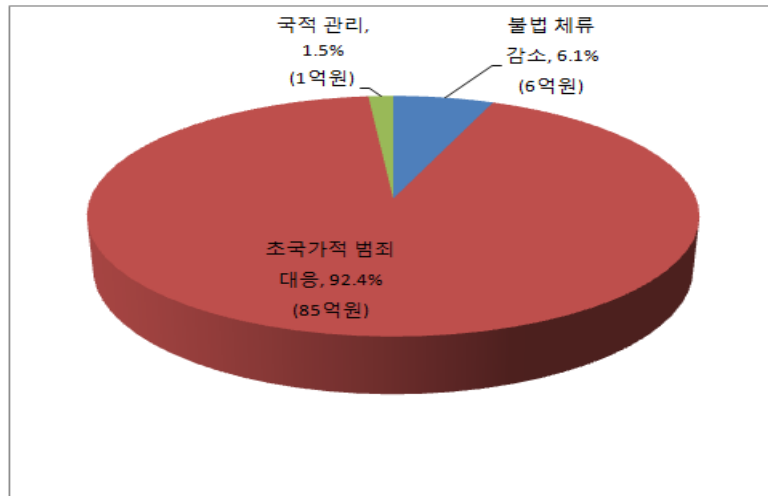
## 나. 재정지출 구조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업에 대한 3년간의 지출 규모는 85억 원으로 국적 관리 사업군 총예산 92억 원의 92.4%를 차지한다. 2008년에는 61억 원으로 96.8%를 차지했으나 2009년 16억 원으로 74.1%, 2010년에는 8억 원으로 52.3% 감소했다.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사업으로 구성된다. 불법체류 감소 사업 3년 총예산은 5.6억 원으로 국적 관리 사업군 총예산의 6.1%를 차지한다. 예산 비중은 2008년 3.2%(2억 원), 2009년 9.9%(0.2억 원), 2010년 17.6%(1.8억 원)로 증가해 온 것이다.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 등 조사단속 사업이 주요 재정 사업이다. 국적 관리 예산은 귀화필기시험 관리 예산 1.4억 원으로 매우 작다.

〈표 IV-35〉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3년 합계		2008		2009			2010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예산	비중	증감 (증감율)
불법 체류 감소	5.60	6.1	2.00	3.2	1.80	9.9	△0.20 (10.0)	1.80	17.6	0.00 (0.0)
초국가적 범죄 대응	84.74	92.4	61.27	96.8	15.89	87.4	△45.38 (74.1)	7.58	74.1	△8.31 (52.3)
국적 관리	1.39	1.5	0.04	0.1	0.50	2.7	0.46 (1150.0)	0.85	8.3	0.35 (70.0)
합계	91.73	100.0	63.31	100.0	18.19	100.0	△45.12 (71.3)	10.23	100.0	△7.96 (43.8)



[그림 IV-8] 국경·국적관리 사업군 재정지출 구조

##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 1) 불법체류 감소

불법체류 감소 사업은 대부분이 법무부 사업이며,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1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법무부의 조사·단속 업무가 대부분이며,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사업은 법무부의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2억 원),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4억 원)이 전부이다. 이 외에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감소를 위해 각각 유학생·어학연수생 관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실태 점검 등의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했다.

〈표 IV-36〉 불법체류 감소 재정지출 내역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입국제한	법무부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	•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방글라데시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2008) 등	비예산
조사·단속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전 지원	• 외국인주민 집단거부지 지자체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안내표지판 정비, 소공원 쉼터 조성, 거리환경 개선 등	3.60
	법무부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 허위초청자, 불법알선 브로커 등 기획조사 강화. • 기획조사 전담반 확대	2.00
		조사·단속 인프라 보강	• 단속인력 증원, 단속 장비 과학화 등	비예산
		정부 합동단속	• 연 2회 정부 내 관계부처 합동단속	비예산
		불법체류대책 5개년 계획 수립	• 상시 단속체제 유지 및 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비예산
정부부처 간 불법체류정보 공유	• 외국인 신원정보시스템 연계	비예산		

구분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 강화	• 외국인 고용사업장 상하반기 외국인 고용실태(근로실태, 신고의무 이행 등) 점검	비에산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 비합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예방	비에산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할 행정기관 정례회의 활성화	•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업무협의회 운영 • 외국인 집단 거주지 현황 파악	비에산
		예술·흥행자격 소지자 관리 강화	• 연예기획사 및 공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비에산
유학생 관리	법무부	유학생·어학연수생 관리 강화(법무부)	• 유학생정보시스템 구축 및 대학의 유학생 관리지침 개정. • 법무부 교과부 합동 유학생 관리실태 점검	비에산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 유도	• 대학의 유학생 관리 실태점검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유학생 지원·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배포	비에산

## 2) 초국가적 범죄 대응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업은 모두 법무부 사업으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설치, 지문정보 수집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재정이 지출되었고, 3년간의 총 지출규모는 79억 원이다. 이외에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에 6억 원이 지출되었다.

〈표 IV-37〉 초국가적 범죄 대응 재정지출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정보시스템 구축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설치 확대 및 활성화	• 자동출입국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설치	59.00
	지문확인제도 도입	• 외국인 외국인지문확인제도 시행(10.9.1)	5.00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각종 정보(출입 국, 체류, 범법기록, 납세기록 등)시스템 연계	15.00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 위험물탑승방지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도(ETA) 도입	비예산
	전자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자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예산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검토	비예산
국제협력 (법무부)	이민당국 간 고위급 회의	• 이민당국 최고 책임자간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국가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0.69
	이민분야 국제회의 참여	• 다양한 지역현안·국제이민동향 파악을 통한 정보력 강화, 정책자료 수집	2.57
	이민연락관 파견 확대 검토	• 주요 공항에 이민연락관 파견	0.70
	이민당국 등과 직원교류	• 해외 이민당국 전문교육기관과의 MOU를 통한 직원교육	0.80
	개발도상국 이민당국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요 쟁점 및 사안별 대상국가 전담부서 실무자나 유망 정책결정자를 초청하여 중 장기적 협력기반 마련	0.98
	인터폴 도난·분실여권정보 연계활용	• 입국심사 전 인터폴의 도난·분실여권 정 보 검색을 통해 위험인물 등에 대한 적발 능력 강화	비예산
	RMAS 가입	• 문제인물 국제이동 감시·차단을 위한 RMAS 가입	비예산

### 3) 국적 관리

국적 관리 사업 역시 모두 법무부 고유 사업으로 귀화 필기시험 관리 등 국적 관리 행정에 1.4억 지출이 전부이며, 이 외의 사업들은 국적관련 시스템 정비, 국적제도 개선을 통한 검증 기능 강화 등 비예산사업이다.

〈표 Ⅳ-38〉 국적관리 사업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3년 예산 (억 원)
귀화 필기시험 관리 (법무부)	귀화 필기시험 지방사무소 위임	• 가까운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제공 및 심사기간 단축	0.35
	필기시험 문제출제 전문기관에 위탁	• 귀화필기시험문제를 외부전문기관 위탁	1.04
	기본소양에 관한 표준교재 발간	• 필기시험 표준교재 발간	비예산
국적취득 심사 강화 (법무부)	국적 관련 시스템 정비	• 대법원·경찰청·국가보훈처·외교통상부 등과 전산망을 연계한 국적 통합시스템의 활용으로 국적 심사 신속화	비예산
	국적취득 심사 강화	• 국적취득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부여	비예산
	본국에서의 범죄경력 여부 심사	• 귀화허가 신청서류로 본국의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받아 귀화허가 요건인 품행단정 판단자료로 활용	비예산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검토	•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귀화 허가	비예산



## 8. 소결

###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 비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규모는 2008년 747억 원, 2009년 1,053억 원, 2010년 1,110억 원 등 총 2,910억 원이었다. 2009년도에 307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체 사업을 크게 해외인력유치, 다문화가족 지원,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 국경·국적 관리 등 6개 사업군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을 분석했다.

각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 예산이 1,248억 원으로 총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재정지출 규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예산은 총 1,163억 원으로 총 지출 중 약 40%를 차지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은 125억 원으로 4.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예산은 85억 원으로 2.9%에 불과했다. 이 외에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환경 개선 사업군 예산은 198억 원으로 6.8%를 차지하며, 불법체류 감소 등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 예산은 92억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사업군별 3년간의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을 통해 볼 때, 다문화사회 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결혼을 통해 유입된 정주자의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이고,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 인력의 적극적 유입과 활용이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차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장기적 안목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나. 사업군별 사업 및 재정지출 구조

사업군별 사업의 특성을 보면, 해외인력유치와 국경·국적 관리 등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정주 관련 자격 관리를 위한 법률과 지침 등 제도개선 사업과 정보화시스템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 등 세 개의 사업군은 표적화된 특정 외국인 집단 또는 외국인 일반이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서비스 성격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단시간에 외국인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다문화 인력양성, 교재 개발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과 일회적인 행사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되었다.

사업군별로 보면, 우선 해외인력유치 사업 중에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초정 장학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해서 3년간 총 782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 사업군 예산 중에는 67%, 전체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중에는 2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사업 예산은 135억 원으로 우수인재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우수인재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입국 후 안정적 체류·정주 자격 부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우수인재를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재정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문 인력은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으로 안정적 정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사회 정책은 기능인력의 안정적 정주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각종 고충 상담과 지원 등 특화서비스 사업 예산 규모가 전문인력보다 높지만 기능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규모 대비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수단이 소극적이다. 법제도 사업의 대부분이 양질의 숙련 기능 인력 확보와 고용주의 고용부담 완화, 그리고 인력 도입규모 관리에 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법적 권리 보장은 미흡한 수준이다. 방문취업 동포 취업 사업 역시 부족한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수단에 우선순위가 두어지면서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입국인원조절, 취업업종 관리를 위한 법제도 사업이 우선시 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화 서비스나 지원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의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여성과 자녀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사업들이다. 이 사업군의 세부사업군 중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에 3년간 764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동사업군 예산의 61%,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지원 예산이 222억 원으로 동사업군 예산의 17.8%를 차지한다.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에 135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는 동사업군 예산의 10.8%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담,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와 비중은 낮다. 또한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업자, 남성 배우자, 결혼이민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역시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학교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22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보다 더 예산규모가 크고 비중이 높은 것은 일회성 행사 사업이다.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인의 날,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 행사와 축제 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체류동포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특정 집단의 외국인을 표적화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일반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서비스 사업들로 구성된다. 주로 언어·정보·민원 서비스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으며(146억 원),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외국인 대상 문화, 여가 환경 제공 사업 예산이 다음으로 높다(51억 원). 체류동포 처우개선 사업 예산은 0.7억 원에 불과하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구제를 위한 예산으로 3년간 101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 사업

군 예산의 81%를 차지한다. 이 밖에 보호외국인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는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예산이 17억 원, 난민 인정·지원 6억 원,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1.5억 원 등 예산 규모가 매우 작다.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 예산은 범죄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업 예산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 다. 사업수단별 재정지출 구조

앞서 분석한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들을 사업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특정 집단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일반이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사업(서비스), 인력양성, 교육, 교재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에게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사업(인프라), 그리고 인력유치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인력유치 사업의 경우 서비스 성격도, 인프라 성격의 사업도 아니라 별도의 범주로 구성했다.

분석결과 서비스 성격의 사업 예산이 1,791억 원으로 다문화사회 정책 총 예산 중 62%를 차지했다. 이 서비스 사업군은 다시 결혼이민자, 기능인력, 보호외국인, 유학생, 체류동포 등에 대한 대상별 특화서비스와 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대상별 특화 서비스 예산이 1,592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다소 이질적이지만, 내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양성,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내국인 대상 교육 등의 예산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홍보와 행사 등 일회성 사업의 비중은 높다.

〈표 IV-39〉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수단별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

사업수단	사업유형	주요 사업	예산	비중
서비스	대상별 특화서비스	결혼이민자, 기능인력, 보호외국인, 유학생, 체류동포 등	1,592.39	54.7
	외국인 일반 서비스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145.71	5.0
		문화·여가·복지서비스	51.33	1.8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1.45	0.0
		소계	198.49	6.8
	소계	1,790.88	61.5	
인프라	다문화 인력양성	다문화 강사 양성, 다문화교육 전문 교원 양성 등	14.75	0.5
		이중언어 강사	6.50	0.2
		다문화 청소년 전문가	0.63	0.0
		소계	21.88	0.8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16.74	0.6
	내국인 교육	다문화교육, 전시 등	6.81	0.2
	홍보와 행사	공익광고, 세계인의 날 등	63.34	2.2
	정보시스템 구축	국경 및 국적 관리 등	91.73	3.2
소계	200.5	6.9		
인력유치	전문인력 유치	전문 인력 및 투자가 유치	134.65	4.6
	유학생 유지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779.05	26.8
	소계	913.70	31.4	
분류불가	기타	4.95	0.4	
합계			2,910.03	100.0

### 라. 특화 서비스 사업의 대상별 재정지출 구조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 중 특정 외국인 집단에 특화된 사업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사업들을 대상별로 분류해 본 결과 유학생, 기능인력, 결혼이민자, 체류동포, 보호외국인, 난민 등이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화 사업 예산은 총 1,592억 원인데, 이 중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은 1,325억 원(7)으로 83%를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248억 원으로 특화 서비스 사업 중 15.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예산 규모는 매우 미미해진다. 이 외에 보호외국인이나 난민 대상 예산 규모는 더욱 작고 그나마도 직접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보호소 시설 개선, 난민 지원시설 건립 등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 예산이므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 취업지원 사업에 3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취업지원을 통한 국내에서의 인력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

〈표 IV-40〉 특화 서비스 사업의 대상별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

대상	사업 유형	예산	비중
유학생	취업지원	3.30	0.2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41.65	2.6
	각종 상담 및 지원서비스	203.44	12.8
	소계	248.39	15.6
결혼이민자와 가족	국제결혼 피해 예방	18.77	1.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3.41	6.5
	취학 전 자녀 양육	763.39	47.9
	아동, 청소년 교육	116.66	7.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22.00	13.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100.97	6.3
	소계	1,325.20	83.2

7) 사업의 목적에 따른 6개 사업군 분류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은 외국인 인권보장 사업군으로 구분되었으나, 대상별 분류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으로 분류되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의 예산 보다 많다.

114 ●●● 법무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대상	사업 유형	예산	비중
체류동포	법률 및 종합서비스	0.66	0.0
보호외국인	보호소 프로그램 및 시설 정비	12.16	0.8
난민	난민지원시설 설립 추진	5.98	0.4
합계		1,592.39	100.0

V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 1. 해외인력유치

### 가. 사업 목표<sup>8)</sup>

해외인력유치 사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1-1.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글로벌 경영 등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기능인력 도입을 통한 생산직 인력난 해소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생산직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나. 사업 실적<sup>9)</sup>

#### 1)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 가) 우수인력 정보 제공

##### (1)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구축, 운영

지식경제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해외 글로벌 고급 인력 발굴·검증 및 인재정보 DB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를 개소하고, 포털시스템(www.contactkorea.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해외 전문인력 발굴, 이력 검증, 화상상담 등의 면접주선, 온라인 비자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 운영된 ‘Contact KOREA’ 사업 예산은 2009년 25억 원, 2010년 30억 원으로 2년간 총 5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 
- 8) 각 사업군별 사업목표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별 배경과 필요성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것이다.  
 9) 사업실적 자료의 출처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사업실적 자료에 기초한다. 이외의 자료 출처는 별도로 표기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 고급인력 채용 지원 실적을 보면, 2009년 492개 기업에 1,730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8월까지 336개 기업에 1,808명의 채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글로벌 고급인력 채용지원

	인력발굴 지원		인터뷰 주선		채용 지원		전 체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2009	213개사	1,278명	141개사	213명	138개사	239명	492개사	1,730명
2010.8	167개사	1,220명	65개사	345명	104개사	243명	336개사	1,808명
합계	380개사	2,498명	206개사	558명	242개사	482명	828개사	3,538명

한편, 해외 고급인력 DB 구축 실적을 보면, 2010년까지 누적 총인원이 4,924명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구축된 1,956명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된 것이어서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2〉 글로벌 고급인력 DB 구축실적(누계치)

(단위: 명)

	공학	관리	연구	컴퓨터	경영	교육	디자인 (예술)	생산	의료	법률	물류 (운송)	농업	기타	합계
2009	716	438	277	225	104	57	54	36	27	17	5	-	-	1,956
2010	1,505	1,287	317	648	386	143	92	61	51	14	24	9	387	4,924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 추천장(골드카드)을 발급하여 출입국 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 운영 실적은 2009년 451명, 2010년 650명으로 나타나, 2년간 총 1,101명이 혜택을 받았다.

〈표 V-3〉 해외 우수기술인력 특혜 지원(골드카드 발급)

(단위: 명)

	전자 상거래 (IT)	생물산업 (BT)	나노 (NT)	신소재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전체
2009	105	3	12	25	75	65	-	24	142	451
2010	80	-	7	11	86	84	5	25	82	650
합계	185	3	19	36	161	149	5	49	224	1,101

**(2) 온라인 비자 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도입**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비자 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은 기업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비자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비자추천인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였다. 2010년 9월까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비자추천인은 총 179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167명, 외국인 12명이다.

**나) 인력도입 지원**

**(1)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기 어려운 R&D 등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 기술 인력을 3개월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 해외기술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인력발굴 수수료, 입국항공료, 체재비 등)를 지원하고, 해외인력 도입에 필요한 사증(E-3, E-7) 발급 추천서를 지원한다.

2008년부터 지난 3년간 투입한 예산은 59.7억 원으로 329개 기업에 414명의 해외 전문 인력 도입을 지원했다.

〈표 V-4〉 해외기술인력 도입현황

	2001~2007	2008	2009	2010.8	합계(2008~2010)
예산	151.98억	18.30억	21.25억	20.10억	211.63억(59.65억)
기업수	894개	1127개	116개	101개	1,223개(329개)
도입인력	1,260명	154명	144명	116명	1,674명(414명)

(2) 해외학자 유치지원 강화

한편,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WCU)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외학자 유치 지원 강화사업은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신규 전공 또는 학과의 개설을 지원하는 유형(유형1)과 개별학자의 초빙을 지원하는 유형(유형2),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 초빙을 지원하는 유형(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표 V-5〉 해외학자 유치 지원 현황

	2008			2009			2010. 9		
	대학	과제	해외학자	대학	과제	해외학자	대학	과제	해외학자
유형1	-	26개		19개	32개	147명	19개	32개	193명
유형2	-	26개		20개	47개	66명	20개	47개	75명
유형3	-	78개		29개	75개	75명	29개	70개	75명
합계	-	130개	283명	36개	154개	288명	35개	149개	343명

자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각년도.  
 교육과학기술부(2010.2.12) “2009년 WCU사업 연차평가 결과” 보도자료.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2008년 1,650억 원, 2009년 1,600억 원, 2010년 1,591억 원 등 총 4,841억 원이다.

WCU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사업을 추진한 36개 대학의 154개 사업단을 평가한 결과, 32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의 사업비 10%를 감액하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3개)과는 협약을 해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2. 12).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사업 평가 결과 융합형 인재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는 한편, 해외학자의 본격적인 참여로 대학현장 교육 분위기가 전환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학생충원 목표제 도입 및 학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책임제를 도입하여 해외 학자별 체류·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 유학생 유치

### 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교류 지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 강화의 필요성과 증가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779.1억 원으로, 총 4,370명이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교류 지원 사업 실적

	예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
2008	211.00억	1,020명	7개국, 10개도시
2009	235.14억	1,385명	3회 개최·참가
2010	332.91억	1,965명	7회 개최·참가
합계	779.05억	4,370명	-

### 나) 유학생 취업지원

지식경제부는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연계를 위해 골드카드(고용추천) 발급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3억 원으로 골드카드를 발급받은 유학생은 2008년 70명, 2009년 65명이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는 총 81개 기업과 5,115명이 참가했다.

〈표 V-7〉 유학생 취업지원 사업 실적

	예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실적		골드카드 발급 유학생
		참가 기업 수	참가자 수	
2008	0.8억	23개사	1,115명	70명
2009	1.0억	28개사	2,000명	65명
2010	1.5억	30개사	2,000명	-
합계	3.3억	81개사	5,115명	135명

유학생 취업지원 실적을 보면, 고용추천서라 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받은 2010년 유학생 수가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유학생 취업지원이 주로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 78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유치한 외국의 우수인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 초청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등의 사후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3) 기능인력 도입

#### 가) 산업안전

##### (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사업장의 위험작업에 종사함에도 안전의식 부족과 언어소통 문제, 본국과는 다른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 전·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89,016명, 2009년 27,928명, 2010년 19,470명 등 총 136,414명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았

다.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자료는 총 87종이 개발되어 35만 8천부가 배포되었다.

〈표 V-8〉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적

	예산	취업교육기관 교육	현장방문 및 민간단체 교육	사업주 교육	합계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보급
2008	2.14억	74,857명	13,663명	496명	89,016명	41종, 17만부
2009	1.72억	23,817명	3,781명	330명	27,928명	39종, 17만부
2010	1.79억	14,339명	5,096명	35명	19,470명	7종, 1.8만부
합계	5.65억	113,013명	22,540명	861명	136,414명	87종, 35.8만부

(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 지원

이 사업 또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건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및 사업장 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취약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하여, 간호사 및 산업위생기사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 질병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민간 산업보건 전문기관을 통한 보건지도, 간이검사, 건강 상담 등 기초적인 산업보건서비스(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등)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 3년간 총 132.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53,000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총 184,764회의 보건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 국고로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V-9〉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 실적

	예산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 실적
2008	36.71억	14,000개소, 54,812회
2009	31.95억	14,000개소, 55,992회
2010	63.58억	25,000개소, 73,960회('10.9월)
합계	132.24억	53,000개소, 184,764회

#### 나) 각종 상담 지원

##### (1)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국 14개 지역별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전체 체류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무료법률상담 등을 실시한다. 2008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2009년 1.0억 원, 2010년 0.4억 원 등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1.4억 원이다. 사업실적을 보면, 2008년의 경우 5,062건, 2009년 6,477건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예산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2010년은 4,787건으로 상담실적 또한 감소하였다. 정부합동 고충상담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무료 치과검진이 실시되는 등 고충상담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2일간 운영하던 정부합동고충상담기간이 1일로 축소됨으로써 상담기회가 대폭 감소하여 이용자 또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10〉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적

(단위: 건)

	예산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적				
		고충상담	무료법률상담	무료건강검진	무료치과검진	합계
2008	비예산	3,264	238	1,560		5,062
2009	1.03억	3,950	187	1,710	630	6,477
2010	0.41억	2,282	155	1,703	647	4,787
합계	1.44억	9,496	580	4,973	1,277	16,326

(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국에 5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행사 등을 실시해 왔다.

〈표 V-1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실적

	예산	추진실적	
2008	79억	기존센터 운영 실적 (서울, 안산, 의정부)	상담 126,674건
			교육 33,811건
			무료진료 7,630건
			기타 시설이용 18,910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마산 등 2개소 업무 개시			
2009	123억	센터 지자체 이양방안 마련(2009. 5. 25)	
		지자체 직접 운영 여부 등 의견 수렴(2009. 6)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 특성과 지역 거주 외국인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종료됨에 따라 동 사업이 종료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 투입된 예산은 총 202억 원이다.

#### 다. 성과 분석

지난 3년간의 해외인력유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63억 원이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세부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우수인재 유치 사업과 기능인력 활용사업으로 구분된다.

해외인력유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우수인재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성과지표는 우수인재 증가율과 골드카드 발급자 증가율이다. 'Contact KOREA',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 도입,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및 학자, 유학생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성과를 판단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체에 우수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장을 발급해주는 제도인 골드카드 발급자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했다. 기능인력 활용 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sup>10)</sup>, 재정이 투입된 사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 발생률을 성과지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해외기술인력 지원 도입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

10) 기능인력의 도입으로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동 사업의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표 V-12〉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성과지표

	사업내용	예산 (억 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해외 우수 인재 유치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 및 투자가 유치 • Contact KOREA 구축, 운영 • 온라인 비자 추천·심사시스템 HuNet 도입 •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 해외학자 유치 지원  <input type="checkbox"/> 유학생 유치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 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917	우수인재 증가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성과  골드카드 발급자 증가율	(당해년도 우수인재-전년도 우수인재)/전년도 우수인재*100  중소기업진흥공단. 각년도 연차보고서 인용
기능 인력 활용	<input type="checkbox"/> 기능인력 활용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245.54	산업재해 발생률	외국인산업재해발생건수/ 외국인근로자수*100

### 1) 해외 우수인재 유치

우수인재 증가율, 골드카드 발급자 증가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업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우수인재 증가율

우수인재 증가율은 DB에 구축된 우수 인재수, 해외학자 입국자 총수, 외국인 장학생수를 합산해서 전년도 대비 증가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이혜경 외, 2009), 개별사업의 시행년도와 관련 자료의 한계로 세부 사업단위별로 살펴보았다.

##### (1) 우수인재 DB구축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DB에 구축된 고급인력은 2010년까지

누적치가 4,924명으로 전년도 1,956명 대비 51.7% 증가하였다. 우수인재 DB 구축은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의 예산은 2009년 25억, 2010년 30억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예산 증가율에 비해 구축된 DB 인재수의 증가율은 51.7%로 예산 증가율의 2.5배에 달하나, DB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 지출을 감안하면 외형상의 증가만큼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전문인력 유치**

우수인재 DB 구축 등 인프라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2007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33,502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 44,320명으로 10,818명이 증가했다.

〈표 V-13〉 전문인력 증가현황

(단위: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인원	24,785	29,011	33,502	37,304	40,698	44,320	209,620
전년 대비 증가율	-	17.1%	15.5%	11.3%	9.1%	8.9%	

자료: 2010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3) 해외학자 유치**

2008년 283명, 2010년 340명을 유치하여, 2008년 대비 20.1%가 증가하였다. 동 사업의 2008년 예산은 1,650억 원, 2010년 1,591억 원으로 2010년 예산이 2008년 대비 3.6%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대비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외국인 장학생 유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2008년 1,020명, 2009년 1,385명, 2010년 1,965

명이다. 외국인 장학생은 2009년 전년 대비 35.8%, 2010년 전년 대비 41.6%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예산 증가율이 각각 11.4%, 41.6%인 점에 비추어볼 때 재정투입 증가율보다 약간 상회수준의 외국인 장학생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나) 골드카드 발급 증가율**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고용 지원 실적을 보여주는 골드카드 발급자수를 보면, 2008년 590명, 2009년 451명, 2010년 650명으로 지난 3년간 총 1,691명이다. 골드카드 발급 증가율을 보면,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사업이 시작된 2009년에는 골드카드 발급률이 전년 대비 23.6%나 감소했다. 2010년에는 전년 대비 44.1%가 증가하였으나 2008년과 대비하면 이는 10.2% 증가에 그친 것이다.

〈표 V-14〉 해외 우수기술인력 특혜지원 골드카드 발급 실적 및 증감율

	인원	전년 대비 증감율
2008	590명	-
2009	451명	△ 23.6%
2010	650명	44.1% (2008년 대비 10.2%)
합계	1,691명	

자료 : ‘Contact Korea’ 내부자료

**다)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사업 성과**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해외 기술인력 유치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매년 420명에 달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건수가 105건, 불량률 개선 14.8%, 생산성 향상 25.8%로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V-15〉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사업성과

	예산	해외기술 인력 도입지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	신제품·신기 술 개발 건수	불량률 개선	생산성 향상	기타
2008	18.30	188명	업체당 2.4명	.	.	.	기술애로 해결율: 98.4% 기술인력난 해소율: 94.8%
2009	21.25	144명	420명	105건	14.8%	25.8%	해외인력투입품목 매출증 대액 360억 원
2010	20.10	147명	420명	105건	14.8%	25.8%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각년도 연차보고서.

## 2) 기능인력 활용

지난 3년간 산업재해율을 보면, 2008년과 2009년은 0.95%인데 비해 2010년 0.05%p 증가한 1.00%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을 한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과 비교해보면, 2008년의 경우 133.8%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격차는 점차 더 커져 2010년에는 144.9%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보건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관리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요청된다.

〈표 V-16〉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

	예산*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
		총수	산업재해자	산업재해율	
2008	38.85억	548,553명	5,221명	0.95%	0.71%
2009	33.67억	551,858명	5,231명	0.95%	0.70%
2010	65.37억	557,941명	5,599명**	1.00%	0.69%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사업 예산과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 지원사업 예산을 합한 것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보도자료(2011. 1. 25)

## 2. 다문화가족 지원

### 가. 사업 목표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국제결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가족형성 단계부터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 가족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을 통해 2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 나. 사업 실적

#### 1) 국제결혼 피해 예방

##### 가) 중개업자 교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법률상 규정된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사업이 진행되었다. 국제결혼 중

개업 관리 및 국제결혼 중개업 교육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62억 원이며, 중개업자 교육 수료 인원은 2008년 2,477명, 2009년 1,167명, 2010년 1,144명이다.

〈표 V-17〉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중개업자 교육 실적

	예산	결혼중개업 등록업체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 수료자
2008	1.81억	1,503개(국내 589개, 국제 914개)	2,477명
2009	1.81억	2,115개(국내 871개, 국제 1,244개)	1,167명
2010	2.00억	2,500개(국내 1,013개, 국제 1,487개)	1,144명
합계	5.62억	6,118개(국내 2,473개, 국제 3,645개)	4,788명

나) 남성 배우자 교육

(1)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과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총 예산은 8.65억 원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는 대략 4,448명이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 전문 강사 61명을 양성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V-18〉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사업 실적

	예산	프로그램 참가자	국제결혼 전문 강사 양성
2008	0.71억	526명	61명
2009	3.52억	1,252명(2009년 상반기)	심화교육 실시
2010	4.42억	2,670명(계획)	심화교육 실시
합계	8.65억	4,448명	



(2)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 교육

국제결혼 전후 한국인 배우자들이 상호 정보교환 및 이해 결여 등 결혼 준비 부족과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인 배우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책정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으로 수행되었다.

〈표 V-19〉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 준비 교육 사업 실적

	국제결혼 예비배우자 교육 참가자	국제결혼 교육 전문 강사 양성
2008	659명(총 69회)	53명
2009	2,725명	해당 자료 없음
합계	3,384명	53명

다) 결혼이민자 교육

예비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 정보 프로그램 사업은 결혼 후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대기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행 결혼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결혼절차 과정 중에 있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현지 언어로 된 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를 하는 사업이다.

3년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4.5억 원이다.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국가는 2010년 현재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총 4개 국가이며, 교육에 참여한 예비 결혼이민자는 총 4,706명이다.

〈표 V-20〉 예비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 정보 프로그램 사업 실적

연도	예산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국가	콜센터 운영 국가	기타
2008	1.00억	몽골, 캄보디아	몽골	결혼이민관 파견 : 베트남, 필리핀
2009	1.00억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몽골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관계자 연수:참여인원 10명(베트남 4, 몽골 3, 필리핀 3)
2010	2.50억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해당자료 없음	교육실적: 베트남 3,968명, 몽골 84명, 필리핀 559명, 캄보디아 95명

## 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 가)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법무부에서 추진한 이 사업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3년간 총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0년까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강사가 대략 549명 양성되었으며, 한국사회 이해 강사 54명,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해과정 577명 등을 양성했다.

〈표 V-21〉 법무부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실적

연도	예산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	한국사회 이해 강사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역량강화 보수교육
2008	1.00억	398명	해당 자료 없음	해당 자료 없음	해당 자료 없음
2009	2.00억	해당 자료 없음	54명	215명	한국사회 이해 강사 대상으로 실시
2010	2.00억	151명	해당 자료 없음	362명	418명
합계	5.00억	549명	54명	577명	418명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국제결혼배우자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배우자 교육 전문강사 53명과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74명을 양성하였으며, 2009년에는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약 130명을 추가로 양성하였다. 동 사업은 전국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 위탁예산에서 추진되었으며,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나) 의사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1)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비로 운영된다.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집합교육과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문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한국어 교육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가 1,296,000여 명, 방문교육으로 한국어를 배운 결혼이민자 27,2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수혜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실적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비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2008	308,000여 명	5,760여 가정	23,000여 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 80개소 2009: 100개소 2010: 159개소
2009	395,000여 명	9,512 가정	85,000여 명	
2010	593,000여 명	11,975 가정	148,000여 명	
합계	1,296,000여 명	27,247여 가정	256,000여 명	

**(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4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가 9.4억 원의 예산으로 160명의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32.8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 10월까지 210명의 통번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3) 다국어판 정보 매거진 발간·배포**

다문화가족 사업 안내 및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정보매거진과 다국어로 제작된 소책자 등을 발간하였다. 이 사업에는 3년간 총 12.2억 원이 투입되었다.

〈표 V-23〉 다국어판 정보 매거진 발간·배포 실적

	예산	다국어판 정보 매거진(Rainbow+)	기타
2008	4.64억	매 분기별 7만부 발간	「행복한 한국생활 우리와 함께해요」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안내 리플렛 발간
2009	4.64억	매 분기별 7만부 발간	외국인·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생활가이드북 제작·발간
2010	2.90억	매 분기별 6만부 발간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

**다)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충상담, 정신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동 사업은 별도의 예산 책정 없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했다. 법무부는 2년 반 동안 17,585건의 상담 서비스를, 보건복지부는 동 기간 동안 총 2,145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결혼이민자와 가족 상담 서비스 실적

	법무부	보건복지부
2008	6,027건	1,278명
2009	7,038건	659명 대상, 총 986건 제공
2010	4,520건(2010년 상반기)	208명 대상, 총 492건 제공(2010.6월말 기준)
합계	17,585건	2,145명

라)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1)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모니터단 운영

결혼이민자 국적별, 배우자, 시부모 등 자조모임 구성·운영을 통해 상호유대감을 고취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비로 운영되었다. 자조모임 참가자는 3년간 총 40,275명이며, 다문화가족 정책 모니터단 정기회의는 연 4회 실시되었다.

〈표 V-25〉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 모니터단 운영 실적

	자조모임 참가자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정기회의
2008	24,234명	해당 자료 없음
2009	6,000여 명(2009. 9월 기준)	연 4회 실시
2010	10,041명(2010.12월 기준)	연 4회 실시
합계	40,275여 명	총 8회

(2)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여성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출신국 새내기 이주자의 정착 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수행했다. 이 사업에는 총 1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2,969명이다.

〈표 V-26〉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실적

연도	예산	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	취업안내 교육
2008	3.00억	해당 자료 없음	해당 자료 없음
2009	9.28억	총 36회, 1,964명	총 19회, 1,167명
2010	3.48억	1,005명	해당 자료 없음
합계	15.76억	2,969명	1,167명

(3)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지원

법무부가 추진한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총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결혼이민자대표 간담회, 명예출입국관리 공무원 위촉, 자원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V-27〉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지원 사업 실적

	예산	결혼이민자 대표 간담회	명예출입국 관리공무원 위촉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활동	결혼이민자 어울림 행사	출입국관리 설명회
2008	2.00억	85회	110명	68명	38회	45회
2009	2.14억	323명	143명	197명	187회	해당자료 없음
2010	1.51억	323명/ 24회	143명	197명	70회	20회
합계	5.65억	731명	396명	462명	295명	65회

마) 취업지원

(1)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결혼이민자에게 취·창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취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다. 이 사업 또한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예산과 고용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운영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직업교육훈련을 보면, 2008년에는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2009년부터 취·창업교육이 시작되었다. 2009년 취·창업 교육 참가자는 9,600여 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009년의 7배에 달하는 75,63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번역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채용 또한 2009년부터 이루어졌으며, 2010년까지 통·번역사로 채용된 결혼이민자는 총 370명이다.

〈표 V-28〉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실적

		직업교육·훈련		지역사회 취업 연계
여성 가족부	2008	정보화 교육	1,128명 참가	해당 자료 없음
	2009	취·창업 교육	9,600여 명 참가	통·번역 전문 인력 채용·양성: 160명
	2010		75,630여 명 참가	통·번역 전문 인력 채용·양성: 210명
고용 노동부	2009	이주민 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24개 사업, 490명 배정 직업훈련 계좌제를 통한 결혼이민자 훈련, 취업알선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으로 인정		
	2010	공공부문 취업 확대: 희망근로 410명, 행정인턴 89명, 취업디딤돌 일자리 217명,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59명, 집단상담 프로그램 55명, 사회적 일자리 56개 사업 283명		

고용노동부 또한 2009년부터 이주민 관련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주민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직업훈련 계좌제를 통해 결혼이민자 훈련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여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을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하였다. 2010년에는 공공부문으로 취업을 확대하여 총 1,113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114명이 참가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283명이 참가하였다.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

이 사업은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돕고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영농기술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했으며, 1:1 맞춤형영농교육, 기초농업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1:1 맞춤형 영농교육에는 2년간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283쌍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실시된 기초농업교육에는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500명이 참가하였다.

〈표 V-2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기술 교육 실적

		예산	다문화가족 영농기술 교육		
보건복지부	2008	10.00억 원	결혼이민자 및 가족 1,400여 명		
농림수산 식품부		예산	1:1 맞춤형 영농교육	예산	기초농업교육
	2009	4.26억 원	628쌍 양성		
	2010	4.26억 원	655쌍 양성	7.50억 원	500명

**바)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을 부여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은 사람은 6,472명이고,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총 93가구이다.



〈표 V-30〉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사업 실적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생계주거의료비)
2008	1,722명	결혼이민자 31가구, 총 3천만 원 긴급지원
2009	1,798명(2009. 7)	해당자료 없음
2010	2,952명(2010. 6)	외국인 62건, 총 7천6백만 원 긴급지원
합계	6,472명	93가구, 1억6백만 원 긴급지원

### 3)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 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서비스는 아동양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사업 중의 하나로, 만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2008년에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방문교육사업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09년과 2010년 예산에는 방문 한국어교육예산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순수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예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2009년과 2010년에 실제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에 소요된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교육서비스 수혜자 중 아동양육 서비스 수혜자 비율을 적용하여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본 결과 2009년 120.21억 원, 2010년 118.44억 원으로, 2008년부터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에 투입된 예산은 총 약 398.65억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가정은 총 30,583가정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8년 10,540가정에서 이후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받는 가정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008년보다 927가정이 적은 9,613가정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

은 만 12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sup>11)</sup>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표 V-31〉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사업 실적

	예산	(한국어교육 지원)	아동양육 서비스 지원
2008	160.00억		10,540가정
2009*	120.21억(241.03억)	(10,533가정)	10,480가정
2010*	118.44억(266.00억)	(11,975가정)	9,613가정
합계	398.65억		30,583가정

주: 2009, 2010년의 ( ) 예산은 방문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예산이 모두 포함된 것임. 이중 전체 방문교육수혜 가정 중 아동양육서비스 수혜 가정 비율을 적용하여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예산을 추정함.

자료: 2009, 2010년 서비스 수혜가정수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방문교육사업결과 보고서(각년도).

#### 나) 취학 전 유아 언어 및 교육 지원

자녀의 언어 습득에는 어머니나 자녀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적 자극이 매우 중요하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 양육책임자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취학 전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이 학령기에 들어 학업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되었다.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다문화가족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발달수준을 평가하고 언어교육과 상담 등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년간 총 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2009년에는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94명의 언어지도사가, 2010년에는 9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1명의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11) 국제결혼가족의 12세 이하 자녀수 : 2009년 92,962명, 2010년 106,363명(자료: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각년도).

제공하였다.

〈표 V-32〉 취학 전 유아 언어 및 교육 지원 실적

	예산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언어지도사
2009	4.73억	80개소	94명
2010	28.23억	93개소	101명
합계	32.96억	173개소	195명

**다) 취학 전 유아 기본학습 및 유지원 생활적응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기본학습 및 유치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유아교육사들이 찾아가는 방문교육, 집합교육, 개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희망유아교육사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비롯하여 기관 미이용 유아 및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 즉 유아기에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언어·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결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따라 기관 미이용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발달지연 유아가 많은 곳을 거점 유치원으로 선정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 2년간 총 6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언어를 비롯하여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결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를 희망유아교육사를 통해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수혜를 받은 유아는 총 3,720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발달지연 유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총 수혜 유아의 27.6%가 다문화가정 유아인 점을 고려할 때 투입 예산 35.4억 원 중 9.8억 원이 다문화가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2010년의 다문화가정 유아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09년 예산 중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사용된 예산은 7.7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추산해 볼 때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투입된 예산은 총 17.6억 원, 수혜 유아수는 총 1,027명이다.

〈표 V-33〉 취학 전 유아 기본학습 및 유치원 생활 적응 지원 실적

	예산	발달 지연 부분 집중 교육		
		희망유아교육사	유아	
			다문화가정	발달지연
2009	7.74억 원(28.05억 원)	172명	444명(1,608명)*	
2010	9.81억 원(35.35억 원)	189명	583명	1,529명
합계	17.55억 원(63.4억 원)	361명	1,027명(3,720명)*	

주: \* 다문화가정 유아 및 발달지연 유아 포함  
( ) 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임.

#### 4)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 가) 이중언어 교육

##### (1)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서울시교육청을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이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을 개발하였다. 2009년부터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를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총 192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서울 및 경기도 내 105개교에 파견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언어별 교육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5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였다.

〈표 V-34〉 이중언어 교육 사업 실적

		예산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위탁운영기관	기간	참여자	강사 배치·활동
교육과학기술부*	2009	2.50억 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900시간, 6개월	72명 40명	서울 시내 70개교
	2010	4.00억 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900시간, 6개월	80명	경기도 내 35개교
			언어별 이중언어교실 운영			
여성가족부	2009	기편성 예산	해당 자료 없음			
	2010	기편성 예산	52개 센터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참조.

**(2)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저소득 빈곤 아동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중 우수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파견하여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체 아동복지교사 중 일부를 결혼이민자로 채용하도록 한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책정 없이 수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15명, 2009년 20명, 2010년 24명이 아동복지교사로 활동하였다.

**나) 학교생활 지원**

**(1)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 정책연구,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였다. 3년(2008~2010년)간 11.3억 원이 투입되었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가 총 17건 수행되었으며, 760명의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에 참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수준별 교재를 발간 배포하고 다문화교육관련 교재를 제공하는 다문화교육 포털을 구축하였다.

〈표 V-35〉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실적

	예산	교재 개발	정책연구	지도교사 연수
2008	4.34억 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초급교재 발간·배포: 1,500부	‘학교다문화교육 실태 분석’ 등 연구 4건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연수: 300명
2009	4.00억 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중급 교재 발간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인지 진단도구 개발’ 등 연구 7건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연수: 170명
2010	3.00억 원	다문화교육관련 교재를 제공하는 다문화교육 포털 구축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급별 교육수요 및 지원방안’ 등 연구 6건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연수: 170명 다문화교육 전문교원 연수: 120명

(2)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도

이 사업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사를 멘토로 활용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충지도,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총 8,907여 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운영한 학교수는 총 151개교에 달한다.

〈표 V-36〉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도 실적

	예산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멘토링
2008	비예산	45개교(3,120명)	2,950명
2009	23.00억	46개교	3,457명
2010	21.00억	60개교	약 2,500명
합계	44.00억	151개교	약 8,907여 명

자료: 2009년 예산 및 실적,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가 3년간 6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학습 지도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녀 학습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 발간·보급, 학교단위에서의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자녀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한다.

〈표 V-37〉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운영

	예산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실 운영	책자 및 프로그램
2008	비에산	3개 교육청 : 전북(80개교), 경북(150개교), 충북(11개 지역교육청)	
2009	64.50억 원	9개 교육청 :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책자 발간·보급: 3만부
2010	3.60억 원	16개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자녀 학습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0개 평생교육기관

2008년에는 전북, 경북, 충북 등 3개 교육청이, 2009년 9개 교육청, 2010년에는 16개 교육청이 이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 책자 3만부가 발간·보급되었으며, 2010년에는 자녀 학습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10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라) 사외적응 지원**

**(1) 학교부적응 학생 교육기회 확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부적응·학업중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75억 원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

확하는 대안교육시설 3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2개 기관을 지원하였다.

**(2)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종합지원**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가족,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초기 적응 지원 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추진된다.

〈표 V-38〉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종합 지원 참여 지역

	예산	다문화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사업 참여 지역
2008	0.68억 원	2개 지역: 부산, 익산
2009	0.83억 원	4개 지역: 부산, 익산, 나주, 홍성
2010	1.30억 원	5개 지역: 부산, 익산, 나주, 홍성, 안산(9월 말 기준)

지난 3년간 동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8억 원이며, 2008년에는 2개 지역(부산, 익산)이 참여하였으며, 2009년 4개 지역, 2010년 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밀집거주형으로 나뉘어 추진되었으며, 상담 및 사례관리와 멘토링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지역별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 사업 추진 실적

		참여 기관	상담 및 사례관리	학습지원 멘토링	다문화 축제		
도시형 (부산)	2008	22개 기관	270회	15명, 주 1회, 1,030명	2,500명		
	2009	23개 기관	500회	10명, 월 3회, 299회	700명		
	2010	해당자료 없음	184회, 360명 (9월 말 기준)	240명, 122회 (9월 말 기준)	해당자료 없음		
		참여 기관	맞춤형 멘토링	부모교육	문화예술	인식개선 캠페인	정책토론회
도·농 복합형 (익산)	2008	21개 기관	주 1~2회, 256명	4회, 68명	해당자료 없음	해당자료 없음	60명
	2009	23개 기관	주 1회, 266회	15회, 338명	해당자료 없음	2회, 2,100명	100명
	2010	해당자료 없음	해당자료 없음	해당자료 없음	10회, 200명 (9월 말 기준)	1회, 1,000명 (9월 말 기준)	해당자료 없음
		참여 기관	맞춤형 멘토링	통합예술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농촌형 (나주, 홍성)	2009	10개 기관(나주) 8개 기관(홍성)	277명(나주) 해당자료 없음(홍성)	300명(나주) 해당자료 없음(홍성)	40명(나주) 40명(홍성)		
	2010	해당자료 없음	10회, 50명 (9월 말 기준)	20회, 200명 (9월 말 기준)	월 2회, 15명 (9월 말 기준)		
		상담 및 사례관리	멘토링 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지원		
밀집 거주형 (안산)	2010	128가구, 190명 (9월 말 기준)	주 1회, 멘토 19명, 멘티 19명(9월 말 기준)		7개 기관, 15명 (9월 말 기준)		

(3) 다문화 청소년 종합정보 제공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무지개청소년센터에 위탁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원이다. 추진실적을 보면 월 1회 발행하는 다문화청소년 e-소식은 총 31회 발행하였으며, 온라인 자료 제공은 총 2,216건, 오프라인 전문자료실에 서적, DVD 등은 총 2,884건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0〉 다문화 청소년 종합 정보 제공

	예산	다문화 청소년 e-소식	온라인 자료 제공	전문자료실 도서 업그레이드
2008	0.17억 원	월 1회, 총 10회, 연 18,048명	1,070건 제공	2,467건(국내외 서적: 2,349/ DVD·비디오: 118개)
2009	0.38억 원	월 1회, 총 12회, 연 58,800명	651건 제공(1,726건)	240건(국내외 서적: 222권/ DVD·비디오: 18개, 총 2,774건)
2010	0.45억 원	월 1회, 총 9회, 연 36,000명(9월 말 기준)	495건 제공(2,180건) (9월 말 기준)	177건(국내외 서적: 167권/ DVD·비디오: 10개, 총 2,914건)(9월 말 기준)
합계	1억 원	총 31회, 112,848명	2,216건	2,884건

마) 다문화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무지개청소년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 3년간 0.6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입문과정에 총 182명, 심화과정에 70명이 참석하였다. 이 밖에 대학생 아카데미와 학습지원 멘토 교육 및 다문화 예비전문가 양성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표 V-41〉 다문화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

	예산	입문과정	심화과정	기타
2008	0.27억 원	총 2회, 71명	총 1회, 30명	
2009	0.27억 원	총 2회, 95명	해당 자료 없음	대학생아카데미: 총 1회, 15명/ 다문화 청소년 전문학습지원 멘토: 16명, 주 1회, 총 196회 활동
2010	0.09억 원	총 1회, 16명 (9월 말 기준)	40명 (9월 말 기준)	다문화 예비전문가 양성교육: 50명(9월 말 기준)
합계	0.63억 원	총 3회, 182명	70명	

###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의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80개, 2009년 100개, 2010년 159개로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V-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실적

	예산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신규 지원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교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2008	40.00억	80개	-	-	-
2009	70.00억	100개	12개 언어, 160명	5개소 (시범운영)	81개소
2010	112.00억	159개	12개 언어, 210명	52개소	92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및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09년부터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과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신규 개설되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12개 언어로 제공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실을 개설하기 위해 시범교육이 5개 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81개소) 등 신규사업을 개발·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센터가 5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92개소로 확대되었다.

## 다. 성과 분석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245억 원으로 이 중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346.2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898.6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크게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과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교육서비스 수혜경험율과 도움정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 및 이용만족도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 취업률도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지만, 취업률에 대한 정부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성과지표에서 제외하였다<sup>12)</sup>.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 사업도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의 수혜 경험율 및 도움정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다.

12)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실적이 보고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실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에 대한 정보는 2010년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4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군 성과지표

사업내용		예산(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활용자료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input type="checkbox"/> 국제결혼 피해 예방 • 중개업자 교육 • 남성배우자 • 결혼이민자 교육	346.18억	한국어 교육 수혜율 및 도움정도	한국어교육수혜자수/결혼이민자 총수*10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 의사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 상담서비스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 취업지원 • 경제적 지원		결혼이민자 및 가족상담 수혜율 및 도움정도	상담건수/결혼이민자 총수*10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결혼이민자/국내거주 결혼이민자 총수*100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898.58억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율 및 도움정도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자/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총수*10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 이중언어 교육 • 학교생활 지원 • 학부모 상담 •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		수혜아동 언어발달 진전 정도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결과보고서(2010)

1)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가) 한국어교육 수혜율 및 도움정도

먼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수혜율을 보면 전체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이 2008년 17,379명에서 2010년 35,019명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교육 수혜율은 2008년 14.2%, 2009년 25.9%, 2010년 24.7%로 두 배에 못 미치는 10%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지원이 빠르게 확대되었음에도 결혼이민자수가 그 만큼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V-44〉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수혜율 및 도움정도

	한국어교육 수혜자 (실인원)*	한국어교육 수혜율**	체류기간	한국어교육 <sup>13)</sup> 수혜율***	도움 됨***
			전체	50.6%	77.0%
2008	17,379명	14.2%	1년 미만	68.3%	83.4%
2009	32,393명	25.9%	1~2년 미만	69.8%	83.3%
2010	35,019명	24.7%	2~5년 미만	56.0%	78.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  
 \*\* 각년도 한국어교육 수혜자/각년도 결혼이민자 총수×100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각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각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과보고서.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실제로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한국어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자는 전체의 50.6%이고, 그 중에서도 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을 받은 비율은 69.8%, 1년 미만 68.3%로 한국에 입국한 초기 단계 결혼이민자 10명 중 7명은 한국어교육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자의 77.0%가 한국어 교육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2년 미만인 경우는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서비스가 결혼이민자의 초기단계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한국문화 이해 교육 수혜율 및 도움 정도**

한편,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는 2008년 8,059명에서, 2009

13) 전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서비스 수혜자 중에는 법무부에서 전국 76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는 교재 개발비를 포함하여 지난 3년간 총 83.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년 14,179명, 2010년 29,473명으로, 2008년보다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 중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비율도 2008년 6.6%에서 2010년 20.8%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국문화 이해 교육은 한국어 교육보다 서비스 지원 수혜율은 크지 않으나, 한국어 교육 서비스보다 확대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한국문화 이해 교육 수혜율 및 도움 정도

	한국문화 이해교육 수혜자(실인원)	한국문화 이해교육 수혜율*	체류기간	한국사회 적응교육 수혜율**	도움 됨**
			전체	37.5%	61.3%
2008	8,059명	6.6%	1년 미만	45.2%	63.3%
2009	14,179명	11.3%	1~2년 미만	50.3%	63.9%
2010	29,473명	20.8%	2~5년 미만	41.3%	63.7%

\* 각년도 한국문화 이해교육 수혜자/각년도 결혼이민자 총수×100

\*\* 한국사회 적응교육: 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각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이는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결혼이민자 중 문화체험, 예절교육 등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수혜율은 37.5%로 3분 1정도의 수준이지만, 최근 한국에 입국한 체류기간 1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수혜율은 45.2%, 1~2년 미만은 5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 중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1.3%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도움 정도는 유사하다. 이는 한국사회 적응교육이 초기 정착단계의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 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정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및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비롯하여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80개소에서 2009년 100개소, 2010년 159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V-46〉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
2008	144,385명	80개	26,904명	18.6%
2009	167,090명	100개	21,960명	13.1%
2010	181,671명	159개	38,577명	21.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각 년도.  
 국내거주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가 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도 증가하였는지를 보면, <표 V-46>와 같다. 2009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하였으나,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5.5%p가 감소한 13.1%로 나타났다. 2010년은 전년과는 달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9%)도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도 8.1%p 증가한 21.2%로 나타났다.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수는 38,577명으로 2009년 이용자 수(21,960명)보다 175.7%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0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가 증가한 것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수가 더 많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 폭이 2009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 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율 및 만족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는 아동양육지도사



가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5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사업 중의 하나로, 방문교육사업 총 예산대비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가정수혜비율을 적용하여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9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V-47〉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율

	예산 (원)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가정	정부 목표치	가구당 예산 (원)	만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율 <sup>14)</sup>
2008	160.00억	11,500가정	-	1,391,000	51,831가정	22.2%
2009	120.21억	10,480가정	17,000가정	1,147,000	88,789가정	11.8%
2010	118.44억	9,613가정	8,000가정	1,232,000	101,746가정	9.4%

주: 2009년 및 2010년 아동양육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표 V-31> 설명 내용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각 년도.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자료.

먼저,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추진 실적을 보면, 2008년 11,500가정, 2009년 10,480가정, 2010년 9,613가정이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혜 가정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V-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업 서비스 대상 가정인 만 12세 미만 자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의 성과목표 또한 2009년에는 17,000가정으로 전년 수혜 가정보다 50% 이상 증가된 목표치를 설정한 반면, 2010년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2009년 대비 절반 이하인 8,000가정을 성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분명한 사업대상과 사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14)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수혜율은 만12세 미만 자녀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수가 평균 0.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등을 고려하여 1가구당 1명의 1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데 따른 것이다.

〈표 V-48〉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

	만6세 이하	만7~12세 이하	만13세 이상	계
2008	33,140명	18,691명	6,176명	58,007명
	만0~6세 미만	만6~12세 미만	만12세 이상	계
2009	58,503명	30,286명	18,900명	107,689명
2010	69,882명	31,864명	20,189명	121,935명

주: 외국인주민 조사현황 자료가 2009년 이후는 각세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8년은 연령대별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조사현황. 각 년도.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수행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보다 더 높은 62.7%로, 다문화가족의 복지 욕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가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괴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결혼이민자 비율은 62.0%로 3명 중 2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자 중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인 비율이 77.0%보다 15.0%p 더 낮은 것이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가 1가구 당 120만 원 내외, 즉 월 24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고비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수요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V-49〉 결혼이민자 체류기간별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전체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62.0	56.1	57.3	64.2	63.9	61.2

출처: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608쪽.

아동양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박인옥, 2010), 강원도 지역의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한 서비스 중 아동양육서비스와 관련한 것은 전체의 50~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아동양육지도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양육 및 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결혼 이민자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를 일부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자들은 아동양육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와 명확한 지침 및 교재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박인옥, 2010; 김미중 외, 2010). 아동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이러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재설계를 비롯하여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높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언어 발달 서비스 수혜 아동 언어발달 진전 정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사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왔다. 2010년 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93개 센터에서 101명의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 총 4,063명의 아동이 언어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2,254명이 언어촉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sup>15)</sup> 표준화된 검사 및 언어발달체크리스트에서 아동들은 교육 후 진전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여 교육 후에 영유아, 학령 전, 학령기 모든 연령 단계에서 언어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언어능력 진전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평가 후 6개월의 촉진교육을 실시한 후 아동의 진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V-50〉 수혜 아동 언어발달 진전 정도

	발달수준 및 정도에 따른 진전 정도	
	촉진대상 아동 감소율(%)	촉진 및 심화평가 대상 아동 감소율(%)
영유아 아동	85.1 → 14.6	39.2 → 8.5
학령기 아동	64.4 → 25.4	20.7 → 7.0
학령전기 아동	60.2 → 24.0	19.3 → 5.2
총 감소율	73.1 → 20.9	29.5 → 7.3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1). 2010년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71~172쪽.

발달수준 및 정도에 따라 진전을 살펴본 결과, 먼저 ‘촉진대상’<sup>16)</sup>아동의 경우 73.1%에서 20.9%로 감소하였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영유아 아동이 85.1%에서 14.6%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이 64.4%에서 25.4%, 학령전기 아동이 60.2%에서 24.0%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촉진 및 심화평가’<sup>17)</sup>대상 아동의 경우 29.5%에서 7.3%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영유아 아동이 39.2%에서 8.5%, 학령기 아동이 20.7%에서 7.0%, 학령전기 아동이 19.3%에서 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 가. 사업 목표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민자를 실질적인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일반 국민과 이민자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사회관계의 형성

16) 평가 후 적어도 한 개의 검사에서 백분위수 10 이하인 아동으로 언어능력이 또래보다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어 촉진을 통하여 언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아동

17) 평가 후 두 개 이상의 검사에서 백분위수 10 이하인 아동으로 언어능력이 또래보다 하위에 있으므로 촉진을 통하여 향상시켜야 하는 아동

을 통해 상호 간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 나. 사업 실적

### 1) 다문화교육

#### 가)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과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한 교재, 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V-51〉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교재, 자료 개발·보급 실적

	예산 (원)	시행처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재, 자료 개발·보급
2008	0.50억	시·도교육청	• 교수·학습 유형 개발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교수·학습자료안 개발 1종
2009	1.50억	시·도교육청	• 초·중등학교 교사용 교수-학습 지도서 개발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교사용 교수·학습자료,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각 1종
2010	0.80억	시·도교육청	• 초·중등학교 교사용 교수-학습 지도서 보급 • '다문화 이해교육'정책연구학교 운영 지원(16개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해당 자료 없음

이 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8억 원으로 관련 교과 및 재량특별 활동 시간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이해교실을 운영하였다. 2009년 초·중등학교 교사용 교수-학습지도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16개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는 곧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각 1개교씩 연구학교를 운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문화 가족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시·도교육청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연구학교를 초등학교를 중

심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유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등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자격연수에 ‘다문화 이해’ 과목 신설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 관련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을 통해 예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 및 태도를 조기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에 교육과학기술부는 3년간 총 4.5억 원을 투입하였다. 지난 3년간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총 2001명으로, 2010년에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에 전국 9개 교육청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관련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교원 양성과정인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에 ‘다문화교육의 이해’ 과정이 2009년에 개설되었으며, 2010년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11개의 국립 사범대학교에도 개설되어 총 21개교에 개설되었다.

문화관광체육부 또한 3년간 총 5.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초·중등학교 교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연수 프로그램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3년간 총 110명의 다문화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초등학교 29개교, 문화기반시설 40개소에 파견하였다.

〈표 V-52〉 유·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예산 (원)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지도교사 대상 직무연수	전국 교대에 '다문화교육의 이해' 과정 개설운영
교육과학 기술부	2008	0.70억	300명	해당자료 없음
	2009	1.80억	161명	10개교
	2010	2.00억	약 1,540명	21개교(국립 사범대 포함)
	합계	4.5억	약 2,001명	21개교
		예산 (원)	'다문화 교사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연수 시간 및 인원	파견 수업 기관
문화체육 관광부	2008	0.75억	총 60시간, 30명	1개(초등학교)
	2009	2.00억	총 96시간, 30명	28개(초등학교)
	2010	2.50억	총 70시간, 50명	40개(문화기반시설)
	합계	5.25억	총 226시간, 110명	초등학교 29개교, 문화기반시설 40개소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09). 2008년 일반교사 다문화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보고서.

\_\_\_\_\_ (2010). 2009년 초중등교사 다문화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보고서.

\_\_\_\_\_ (2011). 2010년 초중등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및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연수 보고서.

다)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 교육

〈표 V-53〉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 실적

	예산	일반학생 다문화 이해교육 수강학생 수
2008	기편성 예산	20개 초등학교, 3,930명
2009	기편성 예산	35개 초등학교 외, 5,850명
2010	0.12억 원	19개 초등학교, 1,440명(9월 기준)
합계	0.12억 원	11,220명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무지개청소년센터에 위탁하여 다문화청소년종합지원 모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별도의 예산이 배정된 것은 2010년 한해로 0.12억 원이다. 이주민 강사(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네팔, 필리핀, 태국 등)를 초빙하여 2시간 특강 형식으로 다문화청소년종합지원 모델 사업을 하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일반학생은 총 11,220명이다.

**라)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 문화체험 전시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외국문화체험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 제고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 총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표 V-54〉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 문화체험 전시회 실적

	예산(원)	외국문화체험 전시회 개최
2008	0.1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청소년 문화전('08.5월~6월)</li> <li>•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전('08.11월~'09.2월)</li> </ul>
2009	0.3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잉글 샘 여름 독서전('09.8월~9월)</li> <li>• 세이셸 문화체험전('09.12월~'10.2월)</li> </ul>
2010	0.8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현대 그림책 삽화전('10.10월~11월)</li> <li>• 체코 그림책 전시회('10.12월~'11.1월)</li> </ul>
합계	1.27억	총 6회 개최

**마) 다문화교육, 다문화 전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의 접근이 쉬운 지역 문화시설을 확보하여 다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행사를 실시하였으



며, 12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억 원으로, 다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1,455명, 교육행사 11,477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자료는 48,000부를 제작·배포하였다.

〈표 V-55〉 다문화교육, 다문화 전시 사업 실적

	예산 (원)	다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관련 교육행사			교육자료 제작·배포
		종류	실시 횟수	참가자	종류	실시 횟수	참가자	
2008	0.26억	4종	18회	556명	2종	8회	10,625명	12개 언어, 12,000부
2009	2.37억	4종	14회	319명	1종	2회	96명	12개 언어, 12,000부
2010	2.37억	4종	23회	580명	1종	18회	756명	12개 언어, 24,000부
합계	5억		55회	1,455명		28회	11,477명	48,000부

바) 다문화 청소년 이해 프로그램

〈표 V-56〉 다문화 청소년 이해 프로그램

	예산 (원)	다문화 이해·반편견 프로그램 참가자	기타
2008	0.28억	387명(교사, 청소년지도자 201명, 학생 186명)	• 세계시민학교 개최(50명 참가)
2009	0.29억	월드비전과 협약 추진 20,000여 명	• 다문화아동청소년 한국경험 기록 발간 • 다문화아동청소년 '알아가기' 해외사례 연구
2010	0.23억	해당자료 없음	• 세계다문화청소년 워크숍(5회, 162명 참석) • 다문화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1회, 150명 참석)

여성가족부가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3년간 총 0.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다문화 이해·반편견 프로그램에

약 20,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세계시민학교 및 세계 다문화청소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전화를 유도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3년간 총 0.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V-57〉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 실적

	예산 (원)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교육원) 개설운영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교육 횟수	참가자(부처)
2008	0.02억	13개 지자체 교육원	1회	248명
2009	0.26억	15개 시·도 공무원교육원	2회	473명
2010	0.14억	17개 중앙-지자체 공무원교육원	1회	5개 부처

**2) 홍보 및 행사**

**가)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

다문화와 관련한 포럼과 세미나 개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법무부는 전국 8개 ABT대학, 한국이민학회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관련 연구와 정책을 연계하는데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예산은 0.6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에 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0.1억 원이다.

〈표 V-58〉 다문화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실적

	법무부		행정안전부	
	예산 (원)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지원 건수	예산 (원)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2008	0.60억	2회(개최 1회, 지원 1회)	기편성예산	1회('08.6월)
2009	기편성예산	2회(개최 1회, 지원 1회)	기편성예산	1회('09.11월)
2010	기편성예산	4회(개최 1회, 지원 3회)	0.10억	1회('10.5월)
합계	0.60억	8회	0.10억	3회

나)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또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대국민 인식 함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다. 문화관광부는 3년간 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희망과 상생을 말하다’ 다큐멘터리 2부작 제작 등 다문화를 주제로 방송프로그램 및 공익광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 국악 뮤지컬을 2년에 걸쳐 총 22회에 걸쳐 순회공연을 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는 언론사 및 인쇄홍보물을 통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을 주로 실시하였으며, 공중파 TV, 지하철 LCD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 활동을 지원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3.3억 원이다.

〈표 V-59〉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실적

	예산 (원)	다문화 주제 공익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다문화 국악뮤지컬 ‘러브인 아시아’ 지역 순회공연		
			공연 횟수	관람인원 (이주민 및 내국인)	
문화체육관광부	2008	0.60억	총 1편	해당자료 없음	해당자료 없음
	2009	6.00억	총 3편	11개 지역 총 12회	약 6,760명
	2010	7.00억	해당자료 없음	9개 지역 총 10회	약 5,000명
	합계	13.6억	4편	22회	약 11,760명
	예산 (원)	언론사 기획홍보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영상홍보물 제작·송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인쇄홍보물 제작·배포	
여성가족부	2008	비예산	1개 신문에 기획기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대상 라디오음악방송에 다문화가족 관련정책 등 콘텐츠 제공</li> <li>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물 송출(지하철 LCD광고)</li> <li>각종 방송출현 및 인터뷰 등 3편 이상</li> </ul>	해당자료 없음
	2009	비예산	2개 신문에 기획기사 제공	해당자료 없음	이중언어 활성화 캠페인: 8개 국어 병기된 포스터(4만부), 리플릿(7만부) 배포
	2010	3.28억	1개 신문에 기획홍보 추진 (국가브랜드위원회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물 송출(공중파 TV, 무료전광판)</li> <li>각종 방송출현, 기고, 인터뷰 등 51회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쇄광고지하철 송출(2010. 10월~11월)</li> <li>9개 국어로 병기된 홍보리플릿 6만부 배포</li> </ul>

다) 각종 행사 및 축제

(1)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연 1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주체 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서비스기관-현장 활동가간 전국-지역단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한다. 3년간 2.93억 원의 예산(2008년 2.0억 원, 2009년 0.43억 원, 2010년 0.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 주관하였다.

**(2)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법무부는 매년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세계인 주간’ 다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에는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 및 출입국관리소에서 2010년에는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및 출입국관리소에서 다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표 V-60〉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예산 (원)	‘세계인의 날’ 기념식	세계인의 날·다문화 관련 포럼 및 공모전	다문화행사
2008	3.50억	해당자료 없음	해당자료 없음	5회
2009	3.50억	1회 (800여 명 참석)	2회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 및 출입국관리소에서 실시
2010	3.50억	1회 (800여 명 참석)	2회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및 출입국관리소에서 실시

**(3) 결혼이민자 부모초청**

행정안전부는 세계인의 주간에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한국문화 체험 및 자녀가정 방문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새마을 운동중앙회를 통해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통해 소외감 해소 및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해당국 정부와의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년간 8.9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총 269명이다.

〈표 V-61〉 결혼이민자 부모초청 행사 실적

	예산(원)	횟수	참가인원
2008	1.37억	1회	61명(동남아시아)
2009	5.10억	2회	148명(베트남, 필리핀, 태국)
2010	2.50억	1회	60명(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합계	8.97억	4회	269명

(4)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이 사업은 ‘다문화축제’를 ‘지역 다문화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축제 외에 생활문화, 전시·공연, 콘텐츠 생산 등 프로그램 유형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3년간 총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V-62〉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실적

	예산(원)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선정·지원	문화예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	지역중심 다문화축제
2008	9.00억	해당자료 없음	해당자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축제(5월): 서울</li> <li>• 이주민 지역특화문화축제(3월~11월): 서울·경기·부산 등 17개 지역</li> <li>• 다문화 청년캠프(7월~8월): 경기도 가평 등 4개 지역</li> </ul>
2009	7.00억	25개 프로그램	다문화영화제, 연극제 등	해당자료 없음
2010	7.00억	28개 프로그램	다문화연극단 운영, 이주여성 미디어교육, 다문화가정 엄마나라 동화구연 등	해당자료 없음

### 다. 성과 분석

지난 3년간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을 투입된 예산은 총 85.3억 원이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사업군의 성과 평가를 위해 학교 및 사회교육부문에서는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율, 교직 과정에의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율,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이해 교육 반영정도를, 홍보·행사부문은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건수로 설정하였다.

〈표 V-6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 성과지표

사업내용	예산(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교육 •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개발 • 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인력 양성 • 학교순회 다문화이해 교육 • 다문화 전시 • 다문화 청소년 이해 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교육	21.96억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율	다문화교육이수 교사/초·중·고교사총수×100
		교직과정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교사양성과정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여부
		초·중등교육과정에 다문화이해 교육 반영정도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input type="checkbox"/> 홍보·행사 • 포럼·세미나 개최 •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 각종 행사 및 축제	63.34억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건수	관련부처 실적자료

#### 1) 다문화교육

##### 가)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수이수율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초·중등학교 교사는 지난 3년간 총 701명이다. 각 년도별 초중등 교사의 다문화교육 이수율은 2008년 0.07%, 2009년 0.04%, 2010년 0.37%로 2010년 전체 교사수 대비 0.49%가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4〉 초중등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이수율

	다문화교육 직무연수참여자(명)	초중등교사 총수(명)	다문화교육 이수율(%)
2008	300	403,796	0.07
2009	161	409,217	0.04
2010	약 1,540	411,958	0.37
계	약 2,001	411,958	0.4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유초중등통계. 각년도.

이는 지난 3년간 전체 초중등 교사 1만명 중 4.9명만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직 초중등 교사에 대한 다문화교육 연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교사연수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집중하고, 개발된 연수프로그램과 교재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직무교육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실제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9개 교육청에서 10개 대학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관련 직무연수과정을 30시간 및 60시간과정으로 개설하고 약 1,300명에 대한 교사 연수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 다문화교육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구체화하는 등 교사대상 다문화교육 연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교직과정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현직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도 중요하지만, 예비 교사인력인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교직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10개 교육대학 모두에 ‘다문화교육의 이해’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2010년에는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국립 사범대학교 11개교에 ‘다문화교육의 이해’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교직에 진입하게 되는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다문화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비해 중등교사의 경우는 국립학교에서만 다문화교육 이해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에 다문화교육의 이해 강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 다) 초·중등 교육과정 다문화이해 교육반영 정도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교육과정에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및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 범교과 학습 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있어, 다문화교육을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어, 사회, 도덕, 기술·가정, 체육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결과(정해숙 외, 2011)에 따르면,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9학년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극복'이라는 단원이 설정되어 있고,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는 이주여성(생활의 길잡이, 3-1, 49~50), 다문화사회 수용성(도덕, 3-2, 46~65; 생활의 길잡이, 3-2, 44~65; 도덕, 6학년, 140~142) 및 타문화 이해(도덕, 6학년, 134~139; 생활의 길잡이 6학년, 114~127), 다문화가정 자녀문제(도덕, 6학년, 162; 생활의 길잡이 6학년, 146) 등 다문화에 대한 초·중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교과서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 2) 홍보 및 행사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영상홍보물이 2008년과 2009년은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홍보물 제작방영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반면, 2010년에는 방송출연, 기고, 인터뷰, 세계인의 날 행사관련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한 횡수

(총 251회)가 월등히 많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

〈표 V-65〉 다문화 주제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건수

	영상홍보물 제작·송출	인쇄홍보물 제작·배포	언론사 기획홍보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희망과 상생을 말하다' 다큐멘터리 2부작 제작(아리랑 TV, K TV 방영)</li> <li>•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물 송출(지하철 LCD광고, 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일보, 기획기사</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주제 공익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3편 제작·방영</li> <li>•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주제 공익광고방영(한국방송공사, 1월~2월)</li> <li>• KBS 러브인 아시아, 7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 활성화 캠페인: 8개 국어로 병기된 포스터(4만부), 리플릿(7만부)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기획기사</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파 TV에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홍보 영상물 방영, 방송출현, 기고, 인터뷰 등 51회 이상</li> <li>• 세계인의 날 행사, 지상파TV 보도 총 21회</li> <li>• 세계인의 날 홍보 동영상 광고 총 174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인식개선 및 국제결혼 건전화 인쇄광고 지하철 송출(10월~11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인의 날 행사 기획기사 연재(노컷뉴스, 총 5회)</li> </ul>

## 4.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 가. 사업 목표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편리한 체류환경 조성으로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 및 체류 및 정주자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나. 사업 실적**

**1)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가)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서비스**

**(1)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표준화, 전문화하여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국적 및 영주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외국인이 한국어와 문화, 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장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를 면제해주고, 국적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해주며, 전문 인력의 거주 자격(F-2)변경 시 가점을 부여하고, 영주자격(F-5-1) 시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해준다.

〈표 V-66〉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적

	예산(원)	표준화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확대 과정
2008	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법무부 훈령, '08.3월12일)</li> <li>추진기반 구축- 전국 20개 ABT에서 총 398명 양성</li> </ul>
2009	12.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09.2월) - 전국 20개</li> <li>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교육 실시(4회) - 신청자 4,590명, 교육 참여자 1,518명, 교육 대기자 3,009명</li> </ul>
2010	28.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점운영기관 강화 및 전국 운영기관 확대 : 76개</li> <li>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li> </ul>

지난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 양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2009년 전국 20개 기관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회통합이수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MOU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V-67〉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가자 및 이수율

	예산 (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자 수	참여자 수	이수자 수	이수율
2009	12.00억	20개	4,590명	1,581명	485명	30.7%
2010	28.00억	77개	11,599명	4,799명	1,061명	22.2%
합계	40.00억	77개	16,189명	6,380명	1,546명	24.2%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각년도.

2년간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총 1,546명으로, 프로그램 이수율은 2009년 30.7%, 2010년 22.2%이다. 2011년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2)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자료와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관리를 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부터 총 43.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13종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다.

〈표 V-68〉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 사업 실적

	예산 (원)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2008	10.60억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 대상 한국어·한국문화이해교육 실시(4~11월)</li> <li>•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9~4월, EBS)</li> </ul>
2009	15.80억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지도사 대상 한국어 교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8~12월)</li> <li>•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학습 프로그램 1단계 개발(9~12월)</li> <li>• 한국어 교육 관련 방송프로그램 개발(2종-YTN, EBS, 9~12월)</li> </ul>
2010	16.67억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1~7월)</li> <li>• 한국어교육원 실무 지도사 교육(6월) 및 파견(7~12월)</li> <li>•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방송프로그램 중급 개발('10. 하반기)</li> </ul>

**(3)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한국어교육**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9년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24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1,085개 주민자치센터에 생활정보 등 종합안내서를 배치하였다. 2010년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4)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차 통역서비스**

법무부는 외국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8개 국어로 행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3차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는 2008년 20.7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현재 3차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1개 기관이며 서비스 제공 실적은 총 1,21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V-6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통역 서비스

	예산 (원)	외부공공기관 3자 통역서비스 실적		3자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외부기관	출입국 관련 민원	
2008	20.78	64건	189건	9개
2009	비예산	284건	143건	9개
2010*	비예산	1,062건	156건	11개

\* 법무부 내부자료

#### 나) 생활 정보 제공

이주민들이 우리사회 문화와 생활방식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취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련 정보 제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와 해외문화홍보원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3년간 3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해외홍보용 한국문화 소개 자료 등을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확대 보급하기 위해 3년간 월간 영문지 Korea, Welcome to Korea 등 총 577,990부를 제작·발간하였다.

〈표 V-70〉 해외 한국 소개 홍보자료 제작·배포 실적

	예산 (원)	해외 한국소개 간행물 제작수량	종류
2008	10.70억	187,000부	• 월간영문지 Korea, Facts about Korea, Welcome to Korea, Guide to Korean Culture, Korean Beauty 등
2009	10.00억	192,610부	
2010	10.00억	198,380부	
합계	30.70억	577,990부	

**다) 민원 편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가능 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법무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2008년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절차 등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하고,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가 활성화되어, 2010년에는 2008년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112,0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가 활성화되면서 방문민원이 감소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혼잡현상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71〉 출입국 등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

	예산(원)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
2008	9.00억	47,311건
2009	비예산	88,397건
2010*	비예산	112,061건
합계	9.00억	247,769건

\* 법무부 내부자료.

**2) 문화·여가·복지서비스**

**가) 문화예술 및 공연**

**(1)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노동자, 새터민에게 문화예술의 체험·학습·창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에 2008년 8.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72개 시설에 전문예술강사를 파견하여 1,650명을 교육하였다. 2009년 3.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사업실적 및 2010년 사업계획은 보고되지 않았다.

(2) 국악 공연

국립국악원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게 한국전통예술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국악강좌, ‘아시아 우리는 하나’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는 3년간 총 2.8억 원이 투입되었다. 찾아가는 국악 공연은 2008년과 2009년 총 16,688명이 관람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46회 공연하였다. 국악강좌에는 3년간 총 4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공연 ‘아시아 우리는 하나’는 2009년과 2010년 각 2회씩, 총 4회 개최되었다.

〈표 V-72〉 국악 공연 실적

	찾아가는 국악공연			국악강좌		예산 (원)	아시아 우리는 하나
	예산 (원)	추진횟 수	관람인원	예산 (원)	교육 참가자수		
2008	0.64억	16회	10,000명	0.20억	총 161명	0.10억	해당자료 없음
2009	0.64억	15회	6,688명	0.15억	총 165명	0.12억	2회
2010	0.50억	15회	해당자료 없음	0.15억	77명 (‘10 상반기 기준)	0.25억	2회
합계	1.78억	46회	16,688명	0.5억	400여 명	0.47억	4회

나) 도서관 정보 서비스

(1) 국립중앙도서관 추진 사업

문화관광체육부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일반인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고 다문화 지식정보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서비스에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총 12.9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0년까지 다문화 밀집지역 다문화자료실은 총 8개소가 조성되었으며,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624개 도서관에 배포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화구연콘텐츠를 총 182편 개발하고 외국 아동도서를 총 6,538권을 구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디지털 지식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다문화 정보콘텐츠를 7개 국어로 195종, 블로그 70종, 국내외 책 정보 콘텐츠 1,100종 제작하였다.

〈표 V-73〉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실적

	예산 (원)	다문화 자료실	예산 (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예산 (원)	다문화 지식정보 구축
				동화구연 콘텐츠 개발	외국어 동서 구입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2008	0.80억	1개소	-	154편	3,317권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배포 624개소)	1.50억	디지털 지식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2009	1.00억	1개소	3.14억	28편	3,221권	12개소	0.50억	다문화 웹 콘텐츠 구축 665건, 95종 7개 언어
2010	4.00억	6개소	0.95억	해당 자료 없음	해당 자료 없음	16개소	1.00억	다문화 웹콘텐츠 제작 • 다문화정보: 100종 ×7개 언어 • 블로그: 70종 • 책 정보: 1,100종
합계	5.8억	8개소	4.09억	182편	6,538권	연구보고서 배포 642개소, 28개소 지원	3억	다문화정보콘텐츠 7개 국어 195종, 블로그 70종, 국내외 책 정보 콘텐츠 1,100종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진 사업

〈표 V-74〉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사업 실적

	예산 (원)	개발실적		예산 (원)	외국도서 구입
2008	0.68억	영어동화구연 콘텐츠 개발	152편	0.61억	해당자료 없음
2009	0.50억	한국전래동화 동영상 콘텐츠 개발	28편	0.65억	해당자료 없음
2010	5.00억	아시아전래동화 동영상 콘텐츠 개발	150편	0.75억	3,109권
합계	6.18억	콘텐츠 개발 330편		2.01억	3,109권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8.2억 원으로 영어동화 구연 콘텐츠 152편, 한국 및 아시아전래동화 동영상 콘텐츠 178편, 다양한 언어권별 아동도서 3,109권을 구입하였다.

다) 여가활동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는 지난 3년간 총 16.02억 원이 소요되었다. 복지관광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사람은 3년간 총 1,936명이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하는 어울림 생활체육교실은 총 116개소가 운영되었다. 2010년에는 어울림 생활체육축제도 4회 개최되었다.

〈표 V-75〉 여가활동 지원 사업 실적

	예산 (원)	복지관광 참가자 수	예산 (원)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기타
2008	0.75억	543명	1.00억	해당자료 없음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마당 개최, 1회
2009	1.07억	713명	1.00억	16개소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 16회
2010	1.20억	680명 (10월 기준)	11.00억	100개소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축제, 4회
합계	3.02억	1,936명	13억	116개소	어울림마당 및 체육축제 21회

라) 복지 서비스

(1)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장애인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장애인 전산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외국의료인 진료 코디네이터 양성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소통 등 진료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간의 통역지원이 가능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는 3년간 총 2.58억 원이 투입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국제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교육대상은 의료인력, 행정인력, 의료보조인력, 해외환자유치실무자, 국내여행사 및 해외환자 에이전시, 코디네이터 취업준비생 등으로 164명의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였다. 2010년에는 교육대상을 축소하여 몽골,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의료인력 25명을 대상으로 진료코

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 3) 체류동포 처우개선

#### 가) 법률 및 종합 서비스

방문취업제의 시행 등으로 증가하는 재외동포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내 책자 ‘법과 생활’을 총 1만부 발간하였으며, 방문취업제 등 관련 안내 리플릿을 중국어(10만매)와 러시아어(1만매)로 발간하였다. 이 사업은 2008년과 2010년은 비예산사업이었으며, 2009년에만 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나)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무부는 4개 민간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는 데 0.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자 간담회 및 방문취업제도 등 동포정책, 체류관리, 근로기준법 및 사업재해 등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 다. 성과 분석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의 재정사업은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체류동포 처우개선 등이다. 성과지표로는 체류 및 정주 외국인대상 생활편의 제공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외국인 및 동포의 생활만족도, 3자통역서비스 증가율 및 온라인 민원처리율을 선정하였다.

〈표 V-76〉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 성과지표

사업내용	예산 (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정보·민원서비스 • 의사소통 및 언어서비스 • 생활정보 제공 • 민원편의	145.71억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율	전년 대비 실적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복지서비스 •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도서관 정보 서비스 • 여가활동 • 복지서비스	51.33억	3자통역서비스 증가율	전년 대비 실적
<input type="checkbox"/> 체류동포 처우개선 • 법률 지원 서비스 •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0.66억	외국인 및 동포의 생활만족도	법무부, '체류외국인 생활실태조사'결과

1)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율

온라인 민원처리사업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법무부는 온라인 가능 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2008년 9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2007년 3,629건에 불과하던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이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3배가 증가한 47,311건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2008년 대비 2.4배 증가한 112,061건에 달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가 활성화됨에 따라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소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함이 대폭 축소되고 업무 편의가 증가될 뿐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의 업무 혼잡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표 V-77〉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율

	예산(원)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	전년 대비 증가율
2008	9.00억	47,311건	-
2009	비예산	88,397건	86.8%
2010	비예산	112,061건*	26.8%

\* 법무부 내부자료.

## 2) 3자 통역서비스 증가율

〈표 V-78〉 3자 통역서비스 증가율

	3자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외부공공기관 3자 통역서비스 실적			
		외부기관	출입국 관련 민원	전체	전년 대비 증가율
2008	9개	64건	189건	253건	-
2009	9개	284건	143건	427건	68.8%
2010*	11개	1,062건	156건	1,218건	185.2%

\* 법무부 내부자료.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확대는 외국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생활전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체류·정주자의 한국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2008년 9개 기관에서 2010년에는 11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실적 또한 2008년 253건에서 2010년에는 거의 5배에 달하는 1,218건으로 증가하였다.

## 3) 외국인 및 동포의 한국생활 만족도

3자 통역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등의 체류 및 정주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체감만족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표 V-79>와 같다. 매년 조사대상자가 달라 체류외국인의 대상별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보기는 어렵다. 2009년의 경우 국적취득자(만족율 63.7%, 만족도 점수 7.08)가 외국인 유학생(만족율 46.8%, 만족도 점수 6.20)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제 중국동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만족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동포 중 불만족을 표명한 비율(외

국민 근로자 4.7%, 중국동포 7.0%)이 다소 더 높다. 이처럼 체류 외국인 중 한국생활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비율이 10%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류 및 정주 외국인을 위한 생활편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79〉 외국인 및 동포의 한국생활 만족도

	조사 대상	만족도(%)			평균점수
		만족	보통	불만족	
2009	국적취득자(504명)	63.7	32.1	4.2	7.08(10점 만점)
	외국인유학생(1,009명)	46.8	44.1	8.6	6.20(10점 만점)
2010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1,000명)	41.6	53.8	4.7	3.51(5점 만점)
	방문취업제 중국동포(1,000명)	41.0	52.0	7.0	3.42(5점 만점)

출처: “2009년 체류외국인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 법무부 보도자료(2009.10.31).  
정기선 외(2010).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그러나 국적취득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된 사람들의 만족도는 3명중 2명에 가까운 63.7%에 달하는데 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제 중국동포들의 한국생활 만족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것은 일시적 체류자들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사업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편의 제공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외국인 인권보호

### 가. 사업 목표

외국인 인권보호사업의 목표는 개방된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난민 인정 및 지원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데 있다.

## 나. 사업 실적

### 1)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동포 등 외국인정책 대상 급증과 체류유형 다양화에 따라 2009년부터 이민자의 시각에서 사회현상 및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차별시정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였다. 2개년의 예산은 총 1.45억 원으로,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2009년에는 345명을, 2010년에는 186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하고 활동보고서 924건(2009년 374건, 2010년 550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효용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생산되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피해 이주여성 구제

#### 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당했을 때 365일 24시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 병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등 8개 국어로 전화 및 인터넷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08년에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홍보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하고 라디오 및 전광판, 지하철 광고를 하는 한편, 리플릿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다. 2009년부터 지역센터가 연차적으로 설립되어 2010년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었다.



〈표 V-80〉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서비스

	예산 (원)	이주여성상담원 등 종사자	권역별 지원센터	상담실적
2008	6.97억	25명	해당 자료 없음	19,916건
2009	12.02억	46명	4개소(수원, 대전, 광주, 부산)	43,454건
2010	24.81억	70명	6개소(수원, 대전, 부산, 광주, 구미, 전주)	54,194건
합계	43.8억	141명	6개소	117,564건

나)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및 기능 강화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8년 이주여성쉼터가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현재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보호시설 퇴소 후 거주공간 지원을 위한 그룹홈과 자활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7.2억 원이다.

〈표 V-81〉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현황

	예산(원)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2008	2.07억	4개소		
2009	25.33억	18개소		
2010	29.77억	18개소	1개소(서울)	1개소
합계	57.17억	18개소	1개소	1개소

이처럼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이용자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의 경우 4개소에 불과하던 쉼터가 18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연중 평균 보호인원이 17명에서 11배 이상 증가한 187.6명으로 급격히 증가

하였다. 2010년에는 쉼터 수는 18개로 전년과 동일하나, 이용자 수는 연평균 229.4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설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주여성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V-82〉 연도별 이주여성쉼터 운영실적

(단위: 명)

	연중입소인원			연중퇴소인원			연말현원			연중 평균 보호인원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2008	246	185	61	233	171	62	44	38	6	17
2009	1,109	808	301	1,003	742	261	214	151	63	187.6
2010	1,336	935	401	1,336	932	404	216	153	63	229.4

출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3)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 가) 보호소 프로그램 및 시설 정비

##### (1)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3.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82회, 2009년 537회 등 1,156회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20,331명이다.

〈표 V-83〉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원, 회, 명)

	예산	전체		전통문화 체험		한국어교육		이미용봉사		건강관리 교육		심리상담		기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08	0.36억	82	1,163	37	742	-	-	9	86	3	87	31	208	2	40
2009	2.22억	537	10,317	133	2,503	72	1,399	74	1,434	163	2,634	51	1,547	44	800
2010	0.88억	537	8,851	123	2,861	79	1,336	76	1,606	138	1,704	98	855	26	489
합계	3.46억	1,156	20,331	293	6,106	151	2,735	159	3,126	329	4,425	180	2,610	72	1,329

(2) 시설 정비

법무부는 이와 함께 2008년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옥외 운동장을 설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여가활용 및 운동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보호실에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다.

나) 영남지역 외국인보호소 신설

법무부는 현재 전문 외국인보호시설이 없는 영남권에서 타지역으로 보호외국인 이송 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영남지역에 전문 외국인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부지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잡종재산 중 1,500평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지적합성 여부 검토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4) 난민 인정지원

법무부는 2008년 난민지원시설 예산 2.38억 원을 확보하고 난민지원 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난민 인정자는 국내 장기체류 가능성이 높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초기 적응이 곤란하여, 난민지원시설을 마련하여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 현재 난민지원센터 기본설계

가 확정되었으며, 투입된 총 예산은 5.98억 원이다.

### 다. 성과 분석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의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는 이주여성 상담실적과 보호외국인 인권보호실적, 난민인정율로 선정하였다. 피해 이주여성 상담실적과 보호외국인 인권보호실적은 예산비중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으며, 난민인정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한 것은 난민지원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난민 인정자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난민 인정은 외국인 인권보호의 주요사업과제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편, 피해 이주여성 구제와 관련하여 이주여성 보호시설 만족도 등이 주요 성과지표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조사 자료가 없어 제외하였다.

〈표 V-84〉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성과지표

사업내용	예산	성과지표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차별방지 모니터링	1.45억	피해 이주여성 상담실적	정부설정 목표치 대비 실적
<input type="checkbox"/> 피해 이주여성 구제 • 이주여성 전국시스템 구축 •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100.97억		
<input type="checkbox"/>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 외국인보호소 신설	16.66억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	정부설정 목표치 대비 실적
<input type="checkbox"/> 난민지원시설 설립	5.98억	난민인정율	난민 인정자수/ 난민 심사종료자수

#### 1) 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상담실적

지난 3년간의 상담실적으로 보면, 2008년 19,916건, 2009년 43,454건, 2010년 54,19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상담실적은 2008년을 제외하고 정부가 설정한 성과목표치를 월등히 상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나, 정부가 정한 목표치가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종사자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정부의 성과목표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성과목표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간 이주여성 상담원 등 종사자 1인당 월 평균 상담건수를 보면, 2008년 66.4건, 2009년 79.0건, 2010년 64.5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종사자 1인이 1일에 2~3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나, 상담실적에 통역상담까지 포함되는 등 종사자 1인당 적정 상담건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사자 1인당 상담 실적이 적정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표 V-85〉 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상담실적

(단위: 건)

	추진실적					정부 목표치*
	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원 등 종사자	상담실적	월평균 상담건수	종사자 1인당 월평균 상담건수	
2008	-	25명	19,916	1,660	66.4	-
2009	4개소	46명	43,454	3,621	79.0	21,900
2010	6개소	70명	54,194	4,516	64.5	45,000

출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2010년 상담실적 통계보고. 2쪽.  
외국인정책위원회. 각년도 중앙부처시행계획.

## 2)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관련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고충처리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08년 20,218건, 2009년 24,89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957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정부의 성과 목표치와 비교해보면,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정부 성과목표치를 월등히 상회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정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0년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난 데에는 2010년의 정부 성과 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의 성과 목표치를 보면, 2009년의 15,000건보다 10,000건 이상 증가한 25,404건으로 책정되어 있다. 2010년의 성과목표치가 전년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것은 2009년의 실적을 고려하여 차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2008년과 2009년은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성과 목표를 설정한 반면, 2010년은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성과 목표가 객관적, 합리적 근거에 의해 책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성과 목표를 토대로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사업의 성과 여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보호외국인의 고충처리 실적이 체불임금은 물론, 의료구호에 이르기까지 처리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이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86〉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

(단위: 건)

	추진실적							정부 목표치*
	계	체불임금		의료구호	재해 보상	출입국 관리법상 처분	기타	
		건수	금액 (백만 원)					
2008	20,218	8,074	10,801	998	3	2,449	8,694	13,364
2009	24,898	9,053	11,085	4,847	0	2,829	8,169	15,000
2010	11,957	3,465	6,264	967		1,062	6,463	25,404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60쪽.  
 (2011).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121쪽.

### 3) 난민인정을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고문현, 2008).

지난 3년간의 난민인정율을 보면, 2008년 14.6%, 2009년 5.7%, 2010년 14.7%로 2007년 대비 2008년과 2009년은 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체 난민심사 종료자 1,859명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170명으로 율은 8.4%이다. 이는 2007년보다 0.7%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난민 인정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난민 인정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독립부서로 난민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향후 난민인정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V-87〉 난민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신청	심사종료				난민 인정율*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2007	717	13	9	86	62	7.6%
2008	364	36	22	79	109	14.6%
2009	324	74	22	994	203	5.7%
2010	423	47	43	168	62	14.7%
합계	1,828	170	96	1,327	436	8.4%

\* 난민인정율=인정자/심사종료자(인정+인도적 체류+불인정+철회) \*10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1).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6. 국경·국적 관리

### 가. 사업 목표

국경 및 국적관리 사업은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외국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경관리의 과학화, 외국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익을 위해 인물의 차단 및 외국인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 나. 사업 실적

#### 1) 불법체류 감소

##### 가) 조사·단속

##### (1)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의 근원이 되는 불법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환경 조장사범을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였다. 이 사업은 2008년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2009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보면, 3년간 총 1,132건이 적발되었으며, 2009년과 2010년 상반기에 적발된 사람은 총 3,688명에 달한다.

〈표 V-88〉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 조사

	예산 (원)	허위초청 브로커 등 기획조사 실적	비고
2008	2.00억	430건 적발	• 사건송치 및 수사역량 강화 교육: 140명 • 사건송치 실무교재 발간·배포: 350부
2009	비예산	462건, 2,372명 적발	
2010	비예산	240건, 1,316명 적발(상반기)	
합계	2.00억	1,132건, 3,688명 적발	



**(2) 외국인 집단거주지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 2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각각 1.8억 원씩 총 3.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2009년에는 13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표지판 정비, 한글교실·건강프로그램 운영, 소식지 제작 등 25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2010년에는 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국어 홍보게시판, 공공시설 안내판 설치, 소공원 쉼터 조성, 거리환경 개선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2) 초국가적 범죄 대응**

**가) 정보시스템 구축**

**(1)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설치 확대**

〈표 V-89〉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설치

	예산(원)	설치실적	세부내용
2008	59.00억	총 20대	• 인천 공항: 출국장 12대, 입국장 8대
2009	비에산	해당자료 없음	해당자료 없음
2010	비에산	총 8대	• 인천공항: 안면인식 가능한 시스템 2대, 입국장 자동 심사대 추가 4대 • 김포공항: 출국장 1대, 입국장 1대

법무부는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도입하였다. 2008년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공항에 총 20대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도입**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08년 ‘외국인 지문채취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범법외국인 DB자료 50만건 인수하여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다. 2010년 8월 전국 22개 공항만 입국심사장(재심실)에 지문조회장비와 안면인식기 등 총 67대 설치하고 9월부터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3)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관련 각종 정보(출입국, 체류, 범법기록, 납세기록 등)를 각 행정기관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위험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외국인 신원정보 등 통합정보 분석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신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나) 국제협력

### (1) 이민당국 간 고위급 회의

법무부는 이민당국 최고 책임자간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민관련 정기회의체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민당국간 고위급 회의에는 총 0.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민분야 국제회의 예산은 총 2.57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민당국간 고위급 회의에는 2008년 베트남 등 8개국, 2009년 4개국 등 3년간 총 17개국과의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민분야 국제회의는 3년간 APEC 경제인 이동회의, ASEM 이민국장회의, PACRIM(환태평양 이민정보회의), PROCEE(인신매매 방지 발리회의), 글로벌포럼(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가간 연례회의) 등 총 14회 참가하였다.

〈표 V-90〉 이민당국간 고위급 회의 실적

	예산(원)	이민당국 간 고위급 회의 참가국	예산(원)	국제회의 참여횟수
2008	0.40억	8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네덜란드 등)	0.89억	5회
2009	비예산	4개국(몽골, 러시아,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0.89억	4회
2010	0.29억	5개국(일본, 네덜란드, 태국, 중국, 벨라루스)	0.79억	5회
합계	0.69억	17개국	2.57억	14회

(2) 이민연락관 파견 및 이민당국간 직원 상호교류

국제회의 참석과 함께 법무부는 이민연락관 파견 등 이민당국간 직원 교류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각종 범죄 및 테러분자 등 국익위해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출발지 공항으로 국경개념을 확대하여 주요공항을 선정하여 이민연락관을 파견하는 사업에는 2010년 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이민연락관의 국익위해 외국인 적발 건수는 1,029건이다. 해외 이민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직원 상호교환 연수 사업도 2010년만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0.8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난 3년간 총 8개국과의 직원 상호교환 연수가 추진되었다.

〈표 V-91〉 이민연락관 파견 및 이민당국간 직원 상호교류 실적

	예산(원)	이민연락관의 국익위해 외국인 적발 건수	예산(원)	상호 교환연수 실시 국가
2008	비예산	380건	비예산	2개국(네덜란드, 미국)
2009	비예산	418건	비예산	2개국(미국, 홍콩)
2010	0.70억	231건(8월 기준)	0.80억	4개국(몽골, 미국, 네덜란드, 홍콩)
합계	0.70억	1,029건	0.80억	8개국

**(3) 개발도상국 이민당국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과의 이민분야 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개발도상국 이민당국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8년부터 총 0.9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 아시아 9개국 이민국 직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 사업은 2009년에 종료되었다.

**3) 귀화 필기시험 관리**

**가) 대규모 귀화 필기시험 실시**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시험장에서 국적필기시험 시행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심사 업무가 지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 3,000명씩 대규모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국적 심사기간을 단축하였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0년에는 0.35억 원이 투입되었다. 2009년에는 총 5회, 약 15,00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8월까지 4회 개최되어 약 10,920명이 응시하였다.

〈표 V-92〉 귀화 필기시험 실시

	예산(원)	횟수	인원
2008	없음	3회	해당 자료 없음
2009	비예산	5회	약 15,000여 명
2010	0.35억	4회('10. 8월 말 기준)	총 10,920명

**나) 귀화시험 문제출제 전문기관 위탁**

법무부는 국적취득 신청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국적업무 담당자가 시험 문제 출제 및 관리·감독까지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필기시험의 중요성에 걸맞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귀화 필기시험문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였다. 2009년과 2010년 2차년에 걸쳐 중앙다문화교육센

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문항 2,000씩을 개발하도록 용역 의뢰하였다. 이 사업에는 총 1.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다. 성과 분석

국경·국적관리 사업군의 성과지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이용률과 비합법체류자 단속이 실질적인 비합법체류자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보기 위한 불법체류율로 선정하였다.

〈표 V-93〉 국경·국적관리 사업군 성과지표

사업내용	예산(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불법체류 감소 •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등	5.6억	불법체류율	외국인 비합법체류자수/외국인 체류자 총수*100
<input type="checkbox"/> 초국가적 범죄 대응 • 정보시스템 구축 • 국제협력	84.74억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이용률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이용건수/전체 출입국 심사건수*100
<input type="checkbox"/> 귀화 필기시험 관리 • 대규모 귀화필기시험 실시 • 귀화시험 문제출제 전문기관 위탁	1.39억		

#### 1) 외국인 불법체류율

지난 3년간 외국인 비합법체류자수를 보면, 2008년 200,489명에서 2010년 168,51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158,866명에서 2010년 1,261,415명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율 또한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17.3%에서 2010년 13.4%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의 성과목표인 2009년의 16.8%와 2010년의 170,000명을 초과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국인 비합법체류자의 인권침해를 둘러싼 논란의 소

지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외국인 비합법체류자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으로 강제퇴거의 대상됨에 따라, 이들은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에 있어서 가족결합권 침해, 장기화된 구금,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금지와 보상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의 문제(김병록, 2010)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V-94〉 외국인 불법체류율

	외국인 비합법체류자수	외국인 체류자 총수	외국인 불법체류율	정부 성과목표
2008	200,489명	1,158,866명	17.3%	
2009	177,955명	1,168,477명	15.2%	16.8%
2010	168,515명	1,261,415명	13.4%	170,000명

출처: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114쪽.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0년 12월호. 8-9쪽

## 2)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이용율

정부는 2008년 5월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 6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을 보면, 2008년 4.4%, 2009년 9.5%, 2010년 10.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율은 정부의 성과목표를 상회하는 것이다.

〈표 V-95〉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이용율

	예산(원)	이용률 실적	정부 성과목표
2008	59.00억	4.4%	-
2009	비예산	9.5%	6.5%
2010	비예산	10.3%*	10.0%

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자동출입국심사이용건수/전체 국민출입국건수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 7. 소결

6개 사업군별 성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인력유치 사업 중 전문기술 인력 유치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사업 등을 통한 해외 인재 유치와 우수기술인력 고용지원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기술인력 도입으로 생산성이 25% 가량 향상되고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건수가 한해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해외 기능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안전 사업에 대한 2010년 정부예산이 2008년 대비 168% 증가했으나, 산업 재해율은 오히려 0.05%p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간의 산업재해율 격차는 0.07%p 더 커지는 등 부진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보건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보건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용 보건관리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체류기간 1~2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70% 가까이가 한국어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았을 정도로 한국어교육 지원 서비스 혜택이 고르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도 83.3%에 달했다. 체류기간 1~2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은 수혜율(50.3%)과 도움 된다는 비율(63.9%)이 한국어 교육보다 낮지만, 한국어 교육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성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0년 결혼이민자 이용율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대비 21.2%로, 2008년보다 2.6%p 증가하여 수혜폭이 더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은 대체로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율 및 도움 정도와 단위사업인 언어발달 지원사업 성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방문교육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수혜율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12세 미만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사업 수혜자는 2008년 11,500가정에서 2010년 9,613가정으로 매년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지도사 인건비 등으로 5개월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1가구당 1개월에 24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고비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2% 수준으로 한국문화이해 교육과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복지 요구 중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양과 질 모두 만족스럽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언어발달이 부진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언어발달 교육을 받은 후 언어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괄적인 형태의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 가정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지원하는 서비스 중 아동양육과 관련한 서비스는 50~65%수준에 불과하고, 아동양육서비스 지침 및 공식 교재가 부재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고 아동양육지도사의 전문성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교육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초·중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이수율이 2010년에 0.37%로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연수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을 교원연수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현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연수를 16개 시도교육연수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확대하여 직무연수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모든 교육대학과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사범대학교 전수에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최소한 이제부터 교직에 입문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등교사의 경우도 국립 사범대학에서의 다문화교육 강좌개설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진 교사가 많아지고, 사립대학으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이 많이 반영됨으로써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업은 2010년 들어 TV 등의 언론매체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출빈도가 많아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체류 또는 정주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편의 제공 사업은 지난 3년간 3자 통역서비스가 5배 증가하고, 온라인 민원처리 또한 2.4배 증가하는 등 국내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국적취득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및 중국동포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불만족한다는 반응보다 월등히 높아 국내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 사업이 일정 정도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된 국적취득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2/3 수준에 달하는데 비해 일시 체류자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및 중국동포 등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편의 제공 사업이 개발·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인권보호사업의 성과 파악을 위해 피해 이주여성 상담실적과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 난민인정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다. 피해 이주

여성 상담실적(2009년 43,454건, 2010년 54,194건)을 보면 정부의 목표치(2009년 21,900건, 2010년 45,000건)를 매년 월등히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 또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정부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반면, 2010년에는 성과목표치의 절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의 성과 목표 대비 추진 실적간의 차이와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가 합리적 설정 근거나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실적이 성과목표 대비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체불임금은 물론 의료 구호에 이르기 까지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에서 지난 3년간 주력해 온 피해 이주여성 구제사업 추진으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이 전국 6개소에 지역 센터가 확대·설립되고, 이주여성 보호시설 또한 18개소가 설치되는 등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난민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율을 보면, 지난 3년간 난민 인정율은 8.4%로 2007년 대비 0.8%p 증가에 그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난민과가 신설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향후 난민인정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제도와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모든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신청 등 난민 인정절차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난민 인정자에 대한 숙식, 생계비, 직업교육 등 특화 서비스 및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경 및 국적관리 사업은 외국인 불법체류율이 2008년 17.3%에서 2010년 13.4%로 감소하고,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이용율이 2008년 4.4%에서 2010년 10.3%로 증가하는 등 체류질서 확립 및 국경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 이면에는 국경 및 국적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제 퇴거 시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절차와 설계

### 가. 조사대상자 선정 및 특징

델파이 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다문화 및 이민정책’ 관련 연구실적 및 저서 활동이 있는 전문가의 목록을 만들었다. 전문가 목록에는 연구자 집단만이 포함되었다. 전문가의 범주에는 연구자 뿐 아니라 담당부처 공무원, NGO 등 다양한 부문의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집단이 패널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목록을 만들기 위해 ‘이민’, ‘이주’, ‘다문화’를 키워드로 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에서 논문 및 저서를 검색하였고, 검색된 전문가들과 연구실적 결과물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60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1차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25명이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23명이 응답을 했다. 응답자의 전공은 사회학(8명)이 가장 많고, 정치 및 행정학(4명), 인류학(3명), 사회복지학(2명), 교육학(2명), 그리고 경제학, 법학, 심리학, 아동복지학이 각각 1명이었고, 기타(2명)이다. 다문화 및 이민정책 관련 연구 기간은 3~21년으로 평균 7.5년이다. 다문화 및 이민정책 관련 세부 연구 분야는 ‘다문화정책 및 사회통합정책’ 13명, ‘결혼이주 및 다문화가족’ 8명, ‘이민정책’ 2명, 소수자연구 2명, 이주노동 1명이다.

### 나. 조사 내용과 설계

조사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었다. 자원배분 평가는 적절성과 성과로 구분했다. 적절성 평가는 IV장에서 분석한 다문화사회 정책 6개 사업군과 22개 세부사업군 예산의 비중을 제시한 후 비중의 적절

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평정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비중은 얼마인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성과 평가는 6개 사업군에 대해 가장 성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군과 낮다고 생각하는 사업군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6개 사업군별로 재정투입 대비 현재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방형으로 답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다문화사회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했고, 주요 정책 대상별(전문기술인력, 유학생, 기능인력, 재외동포, 결혼이민자와 가족, 불법체류자, 탈북자, 난민, 내국인, 기타)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질문했다. 전문가들의 응답을 돕기 위해 사업군의 정의와 분류기준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2차 조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성과 평가와 적절한 예산 비중, 그리고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있었다. 1차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여 전문가들간의 간접적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성과 평가는 1차 조사에서 제기되었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응답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각 사업군의 성과와 문제점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측정의 척도는 '+5점~-5점'으로 구성하였고, 성과가 크다면 양의 방향으로, 문제점이 더 크다면 음의 방향으로 해당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응답하도록 했다. 다문화사회 정책 재원의 적정 비중은 1차 조사 결과를 평균값으로 제시한 후 다시 적정 비중을 응답하도록 했다.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 방향은 1차에서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들을 분류하여 정책 유형을 5가지(① 대상별 특화 정책, ②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③ 내국인 다문화 의식 증진, ④ 노동권, ⑤ 사회권)로 구분하고, 여기에 정치권을 포함하여 정책방향을 1:1로 짝지어 중요성을 쌍별로 비교하여 답하도록 했다. 정책 방향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과정)<sup>18)</su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18) AHP는 다수의 구성요소 혹은 평가요소들이 상호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각 요인들을 쌍대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AHP는 의사결정 요소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 효과

〈표 Ⅵ-1〉 델파이 조사 내용

	조사내용		측정	
	항목	세부항목		
1차 조사	I.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에 대한 평가	1.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6개 사업군, 21개 세부사업군)	예산 비중의 적절성	5점척도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	개방형
			적절 예산 비중	개방형
		2. 자원배분의 성과 평가	6개 사업군 중 성과가 가장 높은 사업군과 낮은 사업군	폐쇄형과 개방형
			6개 사업군별 재정투입 대비 현재까지의 성과와 문제점	개방형
			3. 총괄평가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 관련 총괄적 의견
	II. 다문화사회 정책의 향후 방향	1. 개괄적 방향		개방형
2. 주요 정책 대상별 정책과제		주요대상별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개방형	
2차 조사	I.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 결과 평가 및 적정 비중 추계	1.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 배분 결과 평가	6개 사업군별 성과평가(1차 조사 1-2 응답결과 제시 후 최종 판단)	5점척도
			판단의 이유	개방형
		2. 다문화사회 정책 재원의 적정비중 추계(6개 사업군, 21개 세부사업군)	적정비중(1차 조사 1-3에 대한 응답결과 제시 후 최종 판단)	개방형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 이유	개방형
	II.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1. 6개 정책 방향의 우선 순위	6개 정책 방향 1:1비교	5점척도
		2. 정주 관련 주요 논의에 대한 동의	동의정도	5점척도
			이유	개방형

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HP 방법은 복잡한 평가 기준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게 하며, 쌍대비교 행렬의 통합과정에서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도출하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및 적정 비중

### 가. 6개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적절성과 적정 비중

#### 1) 자원배분의 적절성

6개 사업군별 예산비중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해외인력유치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경우는 현재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평가가,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의 경우는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은 낮다는 응답이 다소 높지만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경·국적관리 사업군의 경우는 적정하다가 우세하다.

〈표 VI-2〉 6개 사업군 예산비중의 적절성 평가

사업군	해외인력유치		다문화가족 지원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		국경·국적관리	
	N	%	N	%	N	%	N	%	N	%	N	%
예산비중 (%)	39.9		42.9		2.9		6.8		4.3		3.2	
응답	N	%	N	%	N	%	N	%	N	%	N	%
너무 높다	3	12.0	4	16.0	-	-	-	-	-	-	-	-
높다	12	48.0	13	52.0	-	-	-	-	-	-	-	-
적정	10	40.0	6	24.0	-	-	10	40.0	7	28.0	16	64.0
낮다	-	-	2	8.0	8	32.0	15	60.0	13	52.0	7	28.0
너무 낮다	-	-	-	-	17	68.0	-	-	5	20.0	2	8.0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현재 예산 비중이 높다는 평가 이유로 국가 발전을 위한 인력의 활용은 우선적으로 내국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예산규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전체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이 제시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경우는 다른 외국인 집단에 비해 예산 배분이 ‘편파적’일 정도로 높다는 점, 부처별 중복 등의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 소극적 복지의 수혜적 지원인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족의 의존성을 높인다는 점, 별도의 분리된 지원 방식이 국내인과의 분리를 지속시키므로 전체 취약층에 대한 지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소수의견으로 예산 비중이 낮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향후 다문화가족의 증가 및 자녀들의 취학인원 증가를 고려하면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의 예산 비중이 낮다는 평가의 이유는 인종차별주의의 태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범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응답 이유로 제시되었다.

체류·정주자의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의 예산비중이 낮다고 평가한 이유는 정착과 정주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자립성을 강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다양한 외국인 집단의 생활편의 제공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의 예산비중은 첫째, 체류 및 정주 외국인의 증가 및 구성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인권보호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둘째, 인권보호는 내국인의 다문화 감수성 증대와 같이 갈 것이므로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과 더불어 더 많은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예산이 낮다는 이유에서 현재의 재정 비중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의 예산비중은 걱정하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36%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외국인 인권보호는 궁극적으로 국경 및 국적 관리의 체계화와 선진화를 통해 가능한데 현재와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국경단속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높다는 점, 불법체류 감소 노력 및 국적 관리의 인력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이 낮다고 평가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표 VI-3〉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부적절 이유

해외인력 유치	높은 이유	1. 국내인력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다. 2.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 3. 예산액 자체는 높지 않으나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이 높다.
다문화 가족지원	높은 이유	1. 다양한 외국인 집단 대비 예산 배분이 '편파적'일 정도로 높다. 2. 부처별 중복 등의 예산 낭비가 크다. 3. 소극적 복지의 수혜적 지원인 경우 많아 다문화가족의 의존성 높이고, 별도의 분리된 지원은 국내인과의 분리를 지속시키므로 전체 취약층에 대한 지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예산액 자체는 오히려 부족하지만 비중은 높다.
	낮은 이유	1.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의 증가 및 자녀들의 취학 인원 증가를 감안하면 낮다.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낮은 이유	1. 다문화사회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내국인의 다문화 이해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되어 있다. 2. 제노포비아, 인종차별주의 예방을 위해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확대, 미디어 등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4. 다문화사회 정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로 예산 비중도 가장 높아야 한다.
체류· 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낮은 이유	1. 결혼이민자 외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 서비스가 부족하다. 2. 정착과 정주에 필요한 환경(주거, 교육, 정보, 의료, 행정적 서비스 /의사 소통 지원 및 민원 처리 서비스 등 공공기관 서비스 확충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자립성을 강화시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체류 및 정주 외국인 규모를 고려하면 예산비중이 적다.
외국인 인권보호	낮은 이유	1. 체류 및 정주 외국인의 수 및 구성의 다양성 증가 추세에 따라 인권보호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2. 인권보호는 내국인의 다문화 감수성 증대와 같이 갈 것이므로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과 더불어 더 많은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한다. 3.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예산이 낮다.
국경· 국적 관리	낮은 이유	1. 외국인 인권보호는 궁극적으로 국경 및 국적 관리의 체계화와 선진화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국경단속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높다. 2. 불법체류 감소 노력 및 국적 관리의 인력 보완이 더 필요하다. 3. 국경 관리와 국적 부여 업무를 한 데 묶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 국경 관리는 이민정책으로 가야 한다.

## 2) 적정 예산 비중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적정예산 비중은 27.0%로,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 비중보다 12.9%p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적정예산 비중은 33.1%로 현행 예산비중보다 9.8%p 하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계수<sup>19)</sup>가 가장 적어서 적정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극단치 값을 제시한 소수의견에서는 평균보다 12%p 정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13%p 정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자의 입장은 지난 3년 간 투입된 예산액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하향조정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까지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반면, 더 많은 하향조정을 주장한 입장은 분리 지원은 특별히 비취질 수 있으며, 국내 취약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였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의 적정예산 비중은 14.1%로 현행 예산 비중보다 5배 가까이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의 적정예산 비중은 10.0%로 현행 예산 비중보다 약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의 적정예산 비중은 8.9%로 현행 3년 예산 비중의 2배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의 적정예산 비중은 6.8%로 6개 사업군 중 가장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변이계수가 커서 내부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소수의 전문가들은 예산 비중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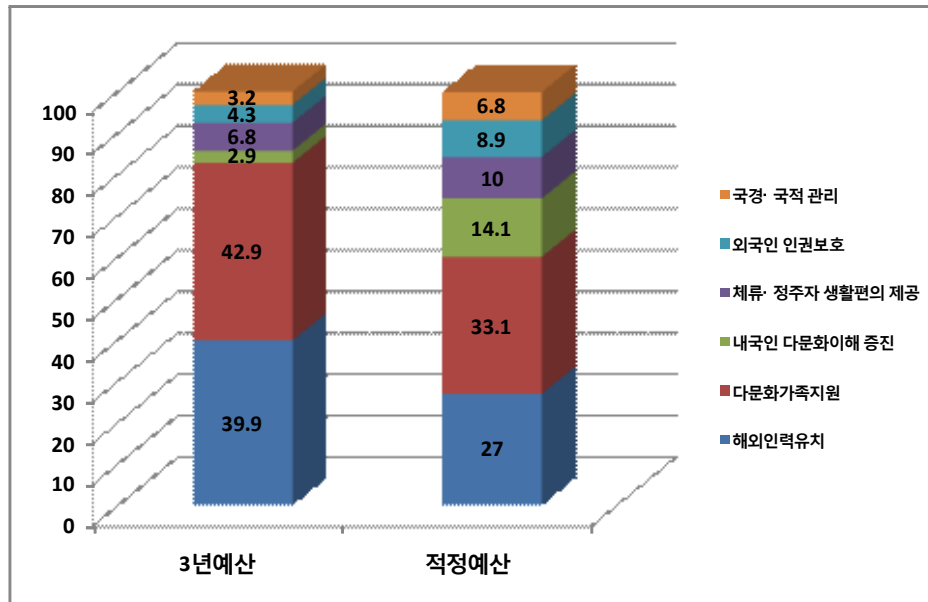
19) 변이계수는 적정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심의견(평균)이 동일성을 확보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변이계수가 적을수록 중심의견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견해가 밀집되어 있어 합의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분위 범위를 벗어난 응답치의 범위는 소수의견의 내용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표 VI-4〉 사업군별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단위: %, 명)

사업군	3년 예산 비중	적정예산비중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치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차 결과 사분위 범위	응답자 수	응답 범위
해외인력유치	39.9	27.0	6.9	25.6	20.0~37.0	2	15.0
다문화가족지원	42.9	33.1	5.0	15.1	30.0~37.0	6	20.0~45.0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2.9	14.1	5.0	35.5	6.9~20.0	1	25.0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6.8	10.0	2.4	24.0	6.0~10.8	4	11.8~15.0
외국인 인권보호	4.3	8.9	3.0	33.7	5.0~12.0	3	4.30~15.0
국경·국적 관리	3.2	6.8	3.7	54.4	3.2~10.0	2	3.0~20.0

(단위: %)



[그림 VI-1] 사업군별 적정 예산 비중

## 나. 해외인력유치

### 1) 자원배분의 적절성

해외인력유치 세부사업군별로는 전문기술인력·투자가 유치, 기능인력 도입 사업의 예산 비중은 낮고, 유학생 유치 사업의 예산 비중은 높다고 평가되었다. 전문기술인력·투자자 유치의 예산 비중이 낮다고 평가된 주요 이유는 전문인력 유치가 국가경쟁력 증진과 연관되므로 현행 수준보다는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학생 유치 사업의 경우는 유학생의 양적 규모만 증가했을 뿐 유학생 관리, 교육 이후 한국에 환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한 점, 유입된 유학생의 질적 수준이 의심스럽고 특정 국가에 치우쳐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치 전략이 전개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 유학생 유치는 기본적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따른 교육시장의 기능이므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응답 이유로 제시되었다. 소수의 전문가들은 유학생이 장기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며, 해외에서 인력을 유치하는 데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우수한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해외인력유치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의 예산 비중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기능인력 도입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지만, 낮은 편이라는 응답도 36%로 나타났다. 낮다고 평가된 이유로는 중소기업 산업 부문의 인력부족이 여전하다는 점, 인력부족 해소의 중장기 대책으로 단순기능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단순기능인력들의 노동조건, 생활환경, 인권보호 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VI-5〉 해외인력유치 예산의 적절성

(단위: 명, %)

	전문기술인력·투자자 유치		유학생 유치		기능인력 도입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너무 높다	-	-	6	24.0	-	-
높다	1	4.0	12	48.0	2	8.0
적정	10	40.0	5	20.0	14	56.0
낮다	13	52.0	2	8.0	7	28.0
너무 낮다	1	4.0	-	-	2	8.0

〈표 VI-6〉 해외인력유치 세부사업군별 자원배분 부적절 이유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자 유치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인력 유치는 국가경쟁력 증진과 연관되므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li> <li>2. 비자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전문인력이 필요한 자리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수요공급 매개체가 필요하다.</li> <li>3. 전문 기술인력 유치 성과가 약한 것이 예산 부족 때문은 아니겠지만 유치에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적극 늘려야 한다.</li> </ol>
유학생 유치	높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학생 유치의 양적 규모만 증가했을 뿐 유학생 관리 및 교육 이후 한국에 환원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은 매우 부족하다.</li> <li>2. 유입된 유학생의 질적 수준이 의심스럽고 특정 국가에 치우친 문제가 있다.</li> <li>3. 유학생 유치는 기본적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따른 교육시장의 기능이므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li> </ol>
	낮은 이유 (소수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학생 중 상당수가 정주하므로 유학생 유치가 해외인력유치의 효율적 방법이므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li> <li>2. 유학생은 장기적으로 친한파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제교류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li> </ol>
기능인력 도입	높은 이유 (소수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능인력은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려는 동기가 강하므로 합리적 송출제도를 운영하면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임. 추가적 투자노력은 불필요.</li> </ol>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 산업부문 인력지원 확대 필요.</li> <li>2. 인력 도입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전교육을 늘려야 한다.</li> <li>3.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기능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li> <li>4. 현재 한국의 3D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 사업장의 기능인력이라고 볼 때 이들에 대한 고충상담, 인권보호, 안전 및 보건교육 등이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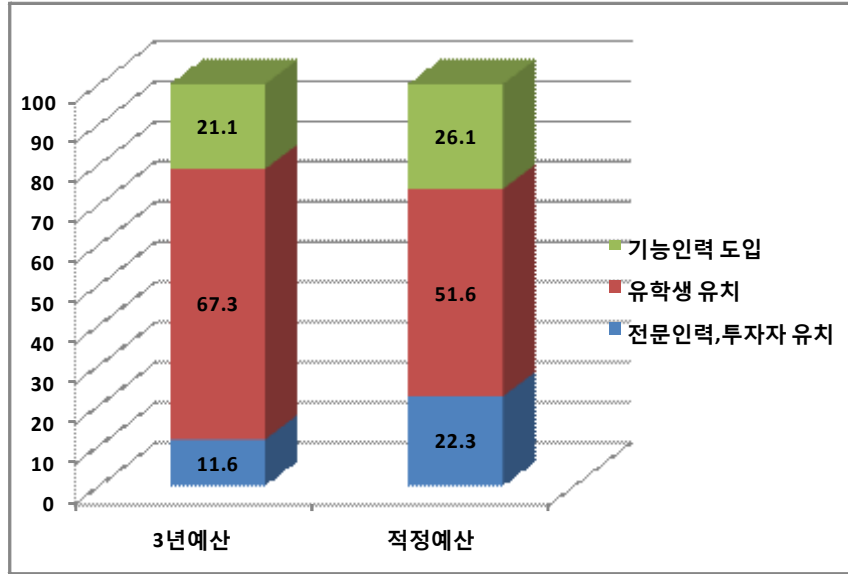
## 2) 적정 비중

유학생 유치 사업의 적정예산 비중이 51.6%로 가장 높고, 기능인력 도입과 전문인력 및 투자자 유치 사업이 각각 26.1%, 22.3% 순으로 제시되었다. 지난 3년간 투입한 예산 비중과 비교하면, 유학생 유치 사업의 예산 비중은 15.7%p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전문인력 및 투자자 유치 사업의 예산 비중은 10.7%p, 기능인력 도입 사업의 예산 비중은 5.0%p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변이계수의 수치가 낮게 나타나 합의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업에서 특히 유학생 유치의 예산 비중이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능인력 도입과 전문인력 및 투자자 유치에서도 의견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견으로는 전문인력 투자자 유치와 유학생 유치 사업군의 경우 평균보다 약 10%p 이상 낮은 수치와 7%p 이상 높은 수치가 극단치로 제시된 반면, 기능인력 도입에 대한 소수 의견은 평균보다 더 높은 예산비중을 제시하였다.

〈표 Ⅵ-7〉 해외인력유치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단위: %, 명)

사업군	3년 예산 비중	적정예산비중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치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차 결과 사분위 범위	응답수	응답 범위
전문인력, 투자자 유치	11.6	22.3	5.2	23.3	20.0~25.0	7	11.6~30.0
유학생 유치	67.3	51.6	8.3	16.1	50.0~60.0	8	40.0~67.3
기능인력 도입	21.1	26.1	6.2	23.8	20.0~30.0	3	35.0~40.0

(단위: %)



[그림 VI-2] 해외인력유치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다. 다문화가족 지원

### 1) 자원배분의 적절성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사업의 예산 비중은 낮다고 평가되었으며,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예산 비중은 높다고 평가되었다. 예산 비중이 낮다고 평가된 사업유형은 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다. 결혼이민 전에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초기 개입과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이 응답 이유로 제시되었다. 반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투입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내 보육정책과의 중복 및 국내 저소득층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미취학 자녀



들이 취학아동으로 성장함에 따른 예산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비중이 높다고 평가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예산 비중 역시 높다고 평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단체 및 민간기업 등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의 접근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표 Ⅶ-8〉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자원배분 적절성 평가

(단위: 명, %)

	국제결혼 피해예방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지원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너무 높다	-	-	-	-	4	16.0	-	-	1	4.0
높다	-	-	1	4.0	13	52.0	-	-	8	32.0
적정	5	20.0	10	40.0	7	28.0	4	16.0	10	40.0
낮다	12	48.0	11	44.0	-	-	19	76.0	5	20.0
너무 낮다	8	32.0	2	8.0	-	-	2	8.0	-	-

〈표 Ⅶ-9〉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자원배분 부적절 이유

국제결혼 피해 예방	낮은 이유	1. 문제가 발생한 후에 교정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잘못된 정보제공, 인신매매화된 국제결혼, 사기결혼 등을 사전에 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3. 결혼이민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의 현지 심사 강화 및 실질적 사전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며, 입국 후 혼인실태조사도 강화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높은 이유 (소수의견)	1. 부처간 사업중복성 감소를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낮은 이유	1. 정착지원이 기능적으로만 편성, 자존감을 높이고 인성·인격 교양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정착지원은 가장 기본적 사항이며, 초기 개입과 지원이 효과적임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예산비중이 낮다.</li> <li>3. 결혼이민자의 능력 개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 보완이 강화되어야 한다.</li> </ol>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높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내국인 자녀들과 분리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보육정책 지원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li> <li>2. 현재의 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적응력이 떨어지고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외적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을 유아기부터 분리하여 지도·지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li> <li>3. 방문도우미나 보육서비스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서비스이다.</li> <li>4.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 소득별로 지원해야 한다.</li> <li>5.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이 대부분 낮아 미취학 아동양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점차 취학아동으로 성장함에 따라 비중 조정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자녀교육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li> </ol>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생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문제의 난이도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지원을 증가해야 한다.</li> <li>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가해야 한다.</li> <li>3.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분리지원보다 통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li> <li>4. 다문화청소년의 범위를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문제적. 이미 성장하여 한국에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의 문제도 심각하므로 다문화청소년 범위를 넓힌 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li> </ol>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높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능한 자원단체를 활용하고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야 한다.</li> <li>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다.</li> <li>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접근성 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줄이고,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li> </ol>
	낮은 이유 (소수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이 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충 및 스태프들의 역량 강화 등에 재원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li> <li>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정책 추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센터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에 예산을 증가해야 한다.</li> </ol>

## 2) 적정 비중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의 예산 비중을 대폭 낮추고 다른 사업의 예산 비중은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상향 폭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비중이 44.9%로 가장 높고 다른 사업 유형들은 10%대로 제시되어, 적정예산 비중 역시 현재의 재정배분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적정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세부사업에서 결혼이민 피해 예방과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은 변이계수가 높아 합의수준이 낮다. 특히, 국제결혼 피해예방 사업의 변이계수가 80.0으로 중심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크다. 사분위 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한 전문가들은 평균보다 최대 19%p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므로 사전 예방에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의 재정투입 규모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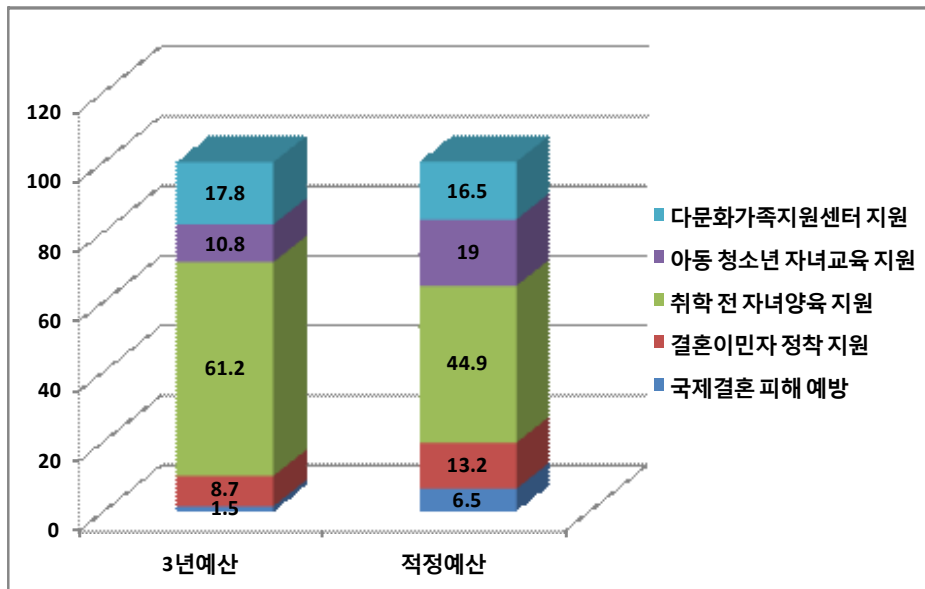
한편,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소수의 전문가들이 평균인 중심의견보다 월등히 높은 예산비중을 제시하였는데,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문제가 국가나 공적영역이 개입해서 중재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착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은 변이계수가 낮아서, 현행보다 예산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극단치를 제시한 소수의견의 분포가 15.0~61.2로 매우 커서 예산 비중의 증감에 대해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은 현재와 같은 지원시스템은 다문화가족 부모의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역으로 부모의 역량 강화를 우선한다면 가족 전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입장에서 사회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국내 취약층의 자녀양육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분리지원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예산 비중을 3년 예산 비중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비중의 조정이 예산액수의 증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사업규모의 축소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표 VI-10〉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적정 비중 및 동일성 판단  
(단위: %, 명)

사업군	3년 예산비중	적정예산비중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치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차 결과 사분위 범위	응답자수	응답범위
국제결혼 피해 예방	1.5	6.5	5.2	80.0	3.2~5.0	6	1.5~25.0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8.7	13.2	5.1	38.6	8.7~15.0	2	25.0~30.0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61.2	44.9	9.9	22.0	40.0~55.2	5	15.0~61.2
아동 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10.8	19.0	3.5	18.4	15.0~20.0	3	10.8~28.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7.8	16.5	3.6	21.8	10.0~20.0	-	-

(단위: %)



[그림 VI-3]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라.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 1) 자원배분의 적절성

유치원·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사회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예산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홍보 및 행사 예산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체 예산의 압도적 비중이 홍보 및 행사에 치중된 문제, 그로 인해 전체 다문화사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뿐 아니라 한국인의 다문화성 함양, 국가경쟁력과 개방성 고취, 인종차별 금지 등을 체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대학교, 그리고 일반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표 Ⅵ-11〉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단위: 명, %)

	유치원·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사회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홍보 및 행사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너무 높다	-	-	-	-	17	68.0
높다	-	-	-	-	7	28.0
적정	4	16.0	3	12.0	1	4.0
낮다	10	40.0	11	44.0	-	-
너무 낮다	11	44.0	11	44.0	-	-

〈표 VI-12〉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자원배분 부적절 이유

유치원·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 뿐 아니라 한국인의 다문화성 함양, 국가경쟁력, 개방성 고취, 인종차별 금지 등을 제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i> <li>2. 소수자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li> <li>3. 현재 다문화사회 정책이 일방적 지원 정책의 틀을 벗어나서 다문화사회를 예비하는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li> </ol>
사회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다문화교육을 제공하여 친다문화적 사회분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li> <li>2. 일반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단편적 행사나 홍보보다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li> <li>3. 대학에서 다문화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유도, 시민사회를 통한 비교문화 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확산해야 한다.</li> <li>4. 현재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나 만드는 것 못지 않게 보급도 중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li> </ol>
홍보 및 행사	높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회적, 단편적 사업보다는 다문화교육에 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li> <li>2.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li> <li>3. 소모적, 전시행정적, 과다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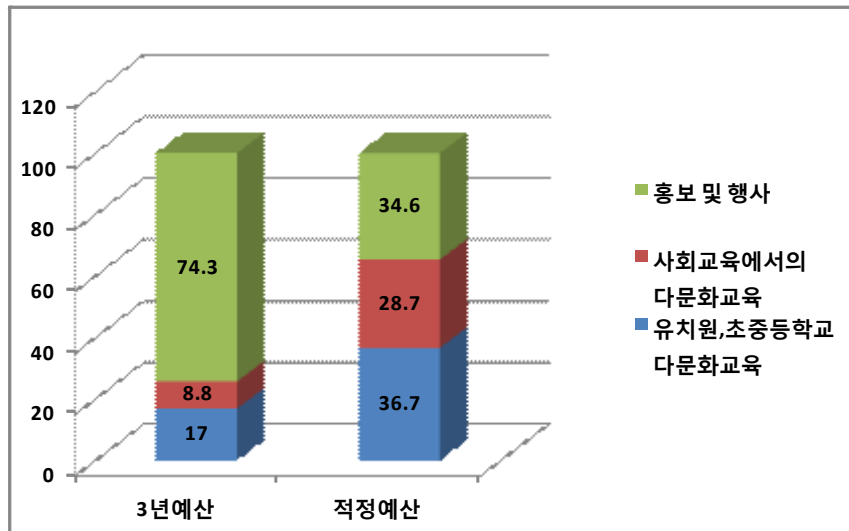
## 2) 적정 비중

전문가들은 홍보 및 행사의 예산 비중을 대폭 낮추고 유치원·초중등학교 및 사회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예산 비중을 높여, 각각 34.6%, 36.7%, 28.7%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변이계수도 크지 않으며, 사분위 범위를 벗어난 응답치의 경우도 유치원·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평균보다 예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 및 행사는 평균보다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의 합의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VI-1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단위: %, 명)

사업군	3년 예산비중	적정예산비중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치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차 결과 사분위 범위	응답수	응답 범위
유치원·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	17.0	36.7	7.4	20.2	23.0~40.0	4	20.0~54.3
사회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8.8	28.7	6.2	21.6	17.0~30.0	2	28.8~45.0
홍보 및 행사	74.3	34.6	10.1	29.2	30.0~59.2	2	10.0~17.0

(단위: %)



[그림 VI-4]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마.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 1) 자원배분의 적절성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과 문화·여가·복지환경 개선 사업은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언어, 정보, 민원 서비스의 경우, 가장 기본적 서비스로서 절대 액수는 부족하지만 사업군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높다는 지적이 40%, 문화·여가·복지환경 개선은 이민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의 취약함을 고려하면 절대 액수도 낮고 비중도 낮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 문화·여가·복지는 오히려 이차적 과제이므로 이보다는 언어 지원 정책에 더 투자되어야 하며, 국내 문화 및 복지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 비중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다. 체류동포 처우개선은 이들의 특수성과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절대 액수도 부족하고 비중도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되었다.

〈표 VI-14〉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단위: 명, %)

	언어·정보·민원서비스		문화·여가·복지환경 개선		체류동포 처우개선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너무 높다	-	-	-	-	1	4.0
높다	10	40.0	4	16.0	1	4.0
적정	13	52.0	13	52.0	7	28.0
낮다	2	8.0	8	32.0	12	48.0
너무 낮다	-	-	-	-	4	16.0



〈표 Ⅵ-15〉 체류·정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별 자원배분 부적절 이유

언어·정보· 민원서비스	높은 이유	1. 기본적 서비스로서 절대 액수는 부족하지만 상대적 비중은 높다. 2. 중앙정부 부처간, 지역, 시민단체 등 중복된 서비스의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어 교육은 중복 가능성이 높다.
	낮은 이유 (소수의견)	1. 가장 근본적인 지원 영역이므로 더 강화해야 한다.
문화·여가· 복지환경 개선	높은 이유 (소수의견)	1. 문화, 여가, 복지는 오히려 이차적 과제이다. 우선적으로 언어문제 해결 정책에 투자되어야 한다. 2. 비중은 적절한 듯 하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진료나 공연 등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의 문화, 복지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낮은 이유	1. 이민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수요에 비해 절대 액수가 너무 낮고 비중도 낮다. 3. 체류, 정주자의 생활여건 개선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이민자, 외국인을 위한 복지환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류동포 처우개선	낮은 이유	1. 체류동포들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체류동포 밀집지역 처우개선, 체류 자격 및 사회적 지위 개선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동포의 특수성,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면 절대 액수도 너무 부족하며 비중도 너무 낮다.

## 2) 적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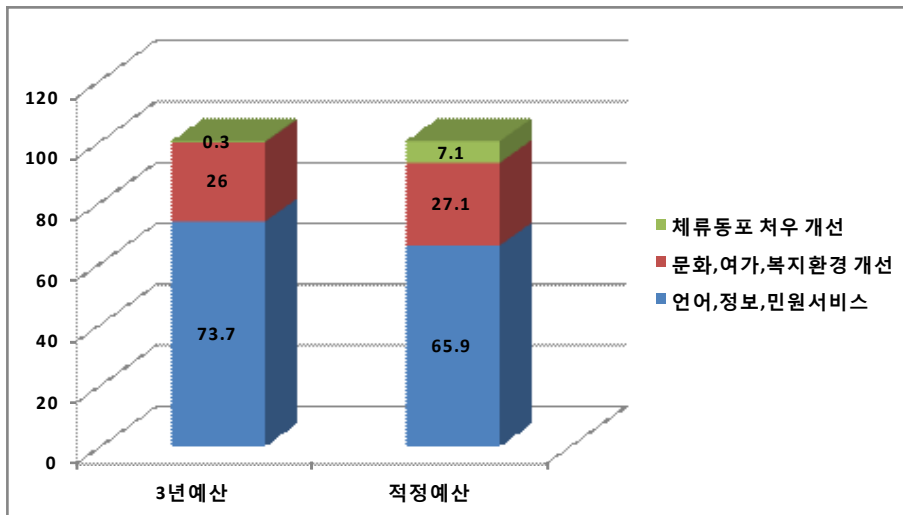
세부사업별로 적정예산 비중은 언어·정보·민원 서비스가 65.9%, 문화·여가·복지환경개선이 27.1%, 체류동포 처우개선이 7.1%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체류동포 처우개선은 변이계수가 111.3%로 나타나 평균값을 중심의견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 문화, 여가, 복지환경 개선 사업도 변이계수가 29.9이어서 합의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소수의견을 살펴보면,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사업의 경우는 극단치가 평균보다 25.9%p 낮은 값과 9.1%p 높은 값이 제시되었다. 비중을 훨씬 더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은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고,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응답이유로 제

시하였다. 문화·여가·복지 환경 개선 사업은 극단치가 중심의견보다 22.9%p 정도 높은 값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자의 문화 및 여가의 향유, 복지 수혜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여타의 생활편의 제공 사업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이유를 제시하였다.

〈표 VI-16〉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단위: %, 명)

사업군	3년 예산비중	적정예산비중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치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차 결과 사분위 범위	응답자수	응답 범위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73.7	65.9	9.8	14.9	67.7~73.7	8	40.0~75.0
문화·여가·복지환경 개선	26.0	27.1	8.1	29.9	22.0~30.0	7	20.0~50.0
체류동포 처우개선	0.3	7.1	7.9	111.3	0.3~10.3	1	40.0

(단위: %)



[그림 VI-5]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바. 외국인 인권보호

### 1) 자원배분의 적절성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사업이 차별시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제한되어 있는 점, 구제도 중요하지만 차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예산비중은 낮다고 평가되었다. 피해 이주여성 구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예산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다양한 이민자들의 인권보호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 피해 이주여성 구제를 외국인 정책으로 구별하기보다 가정폭력 피해 구제사업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 힘써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예산비중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보호외국인 인권보장은 지금처럼 보호시설 설치에 치중하기보다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비중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난민 인정·지원 사업은 한국의 국격에 맞는 난민 정책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예산 비중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표 Ⅶ-17〉 외국인 인권보호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단위: 명, %)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피해 이주여성 구제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난민 인정·지원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너무 높다	-	-	5	20.0	-	-	-	-
높다	-	-	15	60.0	-	-	1	4.0
적정	5	20.0	5	20.0	17	68.0	9	36.0
낮다	12	48.0	-	-	8	32.0	12	48.0
너무 낮다	8	32.0	-	-	-	-	3	12.0

〈표 VI-18〉 외국인 인권보호 세부사업군별 자원배분 부적절 이유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 차별시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사업이 제한되어 있는데, 법무부 차원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강화 논의도 보충되어야 한다.</li> <li>2.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함에도 이에 대한 방지 및 구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li> <li>3. 구제도 중요하지만 차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 대한 인권 및 다문화교육 강화와 같이 가야 한다.</li> </ol>
피해 이주여성 구제	높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예산이 과다하게 집중,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이민자들의 인권보호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li> <li>2. 피해 이주여성 구제를 특별히 외국인정책으로 구별하는 것에 회의적, 가정폭력 피해구제 사업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li> <li>3.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결혼이민 피해 예방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사전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li> <li>4. 결혼이주여성들이 여타 외국인 집단에 비해 공적개입이 어려운 사적영역에 방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절대 액수는 오히려 부족하지만, 인권보호의 다른 사업들에 비해 비중은 높다.</li> </ol>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 보호시설 설치에 치중하기보다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li> <li>2.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 최소한 국제사회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li> </ol>
난민 인정·지원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탈북자 외에도 난민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li> <li>2. 선진국 수준에 맞는 난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li> <li>3. 난민 심사 소요기간 단축,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난민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li> </ol>

## 2) 적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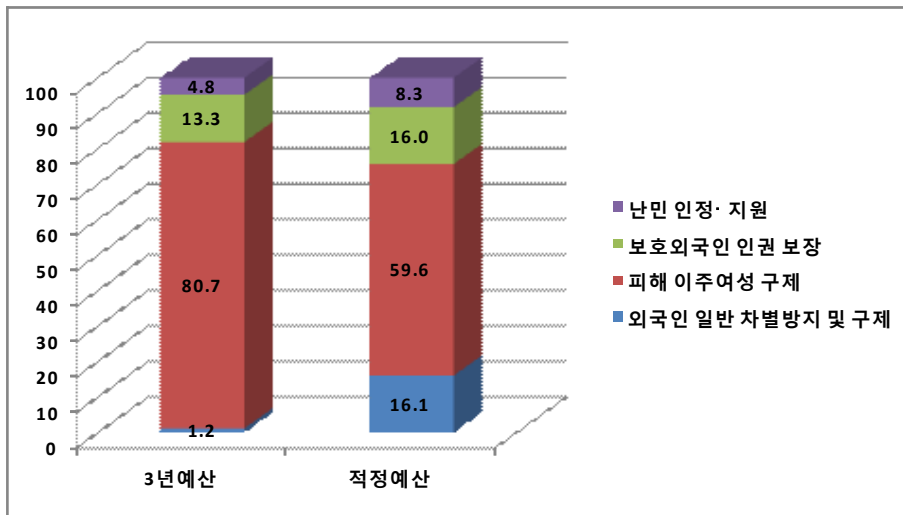
피해 이주여성 구제가 59.6%,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가 16.1%, 보호외국인 인권보장이 16.0%, 난민 인정 및 지원이 8.3%의 적정예산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난민 인정·지원은 변이계수 값이 커서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전문가들은 피해 이주여성 구제 사업의 예산 비중을 전체의 중심의견보다

훨씬 낮게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로 피해 이주여성만이 아니라 전체 여성문제 틀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표 Ⅵ-19〉 외국인 인권보호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단위: %, 명)

사업군	3년 예산비중	적정예산비중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치		
		평균	표준 편차	변이계 수	1차 결과 사분위 범위	응답자수	응답 범위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1.2	16.1	8.7	54.0	5.0~30.0	-	-
피해 이주여성 구제	80.7	59.6	11.2	18.7	50.0~78.9	3	40.0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13.3	16.0	2.2	14.0	13.3~20.0	-	-
난민 인정·지원	4.8	8.3	3.8	45.2	5.0~10.0	3	4.8~20.0

(단위 : %)



[그림 Ⅵ-6] 외국인 인권보장 세부사업군 적정예산 비중

## 사. 국경·국적관리

### 1) 자원배분의 적절성

불법체류 감소와 국적 관리는 예산 비중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였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은 비중이 적정하다는 평가와 높다는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일정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강제단속보다는 합리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러자면 강제단속에 치중된 재정투입 구조를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사업에 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지금의 예산 비중은 낮다고 평가되었다. 국적 관리 역시 다양한 유형의 국제 이주 증가 추세를 대비하여 선진적인 국적 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예산 비중은 낮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국경·국적 관리의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은 체류 외국인의 국내법 준수 의식 향상 등에 더 치중해야 하고, 이민 관련한 형식적 회의 개최 및 참여를 지양하고 국가간 인적 교류의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높다고 평가되었다.

〈표 VI-20〉 국경·국적관리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단위: 명, %)

	불법체류 감소		초국가적 범죄 대응		국적 관리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너무 높다	-	-	5	20.0	-	-
높다	1	4.0	9	36.0	-	-
적정	12	48.0	10	40.0	14	56.0
낮다	9	36.0	1	4.0	8	32.0
너무 낮다	3	12.0	-	-	3	12.0

〈표 VI-21〉 국경·국적관리 세부사업군별 자원배분 부적절 이유

불법체류 감소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많은 문제들이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발생하므로, 이를 감소시키는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단속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li> <li>2.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 규모는 일정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li> <li>3. 합리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방식의 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li> </ol>
초국가적 범죄 대응	높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대적으로 체류 외국인의 국내법 준수意識의 향상 등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li> <li>2. 이민 관련한 형식적 회의 개최 및 참여 지양, 국가간 이민 관련 기관의 인적 교류의 효과성도 검토되어야 한다.</li> <li>3. 이 사업군의 거의 모든 예산을 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li> </ol>
국적 관리	낮은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앞으로도 귀화자가 증가하고 다양한 종류의 국제이주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적인 국적 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li> <li>2. 국적 관리의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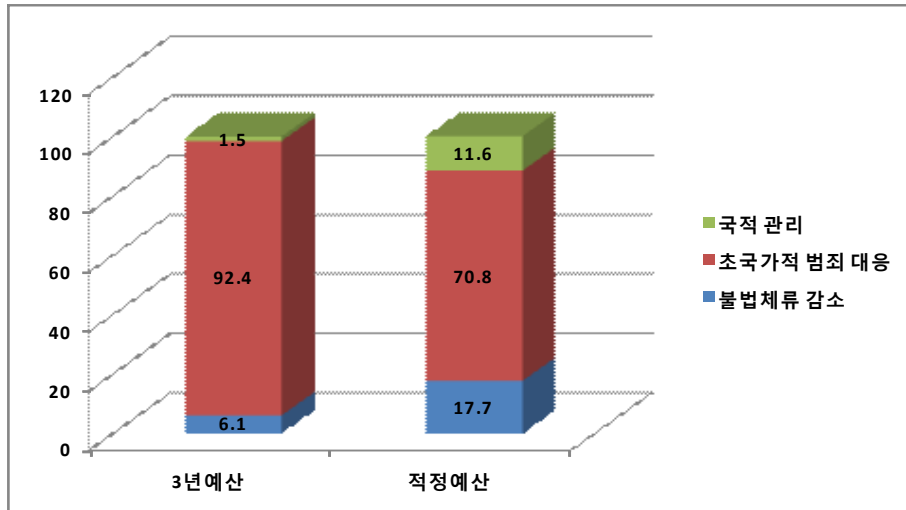
## 2) 적정 비중

세부사업별 적정예산 비중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이 70.8%, 불법체류 감소가 17.7%, 국적 관리가 11.6%로 구성되었다. 불법체류 감소와 국적관리 사업의 적정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큰데, 사분위 범위를 벗어난 응답치를 살펴보면 두 유형 모두 소수의 전문가들이 예산비중을 4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초국가적 범죄 대응은 소수의 전문가 의견이 40% 수준까지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소수의견의 의견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VI-22〉 국경·국적 관리 세부사업군 자원배분의 적정비중 및 동일성 판단  
(단위: %, 명)

사업군	3년 예산비중	적정예산비중			사분위 범위 벗어난 응답치		
		평균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차 결과 사분위 범위	응답자수	응답 범위
불법체류 감소	6.1	17.7	8.6	48.6	6.1~25.0	3	26.1~40.0
초국가적 범죄 대응	92.4	70.8	12.5	17.7	60.0~90.5	3	40.0~92.4
국적 관리	1.5	11.6	8.5	73.3	1.5~15.0	3	20.0~40.0

(단위: %)



[그림 VI-7] 국경·국적 관리 세부사업별 적정예산 비중

### 3. 재정지출의 성과

6개 사업군 재정지출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과와 문제점 어느 쪽이 얼마나 더 큰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경우 전문가들의 77.3%가 성과보다 문제점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고 각 평균값에서도 문제점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은 59.1%의 전문가들이 성과가 더 크다고 응답했으



며, 평균값에서도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59.1%의 전문가들이 문제가 더 크다고 응답했으며, 평균값도 문제점의 절대값이 더 컸다. 반면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은 성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이 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과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이 더 크다고 응답했을지라도 문제점의 점수는 낮게 부여하고, 소수의 전문가들이 성과가 더 크다고 응답했을지라도 성과의 점수를 높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성과 판단에서 응답률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과와 문제점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원행렬표를 작성하여 두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이를 가중치로 사용하였다<sup>20)</sup>.

가중치를 적용한 성과와 문제점의 크기를 살펴보면,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경우 성과는 0.60점인데 반해, 문제점은 1.42점으로 문제점이 성과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은 성과는 1.30점, 문제점은 0.72점으로 성과가 2배 가까이 크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성과는 0.90점, 문제점은 1.23점으로 문제점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

20) 예를 들어 전문가 1이 ‘해외인력유치는 문제점이 3만큼 크다’고 응답했을 경우, <표 16>과 같은 이원비교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원비교행렬 상의 각 셀 값을 열의 합계로 나누면 우선순위벡터가 산출된다. 이 과정을 전문가마다 반복하여 성과와 문제점의 가중치를 도출한 후 이 값들의 기하평균을 최종적인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주표 1> 전문가1의 ‘해외인력유치’ 성과 이원비교행렬 예시

No.1	성과	문제점
성과	1	1/3
문제점	3	1
열합계	4.000	1.333

<주표 2> 정규화된 입력행렬(우선순위벡터) 예시

	성과	문제점
성과	0.2500 (=1/4)	0.2500 (=0.333/1.333)
문제점	0.7500 (=3/4)	0.7500 (=1/1.333)
합계	1.0000	1.0000

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성과가 0.95점으로 문제점 0.61점보다 높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성과가 0.90점, 문제점이 1.25점으로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났고,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은 성과가 1.07점, 문제점이 1.03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I-23〉 다문화사회 정책 자원배분 성과 평가 및 크기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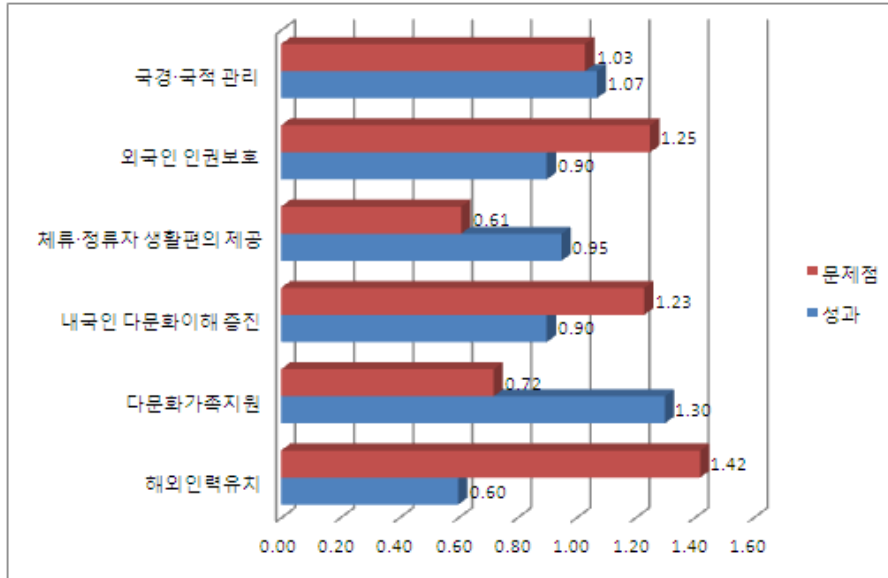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응답자수	백분율	평균(A)	가중치(B)	크기  (A*B)
1. 해외인력유치	성과가 크다	5	22.7	2.00	0.30	0.60
	문제가 크다	17	77.3	-2.41	0.59	1.42
2. 다문화가족지원	같다	1	4.5			
	성과가 크다	13	59.1	2.54	0.51	1.30
	문제가 크다	8	36.4	-2.00	0.36	0.72
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성과가 크다	9	40.9	2.44	0.37	0.90
	문제가 크다	13	59.1	-2.62	0.47	1.23
4. 체류·정주 생활편의 제공	같다	2	9.1			
	성과가 크다	9	40.9	2.11	0.45	0.95
	문제가 크다	11	50.0	-1.36	0.45	0.61
5. 외국인 인권보호	같다	2	9.1			
	성과가 크다	6	27.3	2.50	0.36	0.90
	문제가 크다	14	63.6	-2.50	0.50	1.25
6. 국경·국적 관리	같다	6	28.6			
	성과가 크다	5	23.8	2.60	0.41	1.07
	문제가 크다	10	47.6	-2.10	0.49	1.03

<주표 3> 응답자별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성과와 문제점 가중치 사례

	해외인력유치	
	성과	문제점
전문가 1	0.25	0.75
전문가 2	0.80	0.20
	⋮	
전문가 23	0.75	0.25
기하평균	0.31	0.59

(단위: 점)



[그림 Ⅵ-8]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 비교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에서는 유학생의 양적 증가, 기능인력 충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고급 두뇌의 유입 등이 성과로 지적된 반면, 기능인력 위주로 유치가 되고 고급인력 유치는 미흡한 점,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치중하 나머지 유학생의 질적 수준의 저하, 국내 체류 및 학업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 체계의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취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 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 점, ‘다문화’ 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점 등이 성과로 지적되었다. 반면,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중복성, 소극적 복지적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의존성을 강화하고 사회 부적응자라는 타자성을 부여한다는 점, 다문화사회 정책이 국제결혼가족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이주노동자 등 여타 이민자 집단이 배제되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에서는 ‘시작이 의미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과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으

로 사업 규모가 매우 미흡하고,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행사 및 홍보 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에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설치, 외국인의 언어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의 증가 등이 성과로 지적되었으나, 초기 한국어 교육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교통, 문화 관련 정보의 다국어 제공, 통역 서비스 등이 미흡한 점,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행정 서비스 개혁의 청사진이 없어 부처별, 지자체별 격차가 심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에서는 피해 이주여성 구제 체계를 구축한 점 등 시스템적인 성과가 크다고 제시된 반면,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노력이 부족한 점, 비합법체류자의 인권보장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에서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전산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국적 관리 등이 성과로 지적되었다. 반면, 비합법체류자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체계구축은 등한시하고 단속에만 치중하며, 지능적 위조에 의한 불법입국 대처에 미흡하고, 초국가적 범죄대응 사업내용이 고위급 회의, 연락관 파견 등에 쓰이고 있어 그 효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과도 크고 문제도 큰 사업군은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이며, 성과는 크고 문제점은 적은 사업군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 성과는 적고 문제점은 큰 사업군은 해외인력유치,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이며, 이중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경우는 다른 두 사업군보다 성과는 더 적고 문제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체류·정주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성과도 적고 문제점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Ⅵ-24〉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

사업군	재정투입 대비 현재까지의 성과	문제점
해외 인력 유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학생의 양적 증가</li> <li>2. 기능인력 충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li> <li>3. 고급 두뇌의 유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능인력 위주의 유치, 고급인력 유치 미흡</li> <li>2. 유학생의 체계적 선발과 관리의 미흡</li> <li>3. 해외인력유치의 장기 계획과 전략의 부재</li> </ol>
다문화 가족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취업의 제도적 지원</li> <li>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li> <li>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강화</li> <li>4. '다문화'의 정책 이슈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처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타기관 간의 프로그램 유사성과 중복성 등 효율성 문제</li> <li>2.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미흡</li> <li>3. 소극적 복지적 지원의 문제점</li> <li>4. 국제결혼가족 중심의 지원으로 이주노동자 등 여타 이민자 집단 배제</li> </ol>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거보다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li> <li>2. 유치원, 초등교육에 다문화교육 포함</li> <li>3.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으나 시작이 의미있는 수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사 및 홍보 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li> <li>2.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민자에 대한 온정적, 시혜적 태도 온존</li> <li>3. 사업규모가 매우 미흡하고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세계시민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 확대 필요)</li> </ol>
체류· 정주자 생활 편의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설치로 생활편의 개선</li> <li>2. 외국인에 대한 언어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의 증가</li> <li>3. 귀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 문화 관련 정보의 다국어 제공, 통역 서비스의 미흡</li> <li>2.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행정 서비스 개혁의 청사진이 없어 부처별, 지자체별 격차가 심함</li> <li>3. 이주민 미디어 등 이주민 스스로를 위한 문화 활동의 권리 보호 지원이 필요</li> </ol>
외국인 인권 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 이주여성 구제 체계 구축</li> <li>2. 언어폭력, 여권압류, 임금체불, 폭행 등을 인권 관점에서 보게 됨</li> <li>3. 시스템적인 성과가 크고, 과거보다는 인권의식이 향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노력이 부족, 보편적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li> <li>2. 비합법체류자 인권보장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li> <li>3. 비합법체류자, 난민 인권보장 미흡</li> </ol>
국경· 국적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전산정보 시스템 활용한 국적 관리</li> <li>2. 질서있는 이주정책의 정착 가능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합법체류자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체계구축은 등한시키고 단속에만 치중</li> <li>2. 지능적 위조에 의한 불법입국 대처 미흡. 입국자 생체정보 획득 등 전문적 대처방안 마련해야</li> <li>3. 초국가적 범죄대응 사업내용이 고위급 회의, 연락관 파견 등에 쓰이고 있어 그 효율성이 의심스러움</li> </ol>

#### 4. 향후 정책 방향

제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별 특화정책,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내국인 다문화 의식, 노동권, 사회권, 정치권 등 6가지 정책영역을 도출했고, 상대적 중요도를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표 VI-25〉 1차 조사에서 도출된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 방향

정책 유형	정의	정책과제 사례
대상별 특화 정책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난민, 유학생, 탈북자 등 주요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2세 자녀 지원</li> <li>•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고충처리</li> <li>• 난민의 국내적응 프로그램</li> <li>• 유학생 학사관리 및 체류환경 개선</li> <li>• 탈북청소년 지원</li> </ul>
인권침해·차별금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금지를 통한 인권보호 중심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차별금지법(가칭) 제정</li> <li>• 외국인 인권보호 및 법률 지원 강화</li> <li>•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습적 단속 완화</li> <li>• 외국인 인권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li> </ul>
내국인 다문화 의식	내국인 교육 및 홍보 등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중심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li> <li>• 보편적 인권 교육 강화</li> </ul>
노동권 보장	부당노동행위로부터의 적극적 보호,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및 직장 이전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고용주 교육 강화</li> <li>• 고용허가제의 노동허가제로의 개정</li> </ul>
사회권 확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내국인 대상 사회정책 급여에 대한 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 자격 부여</li> </ul>
정치권 보장*	사회적 소수자로서 귀화자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치 참여 권리 부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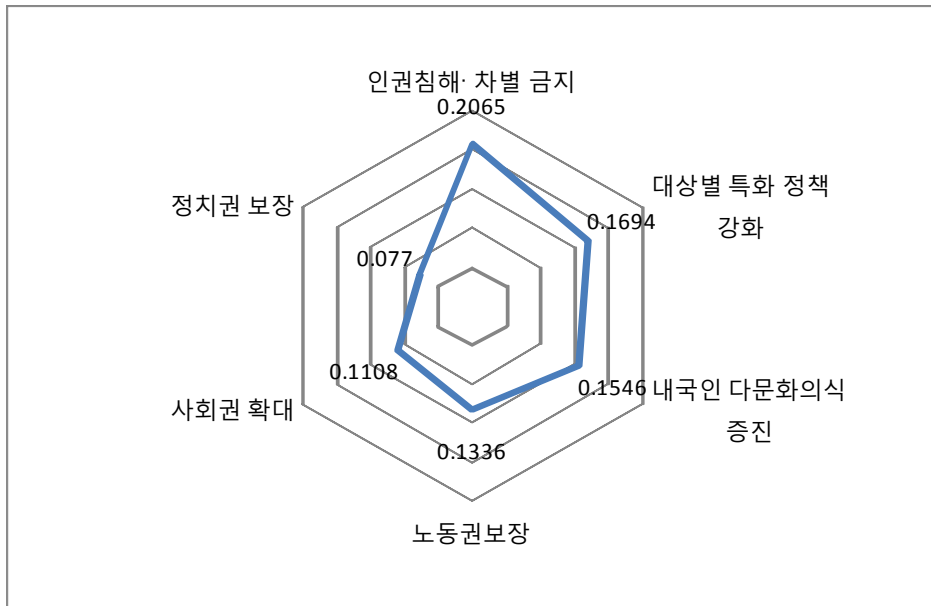
\* 1차 전문가 조사에서 정치권으로 볼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응답은 없었지만,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정책 유형이므로 연구진이 임의로 포함하였음.

인권침해·차별 금지의 상대적 중요도가 0.20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상별 특화 정책의 강화 0.1694, 내국인의 다문화의식 증진 0.1546, 노동권 보장 0.1336, 사회권 확대 0.1108, 정치권 보장 0.0770 순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하면 한국의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은 인권보호 중심의 정책과 외국인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적응 및 정착 지원 정책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민자의 사회적, 제도적 통합과 관련된 노동권, 사회권, 정치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은 과제라는 것이다.

〈표 Ⅵ-26〉 다문화사회 정책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정책유형	상대적 중요도	순위
인권침해·차별 금지	0.2065	1
대상별 특화 정책 강화	0.1694	2
내국인 다문화의식 증진	0.1546	3
노동권보장	0.1336	4
사회권 확대	0.1108	5
정치권 보장	0.0770	6



〔그림 Ⅵ-9〕 다문화사회 정책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의 안정적 체류·정주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입국 허용에 대해서는 69.5%, 우수 기능인력의 정주 합법화에는 95.6%, 비합법체류자의 조건부 합법화 65.2%,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입국, 거주 및 영주권 확대 69.6%, 결혼이민자 귀화요건 완화 73.9%, 난민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동의를 하였다. 전문가들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 사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특히 우수 기능인력의 정주 합법화와 난민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는 거의 전원이 동의를 하였다.

〈표 VI-27〉 외국인의 국내거주·체류 관련 논쟁적 사안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명, %)

		매우 동의	동의	반대	매우 반대	합계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입국 허용	응답자수	1	15	5	2	23
	백분율	4.3%	65.2%	21.7%	8.7%	100.0
우수 기능인력의 정주 합법화	응답자수	5	17	1	-	23
	백분율	21.7%	73.9%	4.3%	-	100.0
비합법체류자의 조건부 합법화	응답자수	5	10	6	2	23
	백분율	21.7%	43.5%	26.1%	8.7%	100.0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입국, 거주 및 영주권 확대	응답자수	6	10	7	-	23
	백분율	26.1%	43.5%	30.4%	-	100.0
결혼이민자 귀화요건 완화	응답자수	5	12	5	1	23
	백분율	21.7%	52.2%	21.7%	4.3%	100.0
난민에 대한 국제적 기준 준수	응답자수	7	16	-	-	23
	백분율	30.4%	69.6%	-	-	100.0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가족생활은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 가족생활을 누릴 경우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리적 입장까지를 응답 이유로 제시하였다. 반면 반



대하는 전문가들은 장기적 노동시장 정책(통일 등의 요인도 고려)과 이민정책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있는 후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불법체류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또한 가족 이민의 수용 환경이 미성숙해 있고,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수 기능인력의 정주 합법화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우수 기능인력을 합법적으로 정주시킴으로서 우수 인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인력의 훈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 등이 응답 이유로 제시되었다.

비합법체류자의 조건부 합법화에 동의하는 입장은 이미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조건부 합법화 방안은 불법체류자 감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 이유를 밝힌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는 또다른 불법체류자를 낳고 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출입국정책 및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입국, 거주 및 영주권 확대에 동의하는 입장은 부족한 산업인력의 활용측면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이지만, 내국인과의 혼인이나 사업 등의 조건부 자유 확대에 동의한다고 한 반면, 국내 미숙련 단순인력들의 노동시장 보호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입국과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제시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귀화요건 완화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한국가족으로 편입해 온만큼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남편의 보증 등의 조건이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반대 이유로는 위장결혼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이민자의 입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일정한 기준과 조건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기준 준수는 보다 보편적인 인권보호 개념의 확대, 난민지위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전원이 동의하였다.

VII

종합적 논의와 정책 제언



## 1.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

###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정책을 6개 사업군별로 구분하고, 3년간의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을 분석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이 42.9%(1,248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기존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되어 온 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에 우선순위와 높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39.9%(1,163억 원)로 전문인력, 유학생, 기능인력 등 외국 인력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다문화사회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방지와 구제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4.3%(125억 원), 내국인의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2.9%(85억 원)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Ⅶ-1〉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의 적절성

사업군	3년 총지출		적절성(전문가 의견)(%)		
	규모(억 원)	비중(%)	높다	적절	낮다
해외인력유치	1,162.54	39.9	60.0	40.0	0.0
다문화가족 지원	1,247.70	42.9	68.0	24.0	8.0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85.30	2.9	0.0	0.0	100.0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197.70	6.8	0.0	40.0	60.0
외국인 인권보호	125.06	4.3	0.0	28.0	72.0
국경·국적 관리	91.73	3.2	0.0	64.0	36.0
전체	2,910.03	100.0	-	-	-

사업군별 자원배분 비중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해외인력유치 사업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자원비중은 높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었고,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의 재원 비중에 대해서는 100%가 낮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에 대해서도 상당수(72.0%)가 재정지출의 비중이 낮다고 응답했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낮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

## 나.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에 3년간 782억 원이 투입되어 이 사업군 예산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예산 규모는 전체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2,910억 원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도입 지원과 체류 중인 기능인력의 산업안전 및 고충상담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된 기능인력 도입 사업에 246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는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예산의 21%에 해당된다. 재외동포 취업 관련 사업은 모두 비예산사업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사업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여성과 자녀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군의 세부사업군 중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에 가장 많은 재정이 지출되어 3년간 투입된 예산규모는 총 763억 원이다. 이는 동 사업군 전체 예산의 61%, 다문화사회 정책 총예산의 26%에 해당될 만큼 비중이 높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으로 135억 원이 지출되었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 중 10.8%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222억 원이 지출되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결혼 후 가정폭력 등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 예산은 19억 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 중 1.5%에 불과하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은 학교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에 22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더 예산규모가 비중이 높은 것

은 일회성 행사 사업이다.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인의 날, 결혼 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등 행사와 축제성 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체류동포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특정 집단의 외국인을 표적화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일반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서비스 사업들로 구성된다. 한국어 교육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외국인 대상 문화, 여가 환경 제공 사업 예산이 다음으로 높다. 체류동포 처우개선 예산은 0.7억 원에 불과하다.

외국인 인권보호 예산의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년간 101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 보호외국인 시설 개선이 대부분인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예산이 17억 원, 난민지원시설 설립 예산이 6억 원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피해 지원 인프라를 제외하면,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예산은 거의 할당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경·국적 관리 사업군 예산은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을 포함하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업 예산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표 Ⅶ-2〉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단위: 억 원, %)

사업군	세부사업군	예산	비중 1)	비중 2)	적절성(전문가의견)		
					높다	적절	낮다
해외인력 유치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134.65	4.6	11.6	4.0	40.0	56.0
	유학생 유치	782.35	26.9	67.3	72.0	20.0	8.0
	기능인력 도입	245.54	8.4	21.1	8.0	56.0	28.0
	재외동포 취업	-	0.0	0.0	-	-	-
	소계	1,162.54	39.9	100.0	-	-	-
다문화 가족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18.77	0.6	1.5		20.0	80.0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8.41	3.7	8.7	4.0	40.0	40.0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763.39	26.2	61.2	68.0	28.0	0.0
	아동·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135.13	4.6	10.8	0.0	16.0	76.0

사업군	세부사업군	예산	비중 1)	비중 2)	적절성(전문가의견)		
					높다	적절	낮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222	7.6	17.8	36.0	40.0	20.0
	소계	1,247.7	42.9	100.0	-	-	-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다문화교육	21.96	0.8	25.7		14.0	86.0
	홍보 및 행사	63.34	2.2	74.3	68.0	28.0	4.0
	소계	85.3	2.9	100.0	-	-	-
체류·정주자 생활 편의 제공	언어·정보·민원 서비스	145.71	5.0	73.7	40.0	52.0	8.0
	교통·주거·교육환경 개선	-	0.0	0.0	-	-	-
	문화·여가·복지 환경 개선	51.33	1.8	26.0	16.0	52.0	32.0
	체류동포 처우개선	0.66	0.0	0.3	4.0	28.0	48.0
	소계	197.7	6.8	100.0	-	-	-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1.45	0.0	1.2	0.0	20.0	80.0
	피해 이주여성 구제	100.97	3.5	80.7	80.0	20.0	0.0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16.66	0.6	13.3	0.0	68.0	32.0
	난민 인정·지원	5.98	0.2	4.8	4.0	36.0	60.0
	소계	125.06	4.3	100.0	-	-	-
국경·국적 관리	불법체류 감소	5.6	0.2	6.1	4.0	48.0	48.0
	초국가적 범죄 대응	84.74	2.9	92.4	56.0	40.0	4.0
	국적 관리	1.39	0.0	1.5	0.0	56.0	32.0
	소계	91.73	3.2	100.0	-	-	-
합계		2,910.03	100.0	-	-	-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해외인력유치 사업의 경우 전문기술인력 및 투자가 유치 사업은 예산 비중이 낮다는 평가가, 유학생 유치는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취학 전 자녀양육 지원 사업은 예산 규모가 높다는 평가가, 국제결혼 피해 예방과 아동·청소년 자녀양육 지원 사업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적절하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다문화교육 예산 비중은 낮고, 홍보 및 행사 비중은 높다는 의

건이 많았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외국인 일반 차별방지 및 구제, 난민 인정·지원 예산의 비중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국경·국적 관리의 세부사업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2.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6개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국경·국적관리 사업은 성과가, 해외인력유치 사업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군으로 평가되었다. 각 사업군별로 성과와 문제점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은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국경·국적 관리 사업은 문제점 보다는 성과가 더 큰 사업군으로 평가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 정착과 지원의 효과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정책의 이슈화라는 측면에서 재정투입대비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체류기간 2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의 70% 가까이가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받았을 정도로 한국어 교육 수혜율이 높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동 사업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 이해 교육도 결혼이민자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도 낮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도 증가하고 있어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혜율이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가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수혜자의 비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문제점이 큰 사업군으로 평가된 해외인력유치 사업의 경우 전문인력과 유학생의 증가, 그리고 기능인력의 충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의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인력유치의 장기계획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다. 전문인력은 2008년 37,304명에서 2010년 44,320명으로 18.8%, 장학생은 2008년 1,020명에서 2010년 1,965명으로 92.6% 증가했다. 또한 기술인력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25.8% 향상되었다. 도입된 우수인재 중 외국인 장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비율이 낮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기능인력의 경우는 인력의 도입을 위한 기업지원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산업보건관리 사업은 성과가 저조하다. 외국인 기능인력의 산업재해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간의 산업재해율 격차가 더 커졌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피해 이주여성 구제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외국인 일반에 대한 차별방지 및 구제 노력이 부족하고, 비합법체류자의 인권보장의 범위에 대한 합의, 난민에 대한 인권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다. 본 연구의 성과분석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확인되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이 대폭 투입되어 상담활동과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성과가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외국인근로자, 비합법체류자, 난민 등에 대한 인권차원에서의 접근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의 경우, 전문가 조사에서 성과보다 문제점이 다소 큰 사업으로 평가되었는데, 성과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다문화교육이 포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행사 및 홍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민자에 대한 온정적, 시혜적 태도가 온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문화이해 증진 교육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



는 전국 모든 교육대학과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사범대학교에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되었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적처럼 행사나 홍보성 사업에 지출된 예산의 경우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은 전문가 평가에서 문제점보다 성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 외국인에 대한 언어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의 증가 등으로 생활편의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교통이나 문화 관련 정보의 다국어 제공이 미흡하고, 이주민 미디어 등 이주민 스스로를 위한 문화활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성과 분석 결과, 3자통역 서비스와 온라인 민원처리 등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도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국적취득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 등 체류자격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어 향후에 집단별 대응이 필요하다.

국경·국적 관리 사업은 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성 사업이 많아 성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체류율을 통해 성과를 평가해 본 결과 불법체류율이 감소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합법체류자의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나.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안

### 1) 사업군별 자원배분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사업군별 재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해외인력유치 사업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자원 비중을 각각 12.0%p, 10%p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인력유치

와 결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정주자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예산 비중은 여전히 다른 사업군보다 높다. 다만, 다른 유형의 사업군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 분야로 재정지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재정의 비중보다 비중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업군은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이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은 현재 3%에 불과한 비중을 14%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4.3%를 8.9%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표 VII-3〉 사업군별 적정 예산 비중(전문가 조사 결과)

	3년 예산비중(%) (A)	적정예산비중(%) (B)	차이(%p) (A-B)
해외인력유치	39.9	27.0	12.0
다문화가족지원	42.9	33.1	9.8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2.9	14.1	-11.2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6.8	10.0	-3.2
외국인 인권보호	4.3	8.9	-4.6
국경·국적 관리	3.2	6.8	-3.6
합계	100.0	100.0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성찰적 논의의 결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그간의 정책이 ‘다문화’라는 용어에 들어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국인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는 점, 이 과정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다양한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적 비중과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이 적정 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은 그동안 전개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이

러한 문제제기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 그리고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에 보다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적절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 2) 사업군별 주요 개선 과제

### 가) 해외인력유치

해외인력유치 사업 중 장학생 유치 사업은 높은 재정지출을 통해 유학생 규모는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했지만, 유학생 선발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장학생 유치 사업의 효과성이 불투명하다. 선발되는 유학생은 특정 국가(중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재학 기간 중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또한 졸업 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 지식경제부는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제 졸업 후 국내에 정착하는 유학생은 많지 않다. 유학생의 출신국을 다변화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유학생 학사관리 및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유학생의 활용을 증진해야 한다.

기능인력 도입과 활용 사업은 많은 연구자와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제기해 왔듯이 현재 보다 더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인력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에서는 많은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부당대우, 편견, 차별, 저임금, 임금체불, 폭력 등 인권 현안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앞서 다문화사회 정책의 쟁점에서도 다루었지만, 정부는 국익을 우선시하여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이해관계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고충 및 법률지원 상담이 거의 전부이다. 보편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 나)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군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지원과 자녀양육지원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와 예산이 배분되면서 사실상 감소하지 않고 있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의 도입과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을 상품화하는 반인권적인 인신매매성 중개과정과 사기결혼, 그리고 이로 인한 결혼 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등의 문제는 약화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중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영리단체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여성의 시민으로서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데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과 보육 및 가족 유지라는 가족 내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재의 지원 방식의 문제를 많이 지적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지원을 벗어나서 결혼이주여성의 독립과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을 통한 경제력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고학력, 전문직 경력 결혼이민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높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가 저조한 양육지원서비스의 사업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과 분리된 접근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성격의 사업들은 특화된 접근 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통합된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리적 접근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들과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과 정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내국인 다문화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은 행사성 사업 보다는 내국인 대상 교육을 다각도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에 지출되고 있으므로 이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변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내국인 대상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강사인력 양성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 인력의 양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율은 여전히 낮으며, 실제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연수를 16개 시도교육연수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확대하여 직무연수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내국인의 의식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의식 개선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 정책을 전개해 온 전형적인 이민국가

처럼 정체성을 확보한 이민자들의 권리주장이 전개되지 않고 있고, 내국인들의 인종차별주의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 특정한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면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에산을 낭비하는 세력이라는 인종차별의식과 외국인혐오증이 급격하게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은 타문화에 대한 관용성이나 편견해소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교육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관용성과 개방성만 강조하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온정적 시혜가 되기 쉬우므로 외국인과의 공존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이 교육과정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 라)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체류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및 민원서비스와 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여가, 복지 서비스, 그리고 체류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자원배분, 사업실적과 사업성과를 분석했다. 성과 지표로 활용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은 높았지만, 이 자료만으로 생활편의 제공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외국인 집단별로 만족도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중국동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와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등 체류환경은 과거보다 개선되었지만, 각 집단을 고려한 대상별 특화 서비스가 부족하여 한국생활 체류 중 발생하는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체류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부족하다. 3년간 지

출된 예산이 0.7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재외동포의 체류 지원을 위한 사업은 안내 책자 발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지출되는 예산은 3년간 0.16억 원에 불과했고 추진된 사업은 대표자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이 전부였다.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상담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 마)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피해 구제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난 3년간 인프라 구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는 국가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정지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비합법체류자 등을 외국인 전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시스템은 빈약한 실정이다. 외국인 일반을 위한 인권피해 구제는 법무부의 차별시정 모니터링단 운영과 외국인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접수 사업이 전부이고, 예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차별시정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를 수집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정도의 소극적 사업이고, 외국인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와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보호소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은 시설 개선과 외국인 보호소 신설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인 보호소에서 자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수료자와 교육 내용에 대한 실적자료가 없어 어느 정도 내실있게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한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

족도 조사 자료가 없어 프로그램 추진 성과도 파악할 수가 없다. 보호외국인 인권보장 사업은 사업추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보호외국인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난민 인정·지원 사업은 오래전부터 난민 인정에 대한 국제적 기준 준수 및 난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난민 지원시설 설립 등 인프라가 추구되었을 뿐이다.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모든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신청 등 난민 인정절차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난민 인정자에 대한 숙식, 생계비, 직업교육 등 특화 서비스 및 국내 적용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 바) 국경·국적관리

비합법체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획조사, 단속 과정에서의 기본권과 인권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단속 및 보호 등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제퇴거 시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물리적인 국경관리 사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방문취업제와 자진귀국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출입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윤인진, 2008).



### 3. 다문화사회 전망과 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사업과 예산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정책의 재정지출 구조와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의 유형과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절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부상하게 될 정책적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 방향과 우선 순위를 제안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 가. 다문화사회의 전망

##### 1) 이주의 증가

1990년 5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0년 현재 118만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을 상회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의 결과이다(최홍, 2010).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제적 인구 이동의 확대로 체류 외국인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최홍(2010)은 2020년까지 70만~140만명의 노동인력 수급불일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2001년 유엔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2050년 기간 중에 총 150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윤인진, 2008).

##### 2) 이민자의 2세대의 사회적 배제

홍기원(2009)은 향후 20~30년 이후 이주민과 이주민 2세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농촌 및 단순인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당분간 이들의 상승 계층이동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종과 계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다양

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경수(2011)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수십년 후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는 대부분 이민 2세로 구성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2세가 저숙련 인력으로 양성되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홍(2010)은 교육과 취업의 제한으로 이민 2세대의 실업률과 범죄율이 증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 3) 인종주의의 부상

엄한진(2007)과 김남국(2008)은 다문화와 관련된 시민사회 내의 논의가 아직은 미분화 상태이지만, 서술적 의미에서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인종주의가 극우집단의 의제로 쟁점화 되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극우 인종주의는 특히 경제후퇴기에 이민과 문화적 차이를 활용하여 이주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낸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이민을 반대하는 정치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폴란드 출신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는다는 주장이 2010년 선거의 중점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최홍, 2010). 또한 이주자가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위치지어 진다면 공공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이 역시 반(反)이주 정서로 발전되고, 사회복지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최홍, 2010).

다문화사회 정책이 다양한 범주의 체류 외국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다문화가족에 편중된 협소한 정책과 동일시 된다면, 이민자 2세대의 사회적 배제와 인종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과 동일시 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의식 개선이라는 ‘구호’에 머물렀던 ‘다문화’를 어떻게 한국적 맥락에서 정의할 것인지, 속성상 자국민의 이해를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국가가 어떻게 국익과 인권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놓여 있다.

##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쟁점

###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이념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사회 정책’이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입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문화주의가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 이념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다문화사회 정책의 철학적, 정치적 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까지 정책의 방향 설정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이혜경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다문화 지향이지 다문화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캐나다식의 강경한 다문화주의 정책만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다문화사회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견인해갈 이념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문화주의적·동화적 제3의 통합모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이혜경, 2007).

반면 오경석은 다문화사회 정책의 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를 가장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다. 그는 ‘문화’보다는 사회, 경제적 권리와 인권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정책은 이주민 자신이 참여하여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관주도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의 통치전략을 넘어서 소수자 연합에 근거한 다원주의 정치를 제안한다. 오경석의 주장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국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며, 다문화사회는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외국인 소수자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오경석, 2007).

윤인진 역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식을 공유하지만, 그 폐단을 방지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이 과거 동화주의에서 미래의 다문화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공조와 협치를 제

안한다(윤인진, 2008). 더불어 정책의 영역에서는 외국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의 성급한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고, 문화적 동질성이 크며,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온정적인 주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윤인진, 2008).

## 2) 국익과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장 범위

한승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정책 갈등을 분석하면서 국민국가의 속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장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한승주, 2010). 국민의 보호를 위해 탄생한 국민국가에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자격과 정당성은 국적을 소지한 자에게 한정되며 비국적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즉, 국민국가는 국민 이외의 자에게 배타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므로 외국인을 적극적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비국적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화되며 국민정서상 내국인과의 동등한 권리보장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모든 국가들이 고급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자 하는데 비해 단순기능인력은 내국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활용하고 최대한 정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혜경, 2007; 엄한진, 2007)이며, 국경통제는 국민국가의 주권의 영역으로 일정 정도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용인된다(설동훈, 2005).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조는 국익이다. 전문인력, 유학생 등 이른바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기능인력의 확보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한민족 우대’라는 동포정책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적 기조는 내국인 노동시장을 잠식하지 않

아야 한다는데 맞추어져 있다. 가장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근거도 이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2세대의 빈곤과 사회갈등 집단으로서의 성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로서는 국적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국적을 취득할 잠재력을 가진 외국출신 또는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국민적 반발을 초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특히 비합법체류 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과 달리 임시 거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정주하게 될 집단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익 우선의 접근은 외국인의 권리보장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제기한다. 설동훈(2005)에 따르면, 헌법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경제적 기본권,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외국인에게 인정하지 않는 권리는 헌법상의 개별유보조항이나 일반유보조항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국민의 의사결정에 의거한 통치를 요청하므로 외국인의 참정권은 제한되며, 근로의 권리는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예방하기 위해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초청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권리 제약은 합당한 근거를 가질 경우 용인되고 법적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설동훈, 2005).

그러나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내국인과의 차별 정도는 국가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권리 제약의 근거 자체가 논쟁적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UN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ILO의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1949)’, 불법이주 및 이주

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 촉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in Abusive Conditions and the protec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tion Workers, 1975) 등은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규범으로 국가주권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외국인 권리의 범위가 국가적 맥락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정부는 국익을, 시민사회는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극단의 판단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한다. 국익 중심의 접근은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김희정, 2007) 장기적으로는 사회갈등의 씨앗을 내포하는 것이다. 반면, 인권 중심의 급진적 접근은 국민정서와 상충하여 반발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윤인진, 2008). 국익과 인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 다.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전문가 조사 결과,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은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조화될 수 있었다. 현재의 정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별 특화정책 강화,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내국인의 다문화 의식 증진, 그리고 노동권, 사회권, 정치권 등 권리보장의 영역이다.

대상별 특화 정책은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난민, 유학생, 탈북자, 재외동포 등 다양한 범주의 외국출신자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들이다. 이 영역에서의 향후 정책 과제로 다문화 2세 자녀지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고충처리 강화, 난민의 국내적응 프로그램 실시, 유학생 학사관리 및 체류환경 개선,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상당부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에 편중된 사업과 재정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정교화 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금지 영역은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정책 시행의 의지와 성과가 낮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인종차별금지법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습적 단속을 완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양

산하는 시스템 개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권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내국인 다문화 의식 증진은 보편적 인권 교육의 틀 내에서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이행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합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과 거주 및 직장 이전의 자유의 제약 등 여전히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권의 보장이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내국인 대상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자격 부여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치권이다. 이는 전문가 조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권리의 영역이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귀화자 또는 장기적 정주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 참여의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도 장기적으로는 논의되어야 한다(윤인진, 2008).

전자의 세 가지는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정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고, 후자의 세 가지는 체류 외국인의 양적 증가 및 체류기간의 증가, 체류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향후에 보다 중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되는 영역이다. 향후의 다문화사회 정책이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동일시되는 협소한 정책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문화사회가 제기하는 정책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틀에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틀의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6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에 기초하여 산출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단계적 접근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 영역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방지며, 다음으로 대상별 욕구를 고려한 특화 정책의 강화와 내국인 다문화 의식 증진이다. 대상별 욕구 중심의 특화 정책에 우선순위가 두어졌던 기존의 접근과 달리 인권침해와 차별방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권과 사회권, 정치권 등은 상대적 우선순위가 낮았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고문현(2008).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법학 연구』, Vol.14 No.3
- 고영선·김정호(2007).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KDI
- 김남국(2008).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 사회』. 겨울호 80: 343-361.
- 김미중 외(2010). “방문교육지도사가 인지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요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3권 제1호. 44-53.
- 김병록(2010).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법학논총』, Vol.17 No.3
- 김선희·전영평(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4):305~330.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608.
- 김태수(2009). “한국 이주난민의 문제들과 정책방향”. 『행정학회 2009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상(上))』. 113~131.
- 김태원(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평』. 44: 389~423.
- 김현미(2008). “공정한 통합? :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식’ 다문화주의”. 미래전략연구원.
- 김혜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초연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Working Paper*. No. 2010-05. IOM.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 박인옥(2010).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미취학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 조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25: 467~507.
- 서문희 외(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설동훈(2005).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5(2): 39~77.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설동훈(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람』. 34: 53~77. 수선사학회.

- 엄한진(2007).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 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경희(201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32: 509~536.
- 이민경(2010). “다문화 가족정책의 전개: 진보 혹은 후퇴?”. 『월간 복지동향』. 138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이병렬 · 김희자(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사회』. 여름호 90: 320~362.
- 이선옥(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 이종성(2001). 『텔파이 방법』. 교육과학사
- 이혜경(2007).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 이혜경 · 한경구 · 전주상 · 한승준 · 정연정(2009).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법무부.
- 이혜승 · 김난영(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감사연구원.
- 이혜승(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5~216.
- 전영평(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3): 9~27.
- 정기선 외(2010).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이민정책연구원.
- 정미라 · 권정윤 · 이민정(2008).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지원사업(제1차년도)의 실효성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정해숙 외(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지중화·정명주·차창훈·김도경(2009).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30.
- 최경수(2011).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최무현(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51~77.
- 최종렬(2010).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한국사회이론학회.
- 최홍(2010).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소. *GEO Information*. 756: 1~23.
- 최홍(201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SERI 경제 포커스』. 326: 1~23.
- 한경구·한건수(2007).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 한승주(2010).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71~493.
- 홍기원(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169~18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1).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외국인정책위원회(200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
- 외국인정책위원회(2009).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2011).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11). 『2010년 상담실적 통계보고』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2009).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_\_\_\_\_ (2009). 『2009년 방문 교육사업결과 보고서』

\_\_\_\_\_ (2010). 『2010년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171~172.

\_\_\_\_\_ (2010).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_\_\_\_\_ (2010). 『2010년 방문 교육사업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진흥공단(2009). 『2008년 연차보고서』

\_\_\_\_\_ (2010). 『2009년 연차보고서』

\_\_\_\_\_ (2011). 『2010년 연차보고서』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09). 『2008년 일반교사 다문화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보고서』

\_\_\_\_\_ (2010). 『2009년 일반교사 다문화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보고서』

\_\_\_\_\_ (2011). 『2010년 일반교사 다문화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보고서』

행정안전부(2008). 『2008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_\_\_\_\_ (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_\_\_\_\_ (2009). 『2009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_\_\_\_\_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_\_\_\_\_ (2010). 『2010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_\_\_\_\_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Mitroff, Ian, & Turoff, Murray(1973).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Assessment: Science and/or Mythology?. *Journal of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5:13-134.

## Abstract

#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 for Multicultural Policy

Kyoung-Hee Ma  
Hae-sook Cheong  
Soon-Mi Lee  
Hyo-Seon Kim

Policie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have undergone dramatic expansion since the mid 2000s. Since multicultural projects have emerged as a new policy agenda for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sul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laws and comprehensive plans, policie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re now firmly establishing themselves as major policy agenda for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need for reflection on the goals of policies that have been introduced so far and on future direc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define goals and the nature of policies that have been carried forward up until now, by analyz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expenditures for multicultural polic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2008-2010), and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by

analyzing achievements made by these policies so far. In addition, it also aims to propose desirable directions which future policies should take so as to cope with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Korea will have to face in the foreseeable future.

As pointed out in previous discussions, for multicultural policies, of the some 43% of total budget spending, the biggest proportion goes to projects providing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40%, the second biggest share, is taken up by projects designed to attract overseas workers.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6.8% and 2.9% of budget spending shares have been taken up by projects dedicated both to protecting foreigner human rights and to promoting understanding among local citizens about a multicultural society, indicating that less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se two areas as compared to the items mentioned previously. The dominant view of expert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is that budget spending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ies has been heavily concentrated in the areas dedicated to both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attracting overseas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y unanimously agree that the share of projects dealing with enhancing understand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among local citizens is insignificant in the total budget expenditure. In addition, most of them suggest that the proportion taken up by projects aimed to protect foreigner human rights is also relatively small.

The expert opinions mentioned above largely reflect the outcomes of discussions about policie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have been implemented so far.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financial resources have been focused primarily on projects dedicated to helping immigrants who came to reside in Korea because they married Korean spouses and their families is revealed by expert opinions on proper shares of budget

spending for multicultural policies. Their opinions also show there has been a lack of policy emphasis and concern with enhanc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awareness among local citizens, and addressing issues which prevent foreigners from being treated unfairly and having their human rights violated.

It is time for policy makers to seek out a transition in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to include a wide range of foreigners as target recipients in order to be ready for rising demand for policies suited to address the problems a multicultural society may face. The most pressing policy area to be tackled includes prevent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towards foreigners. The second most pressing issue is to enhance specialized policies designed to meet the varying needs of foreigners and to promote multicultural awareness of local citizens. Although it is difficult for labor, social and political circles to push ahead with a policy in the short term, ways of securing foreigner rights in various social sectors should be explored from a longer term view.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27-02  
2011 연구보고서-15-1

---

###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

2011년 12월 28일 인쇄  
2011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

ISBN 978-89-8491-453-7 94330  
978-89-8491-451-3 94330 (세트)

<정가 13,000원>